

經濟法制分析 97-1

經濟活動에 대한 不利益處分과 有關한 聽聞制度的 整備方案

1997. 6

研究者：吳峻根(首席研究員)

한국법제연구원

目 次

第1章 聽聞制度 整備의 必要性	5
1. 聽聞制度의 意義	5
2. 聽聞制度 整備의 必要性	6
第2章 聽聞制度의 內容	11
1. 概 觀	11
2. 聽聞主宰者	14
3. 聽聞의 節次	16
가. 聽聞의 通知	16
나. 聽聞의 進行	19
4. 聽聞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行政處分의 效力	22
가. 다른 法令 등에서 聽聞을 실시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경우	22
나. 다른 法令 등이 聽聞을 거칠 것을 規定하지 아니한 경우	24
다. 意見聽取의 例外事項에 해당하는 경우	26
第3章 聽聞制度에 관한 法制現況	29
1. 聽聞制度에 관한 法制現況 分析의 必要性	29
2. 聽聞制度에 관한 法制現況 分析의 方法	33
가. 聽 聞	34
나. 公聽會	35
다. 意見聽取	36
라. 意見陳述	37
마. 意見聽取 根據없는 法令	38
3. 個別法令에 나타난 意見聽取制度	39

第4章 聽聞制度的 問題點과 法制改善方案	41
1. 現行 聽聞制度的 問題點	41
2. 法制改善의 基本方向	44
가. 法制改善의 目的	44
나. 法制改善의 基本方案	45
3. 法制改善의 具體的 基準	51
가. 概 觀	51
나. 聽聞要件의 具體的 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立法例	51
다. 不利益處分의 類型分析	55
라. 聽聞의 對象이 되는 負擔的 處分의 基準	61
4. 法令의 整備方案	62
가. 法令整備의 모델	62
나. 個別法令의 整備方向	64
第5章 要約 및 結論	71
부록 1 : 行政節次法의施行에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관한法律(案) ...	79
부록 2 : 個別法令에 나타난 意見聽取制度	127

第1章 聽聞制度 整備의 必要性

1. 聽聞制度의 意義

국민이 경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과 다각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법치국가이다. 민주법치국가의 행정은 행정청과 국민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행정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하여는 행정이 공정성이 있어야 하며, 행정담당자 및 국민 모두에게 예견가능성 내지는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 요소중의 하나는 “국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의 국민은 단순한 통치의 대상만은 아니다. 국민은 주권자이며, 선거권자로서의 국가기관이며, 기본적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경제활동을 위시한 각종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주체적 지위에 선다. 민주국가에서의 행정은 높은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향하여 그 활동이 국가안전에 위해가 되지 아니하며, 질서있고, 공공의 복리에 합당하도록 조력하는 조정기관이며, 지원기관이다.

행정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라는 국가목적의 실현을 위하여 규제와 조정과 지원의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이와 같은 기능은 근본적으로 “열심히 생활하는 국민”에 대한 조력자 및 봉사자로서의 기능이어야 한다. 행정은 장래를 예측하고,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끌어나가는 기능도 수행하여야 하지만 이 또한 국민의 적극적 참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경제활동을 비롯한 각종 사회활동의 현장에서 직접 역할을 담당하고 일을 완수해 나가는 자는 국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은 국민모두와 호흡하는 과정, 국민과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국민의 행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법으로서 제정된 법률이 「행정절차법」이다.

6 第1章 聽聞制度 整備의 必要性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절차적 규정 중 국민이 행정과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하고, 참여하는 절차로 「청문」 및 「공청회」와 「의견제출」의 세 가지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제2조에서 「청문」제도의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¹⁾.

행정절차법은 청문절차의 내용으로서 청문주재자의 선정(제28조),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제29조), 청문의 공개(제30조), 청문의 진행(제31조), 청문의 병합·분리(제32조), 증거조사(제33조), 청문조서(제34조), 청문의 종결(제35조), 청문의 재개(제36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제37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聽聞制度 整備의 必要性

행정절차법이 도입하고 있는 「청문」제도는 재판절차에 해당하는 여러 절차적 요소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청문」절차는 「준사법적」인 「정식행정절차」에 해당한다.

행정기관이 「청문」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에 준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부담을 안게된다. 따라서 어떠한 처분을 할 경우에 「청문」을 시행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행정절차법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의 요건으로서 다음의 두 가지 경우만을 예정하고 있다. (제22조제1항)

·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1)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 제2조는 제6호 및 제7호에서 공청회 및 의견제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 공중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997년 4월 현재 이미 395건의 법령이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문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절차상 위법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행정판례도 30건 이상 축적되어 있다.

현행 개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가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1998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개별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모든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 시행되도록 할 것인가가 직접적인 문제로 떠 오른다.

이러한 현재의 법령체계가 방치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행정청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청문은 「준사법적 의견진술절차」를 의미한다. 개별법령이 「청문」절차를 채택하기로 하고,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²⁾.

그러나 행정청이 법령을 집행하면서 개별법령상의 「청문」이라는 용어를 그 동안 「절차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의견진술」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모순된 해석이 가능하여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개별법령이 법률상 청문절차를 채택하기로 하고, 절차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절차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와 다른 경우 특히 절차규정이 간략하여 의견제출절차 정도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령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과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아래의 두 가지의

2) 법률에 위임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비로소 청문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률」에서 청문을 실시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로는 개별법령이 규정하는 절차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로는 개별법령이 「청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상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일반법이다. 청문은 행정절차중 핵심적인 절차의 하나이다. 만약에 행정청이 「청문」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통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청문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을 실시하며, 어떤 경우에 다른 청문을 실시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게 되므로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침해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개별법령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거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청문여부가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절차운영지침」에 따라 행정절차가 운영되어 왔다³⁾

이 지침은 청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제5조).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청문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견제출만으로는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

가. 재산권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나. 법인 또는 조합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다. 기타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는 경우

3) 「행정절차운영지침」은 1989년 11월 14일 국무총리훈령 제235호로 발령된 것이다.

「행정절차운영지침」은 표준적인 청문절차를 별도의 절을 마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운영지침」이 포함하고 있는 행정절차로는 청문의 사전통지(제9조), 청문의 주재자(제10조), 청문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제11조), 청문의 공개(제12조), 청문의 개시(제13조), 청문의 진행(제14조), 질서유지(제15조), 청문의 속행(제16조), 청문의 병합·분리(제17조), 증거조사(제18조), 청문의 종결(제19조), 청문조서(제20조), 청문조서의 제출(제21조), 청문의 재개(제22조), 대표자(제23조) 등이다.

「행정절차운영지침」의 경우에는 청문의 실체적 요건을 스스로 규정한 후 표준절차를 규정하였으므로 이 요건에 해당되나, 처분근거법령이 직접 청문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지침을 근거로 절차적 위법성을 다룰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절차운영지침」이 폐지되고 행정절차법이 본격시행될 경우 위와 같은 소극적인 가능성마저도 사라지게 되었다. 행정절차법은 청문의 실체적 요건을 스스로 규정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측면에서는 행정절차운영지침보다 퇴보하였다는 비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여러 문제점을 고려할 때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모든 법률이 정비는 필수불가결한 것이라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은 1996년 12월 31일 공포되었으나, 법 시행을 위한 준비를 위하여 시행시기를 1년 후로 정하였다.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중 「청문」관련 법령의 정비는 가장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일본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과 동시에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청문제도 등 행정절차 관련제도를 정한 다른 법률을 일괄정비하여 법 상호간의 모순 및 충돌을 피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우리에게도 좋은 모델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⁴⁾.

4) 일본의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의 내용에 관하여는 오준근, 공정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절차법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5, 108쪽 참조

第2章 聽聞制度的 內容

1. 概 觀

행정절차법은 「청문절차」를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청문절차」는 각 개별 행정법령상의 실제적 규정을 집행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행정청이 행정결정을 내리는 절차적 요소 중의 하나로 기능한다.

「청문절차」의 채택이 필요한 이유는 민주법치국가에서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 헌법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제1조)고 규정하여 국민이 주권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국민은 단순한 통치의 대상만은 아니다. 국민은 주권자이며, 선거권자로서의 국가기관이며, 기본적 인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면서 경제활동을 위시한 각종 사회활동을 주도적으로 행하는 주체적 지위에 선다. 행정청은 민주법치국가에서 국민을 행정청과 동일한 위계질서위에 있는 「당사자」중의 하나로 대우하여야 한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2조제1항). 이 규정은 신체의 자유의 보장내용을 규정한 것이다. 민주법치국가에서의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정청으로부터 일방적인 불이익처분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절차적 기본권」이라 불리워진다. 우리 헌법은 이 권리를 일반적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청으로부터 일방적인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할 권리”,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는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의 하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민에게 위와 같은 절차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변

호사법 제15조에 대한 위헌심판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⁵⁾.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공소제기가 된 피고인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불이익을 입혀서는 안된다고 할 것으로 가사 그 불이익을 입힌다 하여도 필요한 최소제한에 그치도록 비례의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27조제4항의 유죄추정의 원칙이며, 여기의 불이익에는 형사절차상의 처분에 의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한 불이익도 입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고 쓰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을 통하여 절차적 기본권이 형사절차상의 불이익처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등 그 밖의 기본권제한과 같은 처분에 의하여도 불이익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것이라 생각된다.

헌법재판소는 위 결정문에서 이어서 “법무부장관의 일방적 명령에 의하여 변호사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당해 변호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아니하여 적법절차를 존중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고 쓰고 있다. 위와 같은 표현은 행정청에 의한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의 내용에 해당하며, 위와 같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법률은 위헌법률이 됨을 선언한 것이라 할 것이다.

변호사법 제15조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행정절차법의 제정 이전인 1990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결정문에서 표현된 “청문의 기회”는 행정절차법이 의미하는 「청문」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라 해석될 수는 없다. 결정문이 바로 이어서 설명한대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5) 헌법재판소 1990. 11. 19. 90헌가48 전원합의회 결정. 필자가 LAC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검색한 결과에 의하면 위 결정문은 다음 네가지 점으로 요약된다. ①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의 당위성과 법적 성격 ②변호사법 제15조의 위헌여부 ③무죄추정(無罪推定)의 원칙의 내용과 적용범위 ④법적절차가 존중되지 아니한 사례. 위 각각의 점에 대한 결정요지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①변호사업무정지명령제도의 당위성은, 형사소추를 받은 변호사에게 계속 업무활동을 하도록 방치하면 의뢰인이나 사법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구체적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어서 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 ②변호사법 제15조는, 동 규정에 의하여 입히는 불이익이 죄가 없는 자에 준하는 취급이 아님은 말할 것도 없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서, 제한을 위해 선택된 요건이 제도의 당위성이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처분주체와 절차가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며 나아가 그 제한의 정도 또한 과잉하다 할 것으로서 헌법 제15조, 동 제27조제4항에 위반된다. ③ ④점은 이어서 본문에서 바로 인용하였으므로 생략한다.

기회”를 “청문”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는 국민이 가지는 위와 같은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청문절차는 절차적 기본권의 하나인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권리” (Recht auf Anhörung)의 법률적 실현방법중의 하나라 생각된다. 이 절차적 기본권은 각각의 처분이 가지는 법적 성격 및 그 의미에 따라 법률이 제도적으로 「단순한 의견진술」, 「정식행정절차로서의 청문」, 「다중의 참여가 필요한 공청회」 등 여러 의견청취방식 중의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하여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어느 법령이 “불이익 처분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 그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면 절차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 하겠으나, 위의 여러 의견진술절차 중 어느 절차를 채택할 것인가는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다⁶⁾.

6) 참조 Mauer,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S. 404 ff. 김동희, 행정법 I, 317 쪽은 “독일의 경우 청문절차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불문법인 행정법의 일반원리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어서 「훈령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상반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1984년의 판례는 청문절차를 행정법의 일반원리로 해석하였으나, 1994년의 판례는 이를 정면으로 부인한 것으로 보고, 이어서 1990년의 헌법재판소결정례와 상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위와 같은 판단과는 청문절차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견해를 달리한다. 청문절차는 국민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에 대한 제도적 보장의 한 내용으로 해석되어야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이다. 절차적 기본권의 하나인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 (Recht auf Anhörung)는 각각의 처분이 가지는 법적 성격 및 그 의미에 따라 법률이 제도적으로 「단순한 의견진술」, 「정식행정절차로서의 청문」, 「다중의 참여가 필요한 공청회」중의 어느 한 방식을 채택하여 보장하는 방법으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법령이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 그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면 절차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이라 하겠으나, 위의 여러 의견진술절차 중 어느 절차를 채택할 것인가는 법령이 정한 행정처분의 법적 성격 등에 따라 달라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이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절차적 기본권의 본질적 침해의 여부 및 그 침해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독일행정절차법이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에 해당하는 정식행정절차는 “법령이 그 실시를 규정한 경우에 실시된다”고 규정한 것 (제63조)과 우리 행정절차법이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22조) 필자의 견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994.8.9. 94누3414 판결이 “청문을 포함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고 있다하여 “대법원이 청문절차의 불문법원리성 내지는 헌법적 원리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는 헌법재판소의 입장과는 상치

청문제도는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의견청취제도의 한 유형이다. 행정청은 국민에게 “불이익처분에 앞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되, 그 보장의 방법은 각각의 처분이 가지는 법적 성격 및 그 의미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의견청취방법으로서 청문, 공청회 및 의견제출의 세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위 세 가지 의견청취방법을 각각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5호는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6호는 “공청회”라 함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기타 일반 공중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7호는 “의견제출”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들 정의를 통해서 볼 때에도 우리 행정절차법은 「청문」 절차를 「준사법적인 정식 행정절차」로서 채택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청문절차를 그 절차적 단계에 따라 내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⁷⁾.

2. 聽聞主宰者

청문은 행정청이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하는 자가 주재한다.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

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판례를 해석하는 김동회, 앞의책, 318쪽의 서술에 대하여 필자가 달리 생각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김동회, 앞의책, 318쪽이 인용한 94누 3414 대법원 판례는 특정한 건조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라는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이 가지는 불이익처분으로서의 성격상 의견진술의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청문절차의 헌법적 의의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청문의 요건에 대한 판례의 보다 구체적인 해석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 7) “어떠한 경우에 청문을 실시할 것인가” 즉 청문의 요건을 정하는 것은 청문제도의 내용의 핵심중의 하나이다. 이는 이 보고서의 핵심내용중의 하나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청문의 요건에 관하여는 국내외 법제와의 비교를 포함하여 제3장에서 따로 다루기로 하고, 제2장에서는 청문제도의 “절차적 내용”만을 다루기로 한다.

다 (제28조제1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선정된 청문주재자는 형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행정절차법 제정심의위원회에서는 청문주재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한 자를 청문의 주재자로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당해 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는 일방의 당사자인데 당사자가 청문을 주재하게 되면 상대방이 방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므로 청문의 주재자가 됨은 타당하지 아니함이 그 이유였다.

이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당해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주재자로 지명할 수 없도록 한다면 주무과가 아닌 곳에서 청문을 주재하게 되고, 이 경우 당해 사안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부서에서 청문을 수행할 수 밖에 없음이 지적되었다. 결국 법무담당관실 등에서 모든 부서의 청문 사안을 처리하게 되나, 이 경우 인원의 부족, 전문성의 부족 등 여러 복합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행정절차법 제정심의위원회 소위원회위원들 상호간에는 청문주재자의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한 자”를 배제함이 이론적으로는 타당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이 경우 청문절차의 채택이 지방자치단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직접적 배제규정은 두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 제28조제1항제2문이 “행정청은 청문주재자의 선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바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예상하여 행정청이 전문성있는 다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급적 “당해 행정사무를 직접 처리한 자”를 청문주재자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됨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행정절차법에 있어서는 청문의 담당자로서 별도의 “행정법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를 지명하게 되나⁸⁾, 일본과 독일 등에 있어서는 청문주재자에 대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비교법적 측면도 입법에 있어 고려되었다⁹⁾.

8) 1948년도 법제정시에는 제3105조이하는 “청문심사관 (hearing examiner)”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고, 조문의 제목도 위와 같았다. 1978년의 법 개정으로 청문심사관의 명칭은 행정법판사 (administrative law judge)로 개정되었다. 그러나 명칭의 개정이 있었을 뿐 그 임명절차나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한 개정은 없었다. 조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법판사”란 행정청이 임명하는 청문심사관의 다른 명칭이며, “사법부”에 소속되는 엄밀한 의미의 “판사”는 아니다. 이 점에서 명칭만으로 우리나라 및 다른나라의 법제와의 수평적 비교를 하는 것은 곤란하리라 생각된다. 참고자료 USCA, Title 5, 1995 Supplementary Pamphlet (Covering years 1978 to 1994), p. 295 이하.

9)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 행정절차법안심의위원회·공청회 회의록, 326 쪽 참조

청문주재자는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그 직무수행상의 이유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상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청문주재자가 ①자신이 당사자 등이거나 당사자등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②자신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③자신이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주재할 수 없다.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청문주재자를 지체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청문주재자가 위에서 예시한 제척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얻어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제29조).

3. 聽聞의 節次

가. 聽聞의 通知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①처분의 제목 ②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③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④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⑤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⑥ 의견제출기한 ⑦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¹⁰⁾

행정청은 청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이 시작되는 날의 10일전까지 위의 모든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은 청문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같음한다.

청문의 통지는 청문절차의 첫번째 단계이다. 청문의 통지는 청문기간을 준수

10) 제6호에 의한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1조제3항 및 제4항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에서 정한 청문내용에 대한 충분한 통지가 있어야 하고, 당사자에게 직접 도달되어야 한다. 청문의 통지는 당사자에게 행정과정에 참여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그 내용도 충실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대법원은 개별법률에 따른 청문절차의 시행에 있어서 청문의 통지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요건을 어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그 위법함을 선언하는 경우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대법원은 대중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 있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서 도달기간이 7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문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5일을 남겨두고 청문서를 발송한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함을 선언하고 있다¹¹⁾.

청문서는 당사자에게 반드시 도달되어야 하며,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이 있었다고 하여 행정청의 청문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은 유흥집객업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우편법에 따른 우편물의 배달과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에 대하여 판결하면서 “우편법 제31조, 제34조,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43조의 규정취지는 우편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국가가 배달위탁을 받은 우편물의 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 수탁업무의 한계를 명백히 한 것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면 우편물이 정당하게 교부된 것으로 인정하여 국가의 배달업무를 다하였다는 것일 뿐 우편물의 송달로써 달성하려고 하는 법률효과까지 발생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우편물이 배달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¹²⁾.

11) 대법원 1992.2.11. 제1부 판결 91누11575. LAC 프로그램의 검색결과에 따른 이 판결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식품위생법 제64조,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정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은 물론 청문서 도달기간 등을 엄격히 지켜 영업자로 하여금 의견진술과 변명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이고 가령 같은 법 제58조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도 위와 같은 청문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아니하고 한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청이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7조제1항 소정의 청문서도달기간인 7일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청문서를 청문일로부터 5일 전에야 발송하였다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취한 위 청문절차는 위법하며, 위법한 청문절차를 거쳐 내린 위 영업정지처분 역시 위법하다.

청문서는 반드시 불이익처분에 대한 청문의 당사자에게 도달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숙박업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판결하면서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는 구 공중위생법 (1993. 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그 자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영업허가명의자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다¹³⁾.

다만 행정청이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지만 영업자가 이의하지 아니한 채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

대법원은 대중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하여 판결하면서 “행정청이 식품위생법상의 청문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청문서 도달기간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청문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처분은 일단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청문제도의 취지는 처분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업자에게 미리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한 권리침해를 예방하려는 데에 있는 것임을 고려하여 볼 때, 가령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고 있다¹⁴⁾.

청문의 통지를 받은 당사자 등은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당해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7조)¹⁵⁾.

12) 대법원 1993.11.26 제3부 판결 93누17478

13) 대법원 1994.5.27. 제3부 판결 93누18754

14) 대법원 1992.10.23. 제3부 판결 92누2844

15) 행정절차법 심의위원회에서는 「문서의 열람 및 복사청구권」을 어떤 경우에 부여할 것인가를 놓고 많은 토론이 있었다. 독일행정절차법의 경우와 같이 행정절차 일반에 관하여 통치적 부분에서 이를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가 주된 토론의 내용이였다. 독일의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문서열람 및 복사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행정청의 부담이 커지고,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과도 중복되므로 이를 채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정부측의 요청

나. 聽聞의 進行

청문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다.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신청이 있거나 청문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제30조).

청문은 소송절차에서와 같은 구두변론절차를 취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문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제31조).

청문절차에서 당사자 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다.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더라도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제31조).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증거조사는 ①문서·장부·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②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한 질문 ③검증 또는 감정·평가 ④기타 필요한 조사 등의 방법에 의한다.

청문주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필요한 문서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청은 직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34조).

청문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당해 청문일에 구술로 통지할 수 있다(제31조).

행정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개의 사안을 병합하거나 분리하여 청문을 실시할 수 있다(제32조).

이 있었다. 결국 행정절차법의 제정과 아울러 행정정보공개법의 제정이 이루어지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절차를 밟도록 하고, 정식행정절차로서 「청문」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열람 및 복사청구권을 인정하도록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의 제37조가 성안되었다.

청문의 청문주재자는 ①제목 ②청문주재자의 소속·성명 등 인적사항 ③당사자 등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및 출석여부 ④청문의 일시 및 장소 ⑤당사자 등의 진술의 요지 및 제출된 증거 ⑥공개여부 및 공개한 경우 또는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한 경우 그 이유 ⑦증거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요지 및 첨부된 증거 ⑧청문주재자의 의견 ⑨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 기재된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당사자 등은 청문조서의 기재내용을 열람·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제34조).

청문주재자는 당해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 등의 의견진술·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당사자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당해 기간이 경과한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청문주재자는 청문을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등을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제36조).

청문주재자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행정청에 제출함으로써 청문은 종결된다.

청문의 주재자는 재판관이 아니다. 청문과정을 주재하는 행정청의 직원 또는 청문을 위하여 임명된 자일 뿐이다. 따라서 청문의 주재자가 청문결과에 따라 직접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의 의사를 결정하고 대외에 공표할 수 있는 자 즉 「행정청」만이 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의 결과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청문의 결과를 절대로 무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청은 제출받은 청문조서 기타 관계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결과를 적극 반영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제35조).

행정청이 청문결과를 반영함에 있어 청문을 위하여 제출된 증거 등 각종 자료는 청문의 근거가 되는 불이익처분의 범위 안에서 사용되어야 한다. 청문과정에

서 당사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를 위하여 청문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통지되지 아니한 보다 강한 불이익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대법원은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함으로써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¹⁶⁾.

“자동차운수사업자의 운행개시신고 후 미운행을 이유로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청문절차에서 노선버스의 운행개시일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유서 등을 제출하여 위 미운행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 운행개시일까지도 운행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 청문절차에 제출된 사유서도 허위임이 밝혀져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에게 방어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청문절차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유서의 제출은 처분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변론으로 하고 관계법령을 준수하라는 면허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사유는 운송개시신고 후 노선버스의 운행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제24조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면허취소처분은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다시 그 처분사유에 포함시켜 거듭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행정청은 청문을 마친 후 처분을 하기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받은 청문조서등을 되돌려 보내고 청문의 재개를 명할 수 있다(제36조).

행정절차법은 위와 같이 「청문」절차를 재판절차에 준하는 준사법적 정식 행정절차로 구성하고 있다. 청문이 실시되는 이상 청문의 주재자는 당사자등에게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충분히 증언하고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장차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 실시될 경우 개별적인 청문절차상의 각종 요소들의 준수여부가 청문의 흠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다루어질 것인가는 학설 및 판례를 통하여 축적되어야 할 과제가 되리라 생각된다.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취소처분과 관련하여 청문절차의 각종 요소의 준수여부에 관한 판단을 하고 있다¹⁷⁾. 건설업법은 “건설업 면허를 취소할 경우 미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4조, 구법 제42조). 청문의 절차는 동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법

16) 대법원 1993.10.12. 제2부 판결 92누6686

17) 대법원 1983.11.22. 제2부 판결 82누95 참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예정일 7일 전 까지 당해 건설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를 받은 당해 건설업자는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당해 건설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건설업 면허취소처분에 관한 취소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면허취소처분 전에 원고가 피고(서울특별시)의 청문을 위한 출석요구를 받고 시청에 출두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이 사건 건설면허취득경위 등을 진술하고 기술능력이 미비되었으나 기술자를 추가로 보완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 제출하였다면 이로써 피고는 건설업법 제42조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있다"고 선언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충분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다고 판단할 만한 절차적 과정이 있었으면 청문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고 있다.

4. 聽聞節次를 거치지 아니한 行政處分の 效力

가. 다른 法令 등에서 聽聞을 실시하도록 規定하고 있는 경우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청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청문을 할 의무가 있음을 선언한 것이다.

행정절차법이 청문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행정절차법이 발효되기 이전에도 청문을 거칠 것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하지 아니한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은 여러 차례의 판례를 통하여 그 위법성을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청문절차없이 한 영업소폐쇄명령의 효력에 대하여 "행정청이 영입허

가취소 등의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고 설사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소정의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당해영업자가 청문을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영업소폐쇄명령은 위법하여 취소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다¹⁸⁾.

대법원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의 적부에 대한 판결에서 “관계행정청이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당해 건축사들을 사전에 청문하도록 한 법제도의 취지는 위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건축사사무소의 기존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등록취소사유에 대하여 당해 건축사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한 기회를 부여하여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감안하고 처분의 신중성과 적정성을 기하려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설사 건축사법 제28조 소정의 등록취소 등 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건축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닌 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은 위법하다”¹⁹⁾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건축허가취소처분의 적부에 관한 판결에서 “시장 또는 군수가 미리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건축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건축법 제42조의3 단서 소정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위법한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청문을 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 이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인 처분인가” 아니면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인가”가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양약종상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양약종상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약사법 제69조의2 규정에 따른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나 그러한 흠때문에 동 허가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하고 있다²¹⁾.

대법원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의 효력”에 대한 판결에서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

18) 대법원 1983.6.14. 제2부 판결 83누14

19) 대법원 1984.9.11 제3부 판결 82누166

20) 대법원 1990.1.25. 제3부 판결 89누5607

21) 대법원 1986.8.19. 제3부 판결 86누115 참조

1항제3호, 동법시행규칙) (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동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²²⁾.

나. 다른 法令 등이 聽聞을 거칠 것을 規定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청문을 거칠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할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는 행정청은 스스로 “청문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판단하여 청문을 실시하게 되며 행정청이 그 필요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행정청의 고유한 판단영역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없다.

행정절차법이 실시되기 전에도 대법원은 그 수차의 판례를 통하여 이를 명백히 하고 있다.

대법원은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 대한 판결에서 “청문절차

22) 대법원 1986.10.28. 제3부 판결 86누106 참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피고가 구 약사법(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제1항제3호, 같은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에 의하여 이 사건 한약업사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69조의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6.8.19.선고, 86누115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약사법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사유가 없다. 원고는 그밖의 상고이유로서 원심판시중, 원고에게 청문절차로서 출석하라는 통지를 원고의 본적지, 그 이전허가된 영업소 및 그 주소지로 등기우편방식에 의하여 발송하였으나 원고가 그 이전인 1972.6.23자로 그 장위동 주소지에서 서울 관악구 상도동으로 퇴거하였기 때문에 모두 반송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허가취소처분을 하기에 앞서 청문절차를 밟기 위한 출석통지를 하였으나 원고가 주소지를 옮기고서도 피고에게 아무런 신고를 아니한 탓으로 위 청문을 위한 출석통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청문절차를 전혀 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조치를 타당하고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모순, 이유불비 및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처분의 효력에 영향이 없는 이상 이와 같은 사유는 도시 판결에 영향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²³⁾.

대법원은 유형문화재지정고시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청문을 포함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서 당사자의 의견청취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인바, 문화재보호법과 대구직할시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면 지정문화재는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한다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지정에 있어서 문화재의 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규정이나 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행정절차의 규정은 없고, 비록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에 따라 1990.3.1.부터 시행된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이 건조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²⁴⁾.

23) 대법원 1994.3.22. 제2부 판결 93누18969

24) 대법원 1994.8.9. 제1부 판결 94누3414 참조.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행정절차에 관한 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고 전제한 후 위와 같이 판결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5.22. 제3부 판결 92누1032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라북도석유판매업자행정처분기준규칙(1982. 2. 24.) 전라북도 규칙 제103호) 제4조에 의하면, 도지사가 석유사업법 제13조 소정의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의 규칙은 석유사업법 등의 위임규정이 없이 만들어진 것으로서(현행 석유사업법 제22조의2는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위 행정규칙이 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意見聽取의 例外事項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은 제22조제1항 내지는 제3항에서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의 기회 제공등 행정청에게 의견청취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처분의 사전통지의무조항(제21조)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및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견청취의 예외사항을 정하고 있다.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1조).

다만 ①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령 등에서 요구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때 ③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위와 같이 통지를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의견청취의 예외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다.

의견청취의 예외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대법원판례에서는 위와 같은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하여 청문이 필요없는 경우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대법원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²⁵⁾. “자동차관리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권자가 사업정지처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되,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고 법 조문을 인용한 후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사업장이전촉구에 대하여 일정한 기한까지 그 이전을 완료하겠다고 보고하였고, 임시사업장사용허가를 받

25) 대법원 1995.2.14 제1부 판결, 94누10085

음에 있어서도 그 사용기간까지 사업장이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며, 그 후 같은 취지의 공증각서를 첨부하여 임시사업장사용연장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피고로부터 사업장이전에 관한 개선명령을 받고서도 새로운 단지로의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임시사업장에 대하여 본허가를 하여 달라는 신청을 거듭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이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단서 소정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은 중고자동차매매사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²⁶⁾ "구 자동차관리법 제67조(1991.12.31. 법률 제4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교통부장관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할 때 또는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사업자가 취소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경우라 함은 그 행위가 있었던 사실 자체를 직접 확인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위행위가 행정처분의 취소 원인이 되는 것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까지를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고 전제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행정청 (성남시장)은 1989.12.14. 원고에게 중고자동차매매업의 내인가처분을 하면서 그 거시와 같은 시설을 확보한 뒤 본인가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인가처분을 취소한다는 부관을 붙인 사실을 인정하고있다. 원고가 1990.6.1.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을 모두 갖추었다 하여 이를 소명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본인가신청을 하자 피고 행정청은 원고가 확보한 시설만으로는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가 되지 아니한 것이라 하여 이의 이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별도의 조치없이 이미 자신이 한 시설만으로도 위 부관에서 정한 시설확보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보고를 하자 피고는 위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들어 내인가처분을 취소하였다. 대법원은 이에 관한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는 위 자동차관리법

26) 대법원 1992.7.14. 제1부 판결 91누12080

제67조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가 내인가처분을 취소하는 이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지정도매인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있다²⁷⁾.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지정도매인은 개설된 도매시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도매시장이 폐쇄된 이상은 그 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지정승인을 취소함에 있어서 원고가 같은 법 제63조제2항에 규정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일이 없거나 도지사가 같은 법 제63조제4항에 규정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폐쇄된 도매시장에서의 지정도매인인 원고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지정승인을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지정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피고가 지정도매인지정을 취소한 것이 권한없이 행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27) 대법원 1991.2.26. 제2부 판결 90누1397

第3章 聽聞制度에 관한 法制現況

1. 聽聞制度에 관한 法制現況 分析의 必要性

제2장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청문절차」는 준사법적인 행정절차이다. 청문절차는 청문주재자를 별도로 선정하여야 하며, 구두변론절차를 밟아야 하고, 청문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등 정식의 절차를 요하므로 행정청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행정절차이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거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법령등은 행정절차법 시행 이전에 이미 청문절차를 스스로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개별 법령은 청문절차를 거칠 것을 규정하면서 엄격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단순한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청문절차 등 의견청취절차를 둘러싸고 개별 법령이 정한 절차규정 상호간에 통일을 보지 못한 관계로 서로 모순되게 시행되고 있다.

1998년 1월 3일부로 행정절차법이 발효되면 행정절차법과 개별법령상의 행정절차의 중복 및 모순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게 된다. 이 경우 법 운영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위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개별법령에 규정된 행정절차 관계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법령의 정비로 인하여 개별법령상의 다양한 행정절차 규정 및 유형을 단순·일반화하여 행정절차제도의 투명성을 국민과 공무원모두에게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개별법령상의 청문제도를 정비하기 위하여는 먼저 청문제도에 관한 개별 법제 현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청문제도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법제의 조사를 「청문」이라는 용어에 국한시켜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개별법령이 단순한 의견제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청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고, 불이익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행정절차관계법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는 개별법률상의 청문제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6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²⁸⁾.

- 유형 1 : 법률에 청문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
- 유형 2 : 법률에 청문근거를 두고 위임근거없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둔 경우
- 유형 3 : 법률에 청문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위임한 경우
- 유형 4 : 법률에 청문의 근거규정과 구체적인 절차를 함께 둔 경우
- 유형 5 : 불이익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 유형 6 : 의미상으로는 의견제출에 해당되나 청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

위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 절차적 규정의 예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유형1 「법률에 청문근거만을 두고 구체적인 절차를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전당포영업법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동 법은 제28조에서 청문을 규정하면서 “경찰서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영업자 또는 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석명이나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경우 경찰서장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기일 1주일전에 당해 영업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할 뿐 더 이상의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유형 2 「법률에 청문근거를 두고 위임근거없이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로는 산림법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산림법은 제55조의3에서 청문을 규정하면서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는 더 이상의 절차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산림법시행령 제50조는 구체적인 청문절차를 정하고 있다. 즉 “①법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

28)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 행정절차 관계법률 정비계획, 1997. 1. 참조

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청문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한 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비교적 상세한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다.

유형 3 「법률에 청문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절차를 위임한 경우」로는 도로교통법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제101조의2에서 “청문”이라는 제목을 두고 포괄적인 의견청취의 근거를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지방경찰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살고 있는 곳을 알지 못하는 사정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교통법은 의견청취의 절차를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무부령인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63조의2는 구체적인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①법 제10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별지 제66호의4 서식의 청문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1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취소의 경우에 당해 운전자가 별표 16조의 기준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때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청문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운전자는 법규위반 단속현장이나 교통사고 조사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때에는 경찰공무원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진술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있어

서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유형 4 「법률에 청문의 근거규정과 구체적인 절차를 함께 둔 경우」로는 초지법의 예를 들 수 있다.

초지법은 제12조에서 허가취소 절차를 규정하면서 “허가신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에 허가청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사유·청문일자과 장소를 청문일의 15일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은 청문장소에서 자기를 위하여 사실을 설명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청문일에 초지조성자 또는 그 대리인이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절차규정을 법률 속에 두고 있다.

유형 5 「불이익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로는 관세법의 예를 들 수 있다.

관세법은 제72조의3에서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유형 6 「의미상으로는 의견제출에 해당되나 청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경우」로는 농업협동조합법의 예를 들 수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72조의2에 “청문”이라는 제목으로 표기한 후, “주부부장관은 . . . 제169조(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 또는 제17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은 위에 따른 청문의 절차에 관한 더 이상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법규정의 의미상으로는 단순히 의견제출에 해당하는 경우임이 분명히 드러나나, 당해 조문이 “청문”이라는 제목으로 표기하고 있어 용어의 혼선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聽聞制度에 관한 法制現況 分析의 方法

청문제도에 관한 개별법제의 현황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법령전산화작업에 따른 “대한민국헌행법령데이터베이스”(KOLD)에 기초하여 기본 자료를 검색하고,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이 발간·보급하고 있는 “대한민국헌행법령집”을 대조하여 찾아내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현행 법령을 빠짐없이 공신력있게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와 법령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법제현황의 분석은 첫째로 의견청취의 유형별 분석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청문제도에 관한 법제현황을 조사함에 있어서 유의할 점은 법제의 조사를 「청문」이라는 용어에 국한시켜서는 아니되기 때문이다.

개별법령을 의견청취의 유형에 따라 분석한 후에는 각각의 유형을 각 개별법령의 소관부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행정법령의 집행은 행정부처의 임무이며, 모든 행정법령은 그 집행을 위한 책임을 어느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견청취유형별 법령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총괄적으로 다음 도표와 같이 나타난다²⁹⁾.

[표] 의견청취 유형별 법령현황

구분 \ 법령별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청 문	184	166	45	395
공 청 회	8	30	3	41
의 견 청 취	21	36	4	61
의 견 진 술	37	19	22	78
의 견 청 취 근거없는 법령	72	16	13	101
계	322	267	87	676

29) 이장에서 제시된 각종 도표는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 부처별 정비법령내역”에 작성된 것을 필자가 보고서에 맞도록 재구성한 것이다.

각각의 의견청취 유형별 법령현황을 각각의 개별법령의 소관부소별로 분석한 결과는 총괄적으로 아래 도표와 같이 나타난다.

가. 聽聞

법령별 기관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재정경제원	13	12	1	26
통일원			1	1
외무부		1		2
내무부	13	8	6	27
법무부	5	3	1	9
국방부		1		1
교육부	3	5	2	10
문화체육부	12	11		23
농림부	22	19	3	44
통상산업부	30	30		60
정보통신부	4	3		7
환경부	12	7	9	28
보건복지부	24	24		54
노동부		4		8
건설교통부	23	20	6	49
해양수산부	11	11	7	29
과학기술처	5	5		10
공보처	2	2	1	5
국가보훈처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계	184	166	45	395

나. 公聽會

법령별 기관별	법 른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재정경제원		2		2
외 무 부		1		1
교 육 부		1		1
농 립 부		3	1	4
통상산업부	1	4		5
환 경 부	1	1	1	3
보건복지부	1	1		2
노 동 부		1		1
건설교통부	4	2	1	7
총 무 처		7		7
과학기술처	1	6		7
법 제 처		1		1
계	8	30	3	41

다. 意見聽取

기관별 \ 법령별	법 른	대통령령	총리령 · 부령	계
재정경제원	3	8		11
통 일 원		1		1
외 무 부		1		1
내 무 부	1	1		2
법 무 부	1			1
국 방 부		1	1	2
교 육 부		3		3
문화체육부		2		2
농 립 부	1	4		5
통상산업부	3	3	1	7
정보통신부	1			1
보건복지부	1	1		2
노 동 부	1	1	1	3
건설교통부	7	6	1	14
해양수산부	1	1		2
총 무 처		2		2
공 보 처		1		1
공정거래위원회	1			1
계	21	36	4	61

라. 意見陳述

법령별 기관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재정경제원	3	1		4
통일원		1		1
외무부			1	1
내무부	4	1	1	6
법무부	1	1		2
국방부			1	1
교육부		1	1	2
문화체육부		1	1	2
농림부	3			3
통상산업부	1		2	3
정보통신부	3	3	2	8
환경부	3		1	4
보건복지부			2	2
노동부	3	1	3	7
건설교통부	13	7	4	24
해양수산부	1		2	3
과학기술처		1		1
공보처	1			1
법제처		1	1	2
공정거래위원회	1			1
계	37	19	22	78

마. 意見聽取 根據없는 法令

법령별 기관별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계
재정경제원	12	2		14
내무부	4			4
법무부	1			1
국방부		1		1
교육부	2		2	4
문화체육부	6	2		8
농림부	7	1		8
통상산업부	8	1		9
정보통신부	1	3	2	6
보건복지부	10	1		11
노동부	2	1	2	5
건설교통부	10	1	2	13
해양수산부	7	1	5	13
총무처	1	1		2
과학기술처		1		1
공보처	1			1
계	72	16	13	101

3. 個別法令에 나타난 意見聽取制度

위 도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현행 개별법령가운데서 「청문」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184건, 대통령령 166건, 총리령·부령 45건 등 모두 395건에, 「공청회」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8건, 대통령령 30건, 총리령·부령 3건 등 모두 40건에, 「의견청취」라는 용어로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21건, 대통령령 36건, 총리령·부령 4건 등 모두 61건에, 「의견진술」이라는 용어로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37건, 대통령령 19건, 총리령·부령 22건 등 모두 78건에,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의견청취」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법령은 법률 72건, 대통령령 16건, 총리령·부령 13건 등 모두 101건에 달한다.

이들 개별법령가운데서 「청문」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비록 「청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각 법령마다 서로 다른 절차를 채택하고 있고, 청문을 실시하는 요건도 다르다. 따라서 포괄적으로 정비대상법률에 해당한다.

현행 개별법령 가운데서 「의견청취」라는 용어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청문」, 「공청회」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사용되므로 이 용어를 사용한 아래의 개별법령은 모두 정비대상 법령에 해당된다.

현행 개별법령가운데서 「의견진술」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의견진술」의 절차가 과연 행정절차법상의 간소화된 의견진술의 요건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청문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를 의견진술로 간소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개별법령 가운데서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의견청취」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법령은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의견진술, 청문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의 근거를 두지 아니한 법령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법령이므로 모두 정비대상 법령에 해당된다.

각 개별법령에 나타난 의견청취절차는 그 절차를 관장하는 부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는 도표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법령의 집행은 행정부처의

임무이며, 모든 행정법령은 그 집행을 위한 책임을 어느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도표의 양이 방대하므로, 이 보고서의 논리적 흐름의 유지를 위하여 도표를 부록으로 처리하였다³⁰⁾.

개별법령에 나타난 의견청취제도의 분석에 관한 본 단락의 내용은 부록을 참조하시기 바란다.

30) 부록에서 제시된 도표는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에서 법령정비를 위하여 조사·작성한 도표 기초로 하여 이 연구보고서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第4章 聽聞制度의 問題點과 法制改善方案

1. 現行 聽聞制度의 問題點

제3장 및 부록의 도표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현행 “청문”제도는 청문의 요건과 절차 모두가 각각의 법령 가운데서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통일적인 “행정절차법”이 제정되지 아니하였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1987년도에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안은 청문의 표준절차를 규정하면서 청문의 실시요건을 ①법령에서 청문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경우 ②행정청이 청문의 실시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당사자 등의 청문신청이 있는 경우 등 세가지 경우로 한정하는 바 있다.

1987년에 입법예고되었던 행정절차법안은 입법에까지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청문 등 의견청취절차에 대한 개별법령의 문제점은 그대로 남아있었다³¹⁾.

개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의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는 1989년 11월 17일 국무총리훈령 제235호로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을 제정하여 “행정절차운영지침”을 시달하였다.

이 지침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의견청취를 하도록 하고, 그 종류를 의견제출, 청문 및 공청회의 세 가지 종류로 하였다 (제5조).

의견청취유형중 공청회는 당해 행정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하도록 하였다.

이 지침이 공청회 및 의견제출의 경우 그 요건을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에 반하여 청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그 요건을 특정하고 있다.

31) 1987년 법안이 입법에 이르지 못한 이유등에 관하여는, 최송화, 행정절차입법화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제35회 월례발표회, 1993. 3. 7쪽 이하; 박철우, 행정절차법과 기본권의 보장, 저스티스 22권, 1989. 7쪽 이하; 오준근, 공정행정구현을 위한 행정절차법 제정방안, 한국법제연구원, 1995. 27쪽 이하 등 참조

1989년 국무총리행정절차운영지침 제5조 (의견청취의 종류) ①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한다.

2. 청 문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견제출만으로는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

가. 재산권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나.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다. 기타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는 경우

이 지침은 각 행정부서가 행정입법을 함에 대한 지침으로서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갖지 못하며 행정청 내부에서도 각각의 행정청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권고적 효력을 갖는 것이었다. 이 지침의 서두에서 각 부처에 시달한 훈령은 스스로 ①각 부처의 소관법령에 행정절차를 적극 반영할 것 ②법령의 제·개정시 행정절차의 반영여부 심사를 철저히 할 것 ③공공단체 등의 행정절차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등을 지시함으로써 그 권고적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대법원도 “행정절차운영지침”의 구속적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4. 8. 9. 94누3414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에 따라 1990.3.1.부터 시행된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훈령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발하는 일반적인 행정명령으로서 행정기관 내부에서만 구속력이 있을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각 행정청은 이 지침에 따라 소관법령에 행정절차적 규정들을 반영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청문”,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의 용어를 불규칙하게 도입하였을 뿐만아니라 각각의 용어에 대한 절차적 요소도 불규칙하게 도입함으로써 의견청취절차에 있어서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견청취절차에 관한 개별법령 상호간의 모순은, 위에서 청문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은 구체적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첫째, "청문"용어를 법령에 무분별하게 도입한 결과, 각각의 청문규정에 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의 실시가 요구될 경우 행정청에게 무리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의 청문은 「준사법적 의견진술절차」를 의미한다. 개별법률이 「청문」절차를 채택하기로 하고, 아무런 절차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³²⁾. 그러나 행정청이 법령을 집행하면서 개별법령상의 「청문」이라는 용어를 그동안 「절차적 구속을 받지 아니하는 의견진술」로 운용해 온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다.

둘째, 개별법령이 다소간 "청문"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절차가 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절차와 다른 절차인 경우 행정절차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각각 상반된 해석이 가능하여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혼선이 일어날 수 있다.

특히 개별법령이 법률상 청문절차를 채택하기로 하고, 절차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 절차가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와는 달리 의견제출절차 정도로만 활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처분 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3조제1항)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은 제3조의 경우와는 달리 의견청취절차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상의 청문과 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해석하기에 따라 아래의 두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첫째로는 개별법령이 규정하는 절차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32) 법률에 위임의 근거 없이 대통령령에서 비로소 청문에 관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행정절차법은 다른 「법률」에서 청문을 실시하기로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개별법령이 「청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상 행정절차법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정하는 일반법이다. 청문은 행정절차중 핵심적인 절차의 하나이다. 만약에 행정청이 「청문」을 하면서 행정절차법이 정한 공통적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개별법령에 따라 각각 다른 청문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는 의미를 잃을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청문을 실시하며, 어떤 경우에 다른 청문을 실시할 것인가가 분명치 않게 되므로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침해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다.

개별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거칠 것을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상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문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청문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이지만 청문여부가 행정청의 판단에 일임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절차적 정당성에 반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게 된다.

2. 法制改善의 基本方向

가. 法制改善의 目的

행정절차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위와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던 청문 등 의견청취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행정절차법이 바르게 시행되기 위하여는 의견청취에 관한 용어의 통일적 사용이 요청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항 중 그 핵심내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에 따라 상호 모순되게 시행됨이 방지된다면 행정의 투명성도 신뢰성도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견청취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공통적인 절차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문제도를 비롯한 의견청취제도의 개선을 위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 기준은 어떤 목적하에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도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의견청취제도의 개선은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이 그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첫째, 불요불급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청문」의 근거규정을 의견제출로 완화함으로써 행정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

둘째, 개별법령상의 청문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절차간에 상호 혼선 및 모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셋째, 개별법령상 청문절차의 미비로 국민의 절차적·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각각의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아니된다. 특히 행정청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개별법령상의 청문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일변도로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나. 法制改善의 基本方案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방안이 주요한 방안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법안에 청문의 실체적 근거 및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울러 규정하고, 이 근거에 입각하여 개별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실체적 기준을 내부 방침으로 마련한 후 이 방침에 근거하여 가칭〔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개별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괄적 법령정비법률의 제정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정절차법의 주무부서인 총무처가 내부방침으로 실

체적 근거를 정한 후, 각 관계부처에 「국무총리훈령」 등의 형식으로 내부방침을 통보한 후, 각 관계부처에서 스스로 개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방안은 각각 서로 다른 장단점이 있다. 이들 각각의 법제정비방안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장단점에 관하여 분석해 보기로 한다.

(1) 第1案 - 行政節次法の 改正과 關係 法令의 整備

*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법안에 청문의 실체적 근거 및 청문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아울러 규정하고, 이 근거에 입각하여 개별법령을 정비함

이 방안은 일본의 행정절차법이 취하고 있는 방안이다.

일본의 행정절차법 (行政手續法)은 제13조에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의 절차”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이 청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일본행정절차법 (行政手續法) 제13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의 절차) ①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당해 불이익처분의 예정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청문

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나. 가.에 규정하는 것 외에 당사자의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는 불이익처분, 당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해임을 명하는 불이익처분 또는 당사자의 회원인 자의 제명을 명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라. 가. 내지 다.에 계기한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행정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일본법은 위와 같이 행정절차법 속에는 위와 같은 실체적 요건을 규정한 후, 행정절차법과 동시에 제정·공포된 「행정절차법시행을위한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에서는 청문의 요건에 해당하나 특별절차 내지는 간소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를 찾아 예외규정을 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제1안은 행정청 및 국민 모두에게 청문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근거를 제시함

과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 반면에 청문에 대한 실체적 근거가 과연 몇개의 항목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일반화할 경우 행정청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제시될 수 있음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행정청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할 경우, 다양한 부담적 처분 가운데서 반드시 청문을 도입함에 있어 이론이 없는 부담적 처분은 일반화하도록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근거법령, 행정청의 판단 등에 유보하도록 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정심의 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논란 끝에 행정절차법에 직접 청문의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입법화 하였다.

(2) 第2案 : (假稱) 「行政節次法施行을위한關係法律整備에관한法律」을 制定하여 一括整備

*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실체적 기준을 내부 방침으로 마련한 후 이 방침에 근거하여 가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개별법령을 정비함

이 방안은 행정절차법 제정심의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방안이며, 현재 총무처 조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청문이 실시되어야 할 기준을 일괄적으로 행정절차법에 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행정처분 및 불이익처분이 너무 다양하며, 그에 대한 이해관계의 내용과 이해관계인의 범위 또한 다양하다. 국민에게 주는 불이익의 정도가 지대하여 청문이 요구되는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에 일괄적 규정으로 도입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청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 반면에 다수의 국민에 대하여 행해지는 행정처분으로서 그 불이익의 정도가 행정청에게 준사법적 절차운영의 부담 즉 청문절차를 요구할 정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괄적 근거의 도입으로 말미암아 청문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독일의 행정절차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입법화하고 있다. 독일행정절차법은 제28조에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이해관계인이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에 관하여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³⁾. 이는 행정청이 불이익

33) 독일 행정절차법 제28조 (Anhörung der Beteiligte) 제1항. 이어서 제2항은 의견청취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개개의 상황으로 보아 의견청취를 요하지

처분을 함에 앞서 이해관계인에게 일반적으로 의견청취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을 규정한 것이다. 그 반면에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에 해당하는 정식행정절차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정식행정절차는 법규에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행한다”고 규정하여 오직 법령에서 정식으로 언급된 경우에 한하여서만 한정적으로 정식행정절차가 수행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³⁴⁾.

우리 행정절차법도 독일 행정절차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견청취절차 중 「청문절차」를 행하는 요건을 행정절차법에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행정절차법은 제22조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한 후,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①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②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의 두 가지 경우로 한정하였다.

행정절차법이 위와 같이 청문절차를 규정함에 따라 청문제도관련 법령정비가 불가피해 졌음은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바 있다.

청문제도관련 개별법령을 정비함에 있어 총무처 조직국은 “행정절차법에 실제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실제적 기준을 내부 방침으로 마련한 후 이 방침에 근거하여 가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개별법령을 정비한다”는 제2안에 따라 법령정비계획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에 따라 「행정절차법시행에위한공인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1997년 4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총무처 조직국은 이 방안의 장점 및 단점으로서 다음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³⁵⁾.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다음의 경우에 해당될 때 그러하다.

1. 즉시 결정하는 것이 지체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고 또는 공익상 필요한 때
2. 의견청취로 말미암아 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준수가 곤란할 때
3. 관계인이 신청 또는 진술에서 주장한 것을 불이익하게 변경하지 아니할 때
4. 관청이 일반처분이나 동종의 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 또는 자동장치를 이용한 때
5. 행정집행상의 조치를 할 때” 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3항은 “의견청취가 필연적으로 공익에 배치되는 때에는 이를 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다양한 의견청취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34) 독일 행정절차법상의 정식행정절차 (Förmliches Verwaltungsverfahren)는 제5부에 「특별행정절차」(Besonderes Verfahrensarten)의 하나로서 규정되어 있다. 이 절차는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절차에 비하여 그 준수법적 요소가 더욱 강하다. 그 내용에 대하여는 Kopf, VwVfG, § 63~§ 71 ff.

35)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 행정절차 관계법률 정비계획, 1997. 1. 참조

* 장 점 :

- ① 행정절차법 시행에 따른 개별법률상의 문제점 一括 해소
- ② 개별법 개정에 따른 각부처의 부담 완화로 입법경제성 확보
- ③ 통일된 기준과 원칙의 적용으로 절차제도의 합리적 정비
- ④ 대대적인 행정절차제도의 정비를 통한 일반국민의 관심 제고

* 단 점

- ①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통과에 따른 부담
- ② 청문대상 조정에 따른 경실련등 시민단체의 반발 예상

위의 장단점 분석에 대한 지적은 대체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필자는 위의 장단점 분석에 부가하여 이 안의 단점이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지적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① [통일된 기준과 원칙]이 일반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
- ②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도입하도록 하는 적극적 근거를 타법개정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관계부처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
- ③ 청문을 도입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청문을 삭제 내지는 완화하는 일변도로 관계법령을 정비할 경우 행정편의적인 편파적 입법이라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 ④ [통일된 기준과 원칙]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능률과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조화시키는 입법방향일 것이라는 점

위와 같은 단점을 피하기 위하여는 가칭 [청문제도개선을 위한 개별법령 정비 지침]을 관계부처에 시달하고, 이 지침 속에 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 후, 관계부처의 적극적 협조하에서 법령개정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第3案 : 個別法 整備시마다 節次規定을 行政節次法에 맞게 改正함

*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인 법령정비법률의 제정도 피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법의 주무부서인 총무처가 내부방침으로 실체적 근거를 정한 후, 각 관계부처에 「국무총리훈령」등의 형식으로 내부방침을 통보한 후, 각 관계부처에서 스스로 개별법령을 정비하도록 함

이 방안은 제2안에 따른 가칭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의 제정이 어려울 경우에 대비하여 총무처 조직국에서 보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입장이다.

총무처 조직국은 이 안의 장점 및 단점으로서 다음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

* 장 점

- ① 청문대상 조정에 따른 정부의 부담완화
- ② 개별 행정작용의 특수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 확보

* 단 점

- ① 미개정 법률의 경우 행정청 부담 초래 예상
- ② 통일된 기준과 원칙의 지속적 적용과 관리 곤란
- ③ 법률개정이 지연될 경우 행정절차제도의 정착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문의 광범위한 시행으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

(4) 各 方案에 대한 檢討意見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개별법령이 각각 규정하고 있는 의견청취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방안들은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 이들 방안중에서 필자의 입장으로는 제1안이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행정절차법에 담음으로서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형평한 입법이 되도록 하며, 설정된 통일적 기준과 원칙을 개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울러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납득할만한 공통적 기준을 몇개의 항목으로 요약하여 행정절차법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제1안을 채택할 경우 청문이 광범위하게 시행됨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차선책으로서 제2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제3안 즉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인 법령정비 법률의 제정도 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행정절차법의 주무부서인 총무처가 내부방침으로 실체적 근거를 정한 후, 각 관계부처에 「국무총리훈령」 등의 형식으로 내부방침을 통보한 후, 각 관계부처에서 스스로 개별법령을 정비" 하도록 하는 방안은 특히 각 개별법령의 소관부처에 의한 법률개정이 지연될 경우 행정절차제도의

정착이 지연될 수 있으며, 청문제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의 침해가 방지되고, 그 반면 청문의 광범위한 시행으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단점이 크므로 채택되어서는 아니되리라 생각된다.

제2안에 따른 법령정비를 함에 있어서는 먼저 어떤 모습으로 든지 「청문의 통일적 기준과 원칙」이 내부방침으로라도 만들어져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방침은 불이익처분유형 전반에 걸친 엄밀한 분석과 행정청의 부담과 국민의 권익침해간의 저울질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청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할 경우, 다양한 부담적 처분 가운데서 반드시 청문을 도입함에 있어 이론이 없는 부담적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청문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행정청의 불이익처분의 취지, 그 긴급성 등과 국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침해 정도 등을 신중히 비교형량하여 청문제도의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 요청된다.

3. 法制改善의 具體的 基準

가. 概 觀

법제개선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제1안 내지 제3안의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라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법제개선의 구체적이며, 통일적인 기준이다.

법제개선의 통일적 기준은 개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정도와 행정청의 절차상의 부담의 정도를 비교·저울질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비교·저울질 하기 전에 먼저 청문절차가 채택되어야 할 불이익처분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를 찾아 그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나. 聽聞要件의 具體的 基準을 規定하고 있는 立法例

(1) 日本의 行政節次法

제1안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문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표준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로는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들 수 있다.

일본의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다시 한번 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제13조(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의 절차) ① 행정청은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당해 불이익처분의 예정당사자에 대하여 당해 각호에 정하는 의견진술을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1.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청문

가. 인허가 등을 취소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나. 가.에 규정하는 것 외에 당사자의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다.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하는 불이익처분, 당사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해임을 명하는 불이익처분 또는 당사자의 회원인 자의 제명을 명하는 불이익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

라. 가. 내지 다.에 제기한 경우 이외의 경우로서 행정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전호 가. 내지 라.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 변명기회의 부여

일본 총무청 행정관리국이 편찬한 행정절차법 축조해설집은 위의 각 목의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³⁶⁾.

위의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인허가 등에 의하여 형성된 일정한 법률관계를 직접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며 따라서 원상회복을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다시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하고, 또 상대방의 권리, 이익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청문절차의 요건에 해당하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나」목에 해당하는 처분도 소위 형성처분의 법적 성격을 가지며, 예를 들자면 임원 등의 해임처분, 국적상실의 선고처분, 법인 등의 해산명령 등이 해당한다. 조합이나 법인의 해산명령에 대하여는 해산에 관한 규정중에 “해산명령에 의하여 해산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처분이 아

36) 일본 총무청 행정관리국, 행정절차법 축조해설집, 126 쪽 참조. 이 해설집은 위의 조문에서 규정한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다. 「상대방의 자격 또는 지위」라 함은 직업상 또는 사회적 활동을 행함에 있어서의 일정한 신분 또는 지위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임원 의 해임처분이 2호에 해당한다. 「상대방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상대방이 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예를 들어 시험위원, 검사원등의 명칭으로 불리우는 자를 가리킨다. 「상대방의 회원인 자」는 상품거래소 등의 구성원인 회원을 말한다.

나라 소위 법인의 지위를 소멸시키는 처분이다.

「다」목에 해당하는 처분은 임원 등의 해임 등의 작위를 구하는 처분이지만 당해 임원 등에 대하여 보면 처분의 결과로서 일방적으로 임원 등의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며 임원 등의 권리이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도 임원 등의 해임처분과 같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목 및 나목의 형성처분에 준하여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청문절차를 요하는 처분으로 정리하고 있다.

「라」목에 규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는 변명절차 즉 의견청취절차보다 강화된 절차이며 상대방이 될 자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보다 바람직한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처분 이외의 처분이라도 청문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다. “행정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특히 제약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당해 사안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행정청측에서 볼 때에도 청문의 기회를 보장하여 사실평가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처분의 상대방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특별한 사정이 있고 보다 강화된 절차보장을 확보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일본의 행정절차법 제13조제2항은 위에서 열거한 「가」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명기회」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일본행정절차법상의 변명기회의 부여는 우리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진술」에 해당한다.

일본법은 위에서 해설된 바와 같이 인허가 등의 취소나 임원 등의 해임처분 등 행정청의 인허가 등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거나 처분상대방의 지위 등을 박탈하는 처분 및 임원 등의 해임 등의 명령 등 처분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를 명하는 처분이지만 당해 임원 등의 입장에서는 위의 형성처분에 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는 청문절차를 요하는 처분으로 분류하고, 그 밖의 작위 또는 부작위를 상대방에 대하여 구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변명절차를 요하는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변명절차를 요하는 처분으로는 예를 들어 업무 등의 정지명령, 금지명령, 폐지명령, 폐업명령 등이 해당한다³⁷⁾.

37) 일본 총무청 행정관리국, 행정절차법 축조해설집, 129 쪽 참조. 동 해설집은 다만 학교 교육법 제13조에 근거한 폐쇄명령 등과 같이 인허가 등을 얻어서 행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작위 또는 부작위의 명령이 이루어짐으로써 인허가 등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명령에 의하여 당해 업무 등을 행하는 입장이 박탈되는 것이며 제1호 제2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행함으로써 변명절차를 행한 결과 본항 제1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견되고 그 것

일본 총무청 행정관리국은 “불이익처분의 실무상 행정청이 현행 개별법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호의 처분 (영업자격의 박탈 등) 또는 제2호의 처분 어느 하나의 처분과 관련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사전 행정조사등에 의하여 어느 처분을 행할 것인가를 미리 예정하여 그것에 따른 사전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처분 내용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면 행정조사등에 의하여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의 폭에 대응한 처분형태의 범위에서 가장 중한 처분에 해당하는 사전절차를 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고 언급하고 있다.

(2) 國務總理 「行政節次運營指針」

1989년 11월 14일 국무총리훈령 제235호 가운데 발령된 「행정절차운영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으로서 「입법례」라는 제목하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우리 판례도 이를 확인하고 있음은 이미 위에서 언급하였다. 다만 이 지침이 청문요건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여기에 덧붙여서 언급하고자 한다.

행정절차운영지침은 제5조에서 의견청취의 종류를 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제5조(의견청취의 종류) ①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1. 의견제출 : 청문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행한다.

2. 청 문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의견제출만으로는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실시한다.

가. 재산권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

나.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다. 기타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는 경우

행정절차운영지침은 청문을 “의견제출 만으로는 공정한 행정처분을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하는 제도”로서 의견제출에 비하여 절차적 차별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정절차운영지침은 청문의 요건을 정함에 있어 첫번째 요건으로 “재산권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요건은 지극히 추상적이다. 인가, 허가 등의 취소를 명하는 처분이 과연 재산권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일 수 있는

에 근거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근거하여 새로운 청문절차를 하여야 한다.

가? 가 특히 문제가 된다. 행정절차법 심의위원회의 회의과정에서 청문의 일반적 요건의 도입과 관련하여 “인가, 허가 등의 취소”를 일반적 요건으로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 논의과정에서 모든 인가, 허가등의 취소를 청문요건으로 할 경우 행정청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행정절차운영지침에서도 그 범위를 좁혀서 재산권 또는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로 요건을 정하였다는 언급이 있었다. 국민 대다수와 관련되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경우 택시사업자 등 직접적인 사업과 연관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산권 또는 자격의 박탈이라 보기는 어려우리라 생각된다. 행정법상의 자격의 박탈이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특정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신분”의 박탈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지침에 정한 청문의 요건은 위에서 언급한 일본법의 경우와 비교할 때 청문을 인정하는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다. 이 지침은 청문의 요건을 직접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입법의 담당자에게 행정입법을 함에 있어 의견청취제도를 채택할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므로 그 내용도 구체성을 띠기 보다는 불확정개념을 채택하여 행정입법담당자에게 형성의 재량의 폭을 넓혀 놓았음을 그 특징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 不利益處分の 類型分析

(1) 不利益處分の 一般的 類型分析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처분은 위의 도표에서 언급한 것 만도 약 500종에 달한다. 이들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청문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분석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불이익처분의 유형은 그 구분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첫째 불이익처분은 처분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처분, 대물적 처분, 혼합적 처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인적 처분은 특정한 사람에 대한 처분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공인회계사법 제48조), 관세사 등록취소(제2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도로교통법 제78조), 약사의 자격정지(약사법 제71조), 조합임원의 해임명령(염업조합법 제48조) 등을 들 수 있다.

대물적 처분은 사람이 아닌 특정한 물건에 대한 처분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지정보세구역의 취소(관세법 제77조의4),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취소 및 운영정지(청소년기본법 제31조), 공장설립 등의 승인취소(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12조), 건설기계의 사업정지(건설기계관리법 제34조), 특정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의 실시(소비자보호법 제13조) 등을 들 수 있다.

혼합적 처분은 사람과 물건모두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행정재산 등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국유재산법 제28조의2),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제조업 영업정지(소방법 제49조), 특정업무의 정지명령(식품위생법 제64조, 약사법 제69조)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불이익처분은 그 대상인 인의 종류에 따라 자연인에 대한 처분과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인에 대한 처분은 특정의 자연인에 대하여 작위, 부작위, 급부 등을 명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및 직무정지(공인회계사법 제48조), 관세사 등록취소(제24조),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도로교통법 제78조), 약사의 자격정지(약사법 제71조), 조합임원의 해임명령(영업조합법 제48조) 등을 들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처분은 자연인이 아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취소(공인회계사법 제39조), 관세사법인의 업무정지(관세사법 제18조), 단기금융회사의 영업허가취소 및 업무정지(단기금융업법 제17조)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불이익처분은 그 내용에 따라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명하는 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작위를 명하는 처분은 일정한 행위를 행할 의무(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41조), 빈집소유자에 대한 철거·개축·수선명령(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3조), 자연공원내의 건축물의 철거명령, 개수명령 및 이전명령(자연공원법 제41조),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 등의 명령(건축법 제75조) 등을 들 수 있다.

부작위를 명하는 처분은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의무(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특정제품의 판매금지, 특정 용역의 제공금지(소비자보호법 제17조의3),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주세법 제15조),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명령(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특정설비의 사

용정지처분(전기통신기본법 제23조), 선박의 항행정지명령(선원법 제114조) 등을 들 수 있다.

수인을 명하는 처분은 행정권에 의한 실행행사를 감수하고 이에 저항하지 말아야 할 의무(수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특정제품에 대한 시험·검사의 실시(소비자보호법 제13조), 학교의 폐쇄명령(교육법 제58조), 유아원의 폐쇄명령(유아교육진흥법 제10조) 등을 들 수 있다.

급부를 명하는 처분은 일정한 금전·물품 등을 제공할 의무(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처분(제5조, 제6조 등),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제64조),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제20조의2),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된 구직급여의 반환명령(제48조)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불이익처분은 그 효과에 따라 특정인의 자격, 지위 등을 박탈하는 처분, 특정인의 자격, 지위 등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 특정 사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 특정사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이익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 특정한 물건, 시설 등 재산권의 내용에 본질적 제한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 특정한 물건, 시설 등 재산권 행사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정인의 자격, 지위 등을 박탈하는 처분은 특정인의 자격 및 지위를 소멸시켜서 그 자격에 따른 행위를 본질적으로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그 예로는 자연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공인회계사 등록취소(공인회계사법 제48조), 관세사 등록취소(제24조), 운전면허의 취소(도로교통법 제78조), 조합임원의 해임명령(염업조합법 제48조) 등을,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서 회계법인의 설립인가 취소(공인회계사법 제39조), 단기금융회사의 영업허가취소(단기금융업법 제17조) 등을 들 수 있다.

특정인의 자격, 지위 등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은 특정인이 일정기간동안 그 자격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없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공인회계사 직무정지(공인회계사법 제48조), 운전면허의 효력정지(도로교통법 제78조), 약사의 자격정지(약사법 제71조), 관세사법인의 업무정지(관세사법 제1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정지(단기금융업법 제17조) 등을 들 수 있다.

특정 사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은 특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여된 각종 허가, 인가, 특허 등을 취소하여 그 사업을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취소(담배사업법 제 15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보험업법 제150조), 상품권발행자의 인가 또는 등록취소(상품권법 제31조), 신용정보업자의 허가 또는 인가취소(신용정보의이용 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등을 들 수 있다.

특정사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이익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은 일정기간동안 특정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그 사업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담배수입판매업의 정지(담배사업법 제15조), 보험대리점의 업무정지(보험업법 제150조), 상품권의 발행정지(상품권법 제31조), 신용정보업자의 업무정지(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 등을 들 수 있다.

특정한 물건, 시설 등 재산권의 내용에 본질적 제한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은 특정한 물건, 시설 또는 재산권을 소멸시키거나, 이전 등 본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사회간접자본시설공사의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명령(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41조), 빈집소유자에 대한 철거·개축·수선명령(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13조), 자연공원내의 건축물의 철거명령, 개수명령 및 이전명령(자연공원법 제41조),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등의 명령(건축법 제75조) 등을 들 수 있다.

특정한 물건, 시설 등 재산권 행사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처분은 특정한 물건, 시설등의 사용등의 재산권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시시키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이다. 그 예로는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 정지(주세법 제15조), 학원 또는 교습소의 교습정지명령(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특정설비의 사용정지처분(전기통신기본법 제23조), 선박의 항행정지명령(선원법 제114조) 등을 들 수 있다.

(2) 不利益處分の 類型과 聽聞의 基準

위에서 구분한 바와 같이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처분은 다양하며, 그 구분방법도 구분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들 불이익처분이 청문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불이익처분의 강도와 관련하여 특정인의 자격, 지위,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권리, 이익 등을 박탈하는 처분과 이들 자격, 지위, 권리, 이익 등의 행사에

대한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는 처분을 모두 청문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는 처분은 의견제출의 기회만을 부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다.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특정인의 자격, 지위, 특정한 사업을 수행할 권리, 이익 등을 박탈하는 처분은 모두 청문의 대상으로 하되, 그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하는 처분은 단순히 의견제출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자격, 지위 등을 박탈하는 처분은 당사자 등에게 그 자격, 지위 등에 따른 행위를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하며, 그 회복을 위하여는 자격, 지위 등의 취득을 위하여 처음부터 노력하여야 한다. 자격, 지위 등을 박탈당하였다는 전력 때문에 아예 자격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보다 그 취득이 어렵도록 제한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당사자에 대한 권리·이익의 침해 정도를 생각할 때 청문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 반면에 자격, 지위 등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처분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그 자격, 지위 등이 회복되므로 당사자 등의 권리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에서 행정청의 부담과 비교·저울질하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수익적 처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면허, 인가, 특허, 인허, 승인, 인증, 지정, 선정 등 모든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 및 철회등의 경우를 청문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적 행정처분을 구분하여 단순한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만을 부여하도록 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심의위원회의 토의과정에서 청문의 통일적 기준 채택여부를 논함에 있어 현행 행정절차법의 규정처럼 청문의 통일적 기준을 채택하지 말고, 개별 법령의 규정에 맡기도록 한 것의 상당부분이 이 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기억된다. 모든 허가, 인가 등의 취소 및 철회의 경우에 청문을 행하도록 하는 경우 행정청의 부담이 너무 과중하게 될 것이지만, 허가, 인가의 취소 및 철회 중 어느 허가, 인가의 취소 및 철회를 청문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통일적 기준의 설정이 불가능한 것이고, 따라서 개별법령 속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자는 것이 그 논의의 핵심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단순한 금지의 해제에 해당하는 수익적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까지도 모두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게 청문의 부담을 너무 과도하게 지우는 것이라는 논리는 행정청의 부담과 국민에 대한 권리침해의 정도를 생각할

때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허가, 인가 등은 국민의 일정한 경제활동의 기초가 되며, 단순한 금지해제의 성격만을 가지는 허가 또는 인가 등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단순한 금지의 해제라 평가되며, 우리 주위에서 가장 흔한 허가의 종류로서 「운전면허」의 예를 들어볼 때 더욱 그러하다. 「운전면허」는 각종 영업활동의 기초가 되며, 타인의 자가용, 영업용차량의 운전 등과 같이 운전행위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직업이 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국민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의 효과를 구분하여 청문의 대상 여부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통일적 기준의 제시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불이익처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등 박탈적 처분의 경우만을 청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전명령, 철거명령, 제조금지, 판매금지 등 작위 또는 부작위를 명하는 적극적인 불이익 처분도 청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본의 행정절차법은 박탈적 처분만을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위와 같은 입법례는 적극적인 불이익처분이 소극적인 박탈적 처분에 비하여 국민의 영업 등에 관한 각종 경제적 권리의 침해의 정도가 더욱 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는 점에서 부족한 입법례로 평가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행정처분의 유형을 분석하면서 예를 든 바와 같이 특정인의 자격, 지위등을 박탈하는 처분과 함께 특정한 물건, 시설 등 재산권의 내용에 본질적 제한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은 국민의 재산권을 소멸시키거나, 이전 등 본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처분으로서 그 침해의 강도가 약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특정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명령, 특정건축물에 대한 철거·개축·수선명령 등의 적극적 변경명령도 청문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리라 생각된다.

넷째, 불이익처분의 대상인 인의 종류와 관련하여 자연인에 대한 처분만을 청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인에 대한 해산명령, 임원의 해임명령 등 법인에 대한 처분도 청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법인에 대한 처분은 다수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청문의 필요성이 더 강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구분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된다.

다섯째 불이익처분의 단계와 관련하여 수익적 처분의 신청단계에서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청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수익적

처분이 이루어진 후, 행정청이 직권으로 이를 박탈 또는 정지하는 처분만을 청문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가 논의될 수 있다. 수익적 처분의 신청단계에서는 행정청과 다양한 접촉이 이루어지므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까지 청문을 채택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행정청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측면이 있음이 지적될 수 있다. 행정청이 당사자와의 관계하에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이므로 다시금 그 처분에 대한 청문을 하도록 한다면 행정청에게 이중의 부담을 지우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에 따른 거부처분은 청문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일방적으로 국민에 대하여 가하는 불이익처분만을 청문의 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라. 聽聞의 對象이 되는 負擔的 處分の 基準

(1) 共通的 基準

위에서 언급한 입법례와 각종 불이익처분의 유형 및 그 유형에 대한 청문과의 관계 등을 분석할 경우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범주에 속하는 부담적 처분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당사자 등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예 : 허가, 인가, 등록 등의 취소 및 철회).

둘째, 당사자 등의 재산권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예 : 특정 시설의 이전·철거·원상회복 명령).

셋째, 당사자 등의 특정한 경제활동을 무기한 금지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예 : 제조금지, 판매금지).

넷째, 법인 또는 조합 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구성원의 제명을 명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2) 比較衡量的 基準

위의 공통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청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 경우에는 입법자가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청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 등이 입게 될 법익침해의 정도와 청문절차를 수행함으로써 인하여 행정청이 입게 될 부담 및 의견제출로 같음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비교·저울질(衡량)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당사자 등이 입게 될 법익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일단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청문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되는 경우로는 아래의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① 부담적 처분이 다수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② 부담적 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경제활동이 장기간 및 고액의 투자를 요하는 경우
- ③ 부담적 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와 반대로 당사자 등이 입게 될 법익침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일단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줄 필요는 있겠지만, 정식 청문절차 까지 부여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되는 경우로는 아래의 사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① 청문으로 인한 행정청의 부담이 당사자의 불이익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 : 당사자에게 단순히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처분)
- ② 청문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할 경우 장시간에 걸친 불이익 처분의 방치가 오히려 행정청과 당사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 (예 : 1개월 이내의 영업, 자격 등의 정지)

4. 法令의 整備方案

가. 法令整備의 모델

위에서 법령정비의 기본방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법령의 정비방안은 제1안, 제2안 및 제3안이 있을 수 있으며 각각의 방안이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방안 가운데서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법 안에 청문의 실체적 근거 및 청문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아울러 규정하고, 이 근거에 입각하여 개별법령을 정비하는 제1안이 행정청 및 국민 모두에게 청문에 대한 명확한 실체적 근거를 제시함과 아울러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문제점을 모두 해결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안이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

그 반면에 청문에 대한 실체적 근거가 과연 몇 개의 항목으로 일반화될 수 있는 것인가, 일반화할 경우 행정청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제시될 수 있음이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도 제시하였다. 행정청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할 경우, 다양한 부담적 처분 가운데서 반드시 청문을 도입함에 있어 이론이 없는 부담적 처분은 일반화하도록 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근거 법령, 행정청의 판단 등에 유보하도록 하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행정절차법 제정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논란 끝에 행정절차법에 직접 청문의 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입법화 하였다는 점도 위에서 언급하였다.

그러나 청문의 기준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제2안 및 제3안이 가지는 다른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안이 보다 나은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청문의 공통적 기준을 찾아내고자 위에서 논의하였고, 그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먼저 행정절차법을 제22조제1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의 처분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당사자등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나. 당사자등의 재산권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다. 당사자등의 특정한 경제활동을 무기한 금지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라. 법인 또는 조합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구성원의 제명을 명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을 위와 같이 개정할 경우에는 현재 총무처 조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안에 따르는 입법이 가지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다.

- ① [통일된 기준과 원칙]이 일반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는 점이 해소된다.
- ②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도입하도록하는 적극적 근거를 타법개정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관계부처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이 해소된다.

- ③ 청문을 도입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청문을 삭제 내지는 완화하는 일변도로 관계법령을 정비할 경우 행정편의적인 편파적 입법이라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 해소된다.
- ④ [통일된 기준과 원칙]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능률과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조화시키는 입법방향일 것이라는 점을 충족시킨다.
- ⑤ 향후의 입법에 있어 가치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있어 사용된 각종 공통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해소한다.

나. 個別法令의 整備方向

위에서 언급한 어떤 방안에 따르든지 청문제도에 관한 개별법령의 정비는 필요하다. 총무처는 제2안에 따라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의시행을위한공인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안)”을 작성하여 1997년 4월 28일 입법예고하였다.

이 법률안은 제안이유로서 “행정절차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개별법률에 규정된 행정절차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행정절차 관련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을 들고 있다.

이 법률안의 의결주문아래에 언급된 주요골자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사항을 들고 있다.

- 가. 당사자의 재산권·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허가·인가·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법인·조합 등의 설립 취소 또는 해산을 명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나. 일정기간 동안 영업 또는 자격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함
- 다. 전통사찰보존법·위생사등에관한법률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처분을 규정하면서도 의견청취에 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의견청취 근거를 신설함
- 라. 의견진술·공청 등 행정절차법에 맞지 아니하는 용어를 행정절차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여 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입법예고된 이 “행정절차법의시행을위한공인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법률가운데서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94건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불이익처분을 그 유형별로 검토하여 각각의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를 「청문」 및 「의견진술」로 구분하였다.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청의 부담경감 두가지 관점 모두에서 볼 때 개별법령의 정비는 불가피하다. 관계부처가 의견청취절차를 찾아내어 법률개정작업을 하도록 한다면 개정법률의 건수가 많아져서 그 작업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시행을위한공인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이라는 한개의 법률로서 의견청취절차를 일괄하여 정비한다면 개별법령정비의 어려움도 줄어들 뿐 아니라 개별법령정비의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총무처와 다른 개별법령의 소관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입법예고가 이루어진 것이라 생각된다.

개별법령의 정비방안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 기준과 비교형량의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법률안이 청문절차를 채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조항들을 검토할 때 위에서 언급한 청문의 공통적 기준과 대체로 일치한다.

공인회계사법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공인회계사법은 불이익처분으로서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취소(제39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등록취소, 직무정지, 견책 등의 징계에 관한 의결(제48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들 불이익처분에 대한 의견청취절차에 관하여는 공인회계사법은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제39조에 제2항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제2항의 규정방식은 아래와 같다.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회계법인의) 설립인가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제49조에서 「청문」이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은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공인회계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는 단순한 의견청취절차에 지나지 아니한다.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사무와 세무대리 등의 직무를 행하는 자이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은 제1차 및 제2차의 공인회계사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부여된다. 공인회계사의 자격있는 자가 공인회계사의 직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받은 후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회계법인은 공인회계사가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인회계사의 등록취소 및 회계법인의 설립인가취소 등과 같이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자격 또는 지위를 본질적으로 박탈하는 처분은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 기준 및 비교형량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청문을 행하여야 할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 반면에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은 회계법인의 업무에 대한 일시적 정지처분이므로 의견청취절차를 취하여도 무방하리라 생각된다.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의시행을위한공인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안)”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및 제49조를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의견청취) ①재정경제원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업무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재정경제원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하여야 한다.

1.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2.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

이 법률의 입법형식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그 내용에 있어서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인회계사에게 견책,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단계적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일괄적으로 청문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절차의

중복이라는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 경우에 대하여는 「공인회계사법」가운데서 명문으로 위원회의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이 절차를 행정절차법과는 다른 특수한 절차로 규정함으로써 절차의 중복을 방지함이 보다 나은 입법이라 생각된다. 현재 「공인회계사법」이 위원회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현 상황에서는 「청문」절차에 포함시키도록 하되, 차후 이 법안의 주무부서인 재정경제원과 협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입법예고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일괄 개정되는 법률안에서 원안 제39조제2항제2호에 포함되었던 내용은 삭제되었다.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의시행을위한공인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안”은 그 내용이 29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9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법예고된 법률안은 불이익처분에 대한 의견청취규정을 망라하여 “의견청취를 할 경우”와 “청문”을 할 경우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방식은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행정절차법은 제22조에서 의견청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 및 제2항이 청문 및 공청회라는 특별한 방식으로 의견청취를 행하는 경우에 대한 요건을 규정한 후, 제3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함에 있어서 제1항(청문) 또는 제2항(공청회)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3항에 해당하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에 대하여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제정되어 삽입되는 경우, 동일 법률 내에 특정한 처분이 불이익처분 또는 이중효과적 행정처분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다면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의견제출을 특별히 규정한 처분과 의견제출을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처분간에 의견제출권의 부여에 있어 차등을 두어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이 받아들여져서 입법예고되었던 법률안은 의견제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포기하고, 청문에 관하여만 규정하도록 개선되었다³⁸⁾.

38) 이 법률안은 비교적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현재 각 법령이 규정한 「청문」,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의 의견청취관련용어를 검색한 결과에 따라 법률을 구성한 관계로 의견청취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를 망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예컨대 관세법의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3조의 경우, 경제활동 주체에 대한 명확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운송기관의 출발중지 또는 진행중지 명령(제172조), 보세구역 반입명령(제172조의2), 통관의 보류처분(제172조의3) 등에 관하여 관세법은 아무런 의견청취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들 처분에 대하여는 최소

그 예로 법률안은 제1조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제1조(공인회계사법의 개정) 공인회계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청문)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이 법률안은 103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었으나, 법제처 심의결과,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별적인 의견제출 근거규정이 삭제되어, 1997년 6월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71쪽의 분량으로 30여퍼센트 정도가 축소되었다. 조문수도 267개 조문으로 조정되었다.

이 법률안에 의견제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도 아래와 같이 수정되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는 “行政節次法이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됨에 따라 行政節次法과 개별 法律에 중복규정되어 있는 行政節次 관련 規定을 削除하고, 개별 法律의 다양한 의견청취유형을 行政節次法에 맞도록 整備하며, 일정한 原則과 基準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처분을 명확히 개별 法律에 規定함으로써 行政節次法 운영의 實效性을 확보하려는 것임”이라고 제시되었다.

이 법률안의 주요골자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이 제시되었다.

- 가. 개별 法律에 의견제출·청문의 대상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는 不利益處分 중 당사자의 財產權·資格 또는 地位를 직접 剝奪하는 許可·認可·免許 등의 取消處分과 法人·組合 등의 設立認可取消 또는 解散을 명하는 중대한 不利益處分の 경우에는 엄격한 處分節次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함.
- 나. 公社債登錄法·關稅法 등과 같이 당사자에게 중대한 不利益을 주는 認可 및 特許 등의 取消處分을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에 관한 根據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성질에 맞게 청문실시의 根據를 新設함.
- 다. 의견진술·공청 등 行政節次法의 不利益處分節次에 맞지 아니하는 개별 法律

한 의견청취규정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나,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의시행을위한공인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안”은 이에 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법제처의 심의에 따라 차관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청문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의견제출은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해결책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은 일단 해소되었다.

상의 용어를 行政節次法에 적합하도록 整備하여 法 적용상의 혼란을 해소함.

이 법률안은 1997년 6월 12일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있으며,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임시국회에 상정될 계획으로 입법이 추진 중이다.

이 보고서는 청문제도의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과 “행정절차법의시행을위한공인 회계사법등의일부개정법률안”의 당위성을 지적함에 그 기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4개월 정도의 단기로 이 보고서의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 법률에 포함된 294건의 불이익처분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법률에 포함이 안된 법률가운데서 다른 불이익처분을 규정한 법률은 없는가를 찾아내어 이를 제시함이 보다 근본적인 연구로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할 경우 장기간을 요하는 방대한 연구작업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범위는 이 정도에서 마감하고자 한다.

1997년 4월 28일 입법예고되고, 다수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 1997년 6월 12일 현재 차관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 정비에관한법률안”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심의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률은 함께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불이익처분절차에 관한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법률안은 법률안의 의결에 부수된 “참고사항”란에서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즉 “이 法律案은 이 法律案과 같이 國會에 제출되는 初·中等教育法, 高等教育法, 에너지利用合理化法, 電氣通信事業法, 電波法, 電氣通信工事業法, 水質環境保全法 및 自動車運輸事業法 등의 議決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同法律案이 議決되지 아니하거나 修正議決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調整하여야 할 것임” 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행정절차법과 이 법률이 모두 청문의 시행을 위한 통일적 기준을 명백히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법령가운데서 청문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정되는 정비법률이 청문을 요건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결국 청문의 시행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³⁹⁾.

장래의 입법과정에서 불이익처분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개별법령이 청문의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39) 같은 의견, 홍준형, 행정절차법의 문제점, 고시연구 1997 (2), 47쪽 이하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문의 통일적 기준을 행정절차법에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함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행정절차법이 현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총무처의 청문관련 법령과 제도의 운영, 법제처의 법령심사과정 등에서 최소한 내부적으로 청문의 통일적 요건을 분명히 설정하고, 개별법령의 정비에 있어 청문을 그 요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장래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권이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보다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第5章 要約 및 結論

행정절차법이 도입하고 있는 「청문」제도는 재판절차에 해당하는 여러 절차적 요소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다. 「청문」절차는 「준사법적」인 「정식행정절차」에 해당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르면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997년 4월 현재 이미 392건의 법령이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문절차를 위반한 경우 그 절차상 위법으로 인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행정판례도 30건 이상 축적되어 있다.

현행 개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는 행정절차법 제정 이전에 법률에 규정된 것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가 아니다. 행정절차법은 1998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도록 예정되어 있다. 행정절차법이 시행되면서 개별법령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모든 경우에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이 시행되도록 할 것인가가 직접적인 문제로 떠 오른다.

이러한 현재의 법령체계가 방치될 경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행정청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고, 모순된 해석이 가능하여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혼선을 일으킬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절차법의 시행으로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법 시행 이전보다 더 침해하는 경우가 생겨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그 것이다.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앞서 위와 같이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되던 청문 등 의견청취제도의 개선은 불가피하게 되었다.

행정절차법이 바르게 시행되기 위하여는 의견청취에 관한 용어의 통일적 사용이 요청된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항 중 그 핵심내용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에 따라 상호 모순되게 시행됨이 방지된다면 행정의 투명성도 신뢰성도 확보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견청취절차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공통적인 절차에 부합하도록 통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이념에 입각하여 법제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청문제도를 비롯한 의견청취제도의 개선을 위하여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의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들 기준은 어떤 목적하에 설정되어야 할 것인가도 먼저 정해져야 한다.

의견청취제도의 개선은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이 그 일차적 목표가 되어야 하리라 생각된다.

첫째, 불요불급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행정청에게 무리한 부담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청문」의 근거규정을 의견제출로 완화함으로써 행정청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한다.

둘째, 개별법령상의 청문절차와 행정절차법의 절차간에 상호 혼선 및 모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한다.

셋째, 개별법령상 청문절차의 미비로 국민의 절차적 기본적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문」절차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한다.

위와 같은 세 가지 문제점의 해결을 위한 각각의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는 아니된다. 특히 행정청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개별법령상의 청문의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일변도로 법제를 정비하는 작업은 행정편의를 위하여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것이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개선의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그 중에서 특히 다음 세 가지 방안이 주요한 방안일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행정절차법안에 청문의 실체적 근거 및 청문을 하지않아도 되는 경우를 아울러 규정하고, 이 근거에 입각하여 개별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실체적 기준을 내부 방침으로 마련한 후 이 방침에 근거하여 가칭〔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일괄적으로 개별법령을 정비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셋째, 행정절차법에 실체적 근거를 마련하지 아니하고, 일괄적 법령정비법률의 제정도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정절차법의 주무부서인 총무처가 내부방침으로 실체적 근거를 정한 후, 각 관계부처에 「국무총리훈령」 등의 형식으로 내부방침을 통보한 후, 각 관계부처에서 스스로 개별법령을 정비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방안들은 모두 나름의 장단점을 갖추고 있다. 이들 방안중에서 필자의 입장으로는 제1안이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행정절차법에 담음으로서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형평한 입법이 되도록 하며, 설정된 통일적 기준과 원칙을 개별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아울러 행정청과 국민 모두에게 납득할만한 공통적 기준을 몇 개의 항목으로 요약하여 행정절차법에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더불어 제1안을 채택할 경우 청문이 광범위하게 시행됨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시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차선택으로서 제2안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총무처는 현재 이 방안에 따라 입법계획을 추진하여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을 1997년 4월 28일 입법예고하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1997년 6월 12일 차관회의에 상정하였다.

법제개선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제1안 내지 제3안의 어떠한 방안을 채택하는 경우라도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법제개선의 구체적이며, 통일적인 기준이다.

법제개선의 통일적 기준은 개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지는 각종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분석하여 당사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의 정도와 행정청의 절차상의 부담의 정도를 비교·저울질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청문절차가 채택되어야 할 불이익처분에 관한 통일적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일본의 행정절차법을 들 수 있으며, 법령에 해당하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89년의 국무총리 행정절차운영지침이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처분은 부록의 도표에서 언급한 것 만도 약 500종에 달한다. 이들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청문의 대상이 되는가의 여부를 정하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는 불이익처분의 유형을 분석하고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불이익처분의 유형은 그 구분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처분의 대상에 따라 대인적처분, 대물적 처분, 혼합적 처분 등으로, 그 대상인 인의 종류에 따라 자연인에 대한 처분과 법인에 대한 처분으로, 그 내용에 따라 작위, 부작위, 수인, 급부 등을 명하는 처분등으로, 그 효과에 따라 특정인의 자격, 지위 등을 박탈하는 처분, 특정인의 자격, 지위 등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 특정 사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이익을 박탈하는 처분, 특정사업을 수행할 권리 또는 이익을 일시 정지하는

처분, 특정한 물건, 시설 등 재산권의 내용에 본질적 제한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 특정한 물건, 시설 등 재산권 행사의 일시 정지를 명하는 처분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들 불이익처분이 청문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도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입법례와 각종 불이익처분의 유형 및 그 유형에 대한 청문과의 관계 등을 분석할 경우 청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범주에 속하는 부담적 처분은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첫째, 당사자 등의 재산권, 자격 또는 지위를 직접 박탈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둘째, 당사자 등의 재산권의 내용에 중대한 변경을 가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셋째, 당사자등의 특정한 경제활동을 무기한 금지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법인 또는 조합등의 설립을 취소하거나 해산을 명하는 경우 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구성원의 제명을 명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실시되어야 한다.

위의 공통적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다른 경우에 있어서도 일률적으로 청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들 경우에는 입법자가 개별·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청문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이 경우에는 불이익처분으로 인하여 당사자 등이 입게 될 법익침해의 정도와 청문절차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행정청이 입게 될 부담 및 의견제출로 갈음할 수 있는가의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비교·저울질 (형량)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위와 같은 여러 불이익처분과 청문과의 관계의 구분방법에 따라 청문의 기준에 대한 통일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제2안 및 제3안이 가지는 다른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1안이 보다 나은 방안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필자는 청문의 공통적 기준을 찾아내고자 위에서 논의하였고, 그 공통적 기준을 제시하였고 그 기준에 따라 먼저 행정절차법을 제22조 제1항에 대한 개정건의안을 작성하였다. 행정절차법을 이 보고서의 건의안과 같이 개정할 경우에는 현재 총무처 조직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제2안에 따르는 입법이 가지는 문제점 즉 「통일된 기준과 원칙」이 일반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아

니하는 점, 개별법령에서 청문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도입하도록 하는 적극적 근거를 타법개정의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은 관계부처의 부담등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점, 청문을 도입하는 규정은 두지 아니하고 청문을 삭제 내지는 완화하는 일변도로 관계법령을 정비할 경우 행정편의적인 편파적 입법이라는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 「통일된 기준과 원칙」의 설정이 가능하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행정절차법에 반영하는 것이 행정능률과 국민의 기본적인권을 조화시키는 입법방향일 것이라는 점, 향후의 입법, 특히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의 제정에 있어 사용된 각종 공통적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위에서 언급한 어떤 방안에 따르든지 청문제도에 관한 개별법령의 정비는 필요하다. 총무처는 제2안에 따라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관계법률정비에관한법률”로서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총무처가 작성한 이 법률안은 위에서 언급한 청문의 공통적 기준과 거의 일치한다.

이 법률안은 현행 법률가운데서 불이익처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294건의 법률에 포함되어 있는 각종 불이익처분을 그 유형별로 검토하여 각각의 처분에 대한 의견청취절차를 「청문」 및 「의견진술」로 구분한 후, 청문에 대한 근거규정만을 골라서 설정하였었다.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국민의 권익보호 및 행정청의 부담경감 두가지 관점 모두에서 볼 때 개별법령의 정비는 불가피하다. 관계부처가 의견청취절차만을 찾아내어 법률개정작업을 하도록 한다면 개정법률의 건수가 많아져서 그 작업이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이라는 한개의 법률로서 의견청취절차를 일괄하여 정비한다면 개별법령정비의 어려움도 줄어들 뿐 아니라 개별법령정비의 통일성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장점 때문에 총무처와 다른개별법령의 소관부처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입법예고가 이루어지고,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서 성안된 것이라 생각된다.

개별법령의 정비방안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언급한 공통적 기준과 비교형량의 기준을 모두 사용하여 구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리라 생각된다.

입법예고된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은 그

내용이 294개의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26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률안은 비교적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현재 각 법령이 규정한 「청문」, 「의견청취」, 「의견진술」 등의 의견청취관련용어를 검색한 결과에 따라 청문의 근거를 구성한 관계로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설정되었는가는 차후 검증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된다.

이 보고서는 청문제도의 정비를 위한 기본방향과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의 당위성을 지적함에 그 기본적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4개월 정도의 단기로 이 보고서의 작업이 수행되었다. 이 법률에 포함된 294건의 불이익처분을 일일이 검토하여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법률에 포함이 안된 법률 가운데서 다른 불이익처분을 규정한 법률은 없는가를 찾아내어 이를 제시함이 보다 근본적인 연구로서 바람직 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할 경우 장기간을 요하는 방대한 연구작업이 될 것이므로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범위는 이 정도에서 마감하고자 한다.

1997년 4월 28일 입법예고되어, 법제처의 심의를 거쳐 1997년 6월 12일 차관회의에 상정된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안”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차관회의, 국무회의, 국회심의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법률은 함께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률이 가지고 있는 불이익처분절차에 관한 규정내용을 반영하여 꾸준히 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행정절차법과 이 법률이 모두 청문의 시행을 위한 통일적 기준을 명백히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법령가운데서 청문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및 제정되는 정비법률이 청문을 요건으로 포함시키지 아니한 경우, 결국 청문의 시행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맡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래의 입법과정에서 불이익처분이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경우, 개별법령이 청문의 근거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위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와 같이 청문의 통일적 기준을 행정절차법에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함이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보다 바람직하리라 생각된다.

행정절차법이 현행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는 총무처의 청문관련 법령과 제도의 운영, 법제처의 법령심사과정 등에서 최소한 내부적으로 청문의 통일적 요건을 분명히 설정하고, 개별법령의 정비에 있어 청문

을 그 요건에 따라 선별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장래의 입법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인권이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보다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보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부록 1]

「行政節次法の施行에 따른 公認會計士法 등의 整備에 관한 法律(案)」⁴⁰⁾

제1조(公認會計士法の 개정) 公認會計士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3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9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39條의 規定에 의하여 會計法人의 設立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9條를 削除한다.

第2條(公社債登錄法の 개정) 公社債登錄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機關의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條(關稅法の 개정) 關稅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章第4節에 第12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7條의2(청문) 稅關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2條의3第6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管理保稅區域의 指定取消
2. 第77條의4의 規定에 의한 指定保稅區域의 取消
3.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營人의 特許取消
4. 第9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보세공장의 指定取消

第4條(關稅士法の 개정) 關稅士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4條(청문) 關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關稅士法人의 設立認可取消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通關取扱法人의 許可取消

40) 이 법률안은 1997년 4월 28일 입법예고되었다.

第5條(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 法律의 改正)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6條(國有財産法の 改正) 國有財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8條의2(청문) 管理廳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財産등의 사용·收益 許可를 取消 또는 撤回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條(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의 改正) 金融産業의構造改善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章에 第1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4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實金融機關의 營業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條(短期金融業法の 改正) 短期金融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1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7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短期金融會社의 營業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9條(담배事業法の 改正) 담배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의3(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輸入販賣業 또는 都賣業의 登錄取消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小賣人의 指定取消

第10條(擔保附社債信託法の 改正) 擔保附社債信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0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信託業의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1條(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의 改正) 不動産實權利者名義登記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를 削除한다.

第12條(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の 改正)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誘致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2項 및 第42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42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2條의3(청문) 主務官廳은 第41條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처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條(商品券法の 改正) 商品券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2條(청문) 財政經濟院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品券發行者의 認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條(相互信用金庫法の 改正) 相互信用金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章에 第2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4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信用金庫의 營業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信用管理基金法 第30條의9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 第30條의11第1項 또는 第30條의15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으로 인하여 契約移轉이 완료된 金庫에 대하여 營業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先物去來法の 改正) 先物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84條第4項 및 第85條第2項중 “第83條第3項 및 第5項”을 “第83條第3項”으로 한다.

第8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4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83條의 規定에 의한 去來所 設立認可의 取消
2. 第84條의 規定에 의한 先物業者의 許可取消

第16條(消費者保護法の 改正) 消費者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2條의2(청문)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7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物品의 製造·輸入·販賣禁止 또는 당해 用役의 제공금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條(收入印紙에관한法律의 改正) 收入印紙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9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販賣人의 指定取消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8條(信用管理基金法の 改正) 信用管理基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의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의16(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이 第30條의11第1項 또는 第30條의1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契約移轉의 決定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9條(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의 改正)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情報業者의 許可 또는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0條(信用協同組合法의 改正) 信用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章에 第8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6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86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聯合會 또는 中央會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1條(信託業法の 改正) 信託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章에 第2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9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信託會社의 營業認可 取消
2.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信託會社의 營業認可 取消

第22條(外國換管理法의 改正) 外國換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換銀行 또는 換錢商의 認可取消 또는 營業閉鎖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條(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의 改正)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9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投資家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借款契約의 認可 또는 申告受理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4條(銀行法の 改正) 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40條의6(청문) 處分權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專業企業家の 承認取消
2. 第37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金融機關의 支店 또는 代理店の 認可取消
3.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의 認可取消

第25條(長期信用銀行法の 改正) 長期信用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條의2(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長期信用銀行의 營業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6條(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의 改正) 綜合金融會社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金融會社의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7條(酒稅法の 改正) 酒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의2(청문) 國稅廳長 또는 稅務署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5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酒造士의 免許取消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條件違反으로 인한 免許取消
3.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酒類製造場의 各種 酒類製造의 免許取消
4.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밀술·술덧의 製造者 免許取消
5.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酒類販賣業의 免許取消

第28條(證券去來法の 改正) 證券去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6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6條의3(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55條(第70條의7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證券會社·投資諮問會社의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2. 第155條(第179條第4項 또는 第180條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

第29條(證券投資信託業法の 改正) 證券投資信託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8條(청문) 財政經濟院長官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0條(韓國銀行法の 改正) 韓國銀行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章에 第11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6條의2(청문) 金融通貨運營委員會가 第116條의 規定에 의하여 金融機關의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1條(海外移住法の 改正) 海外移住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6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의6(청문) 外務部長官은 第10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移住斡旋業者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2條(寄附金品募集規制法の 改正) 寄附金品募集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의2(청문) 許可權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募集者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3條(農漁村道路整備法の 改正) 農漁村道路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6條의2(청문) 郡守는 第25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4條(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の 改正) 農漁村住宅改良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청문) 市長·郡守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빈집 所有者에 대한 撤去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5條(道路交通法の 改正) 道路交通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1條의2(청문) 지방경찰청장은 제71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6條(射擊 및 射擊場 團束法의 改正) 射擊 및 射擊場 團束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의2(청문) 許可官廳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射擊場設置者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7條(射倖行爲 등 規制 및 處罰 特例法의 改正) 射倖行爲 등 規制 및 處罰 特例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를 削除한다.

第6章에 第2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7條의2(청문) 警察廳長 또는 地方警察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의 取消
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許可의 取消

第38條(새마을금고法의 改正) 새마을금고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2條의2(청문) 主務部長官은 第62條의 規定에 의하여 금고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39條(消防法의 改正) 消防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6條(청문) 내무부장관,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취소
2.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
3.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업의 등록취소
4.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취소
5.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취소
6.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의 면허취소
7. 제65조의9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취소

第40條(小河川 整備法의 改正) 小河川 整備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 및 第18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8條의2(청문) 管理廳은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1條(屋外廣告物等管理法의 改正) 屋外廣告物等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條(청문)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廣告物 등의 許可取消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屋外廣告業 閉鎖命令

第42條(溫泉法의 改正) 溫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청문)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굴착許可의 取消

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溫泉利用許可의 取消

第43條(用役警備業法의 改正) 用役警備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1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2(청문) 警察廳長 또는 許可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6條의5의 規定에 의한 警備指導士資格의 取消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用役警備業의 許可取消

第44條(遊船및渡船事業法의 改正) 遊船및渡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7條(청문) 시·도지사 또는 海陽경찰청장은 제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유·도선사업의 면허취소 또는 사업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5條(自然公園法의 改正) 自然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第2項 및 第40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4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1條의2(청문) 公園管理廳은 第39條 또는 第4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6條(典當舖營業法의 改正) 典當舖營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청문) 警察署長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典當舖主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7條(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の 改正)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6條의2(청문) 면허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면허취소
2.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허가취소
3.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총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사용자의 허가취소

第48條(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의 改正) 風俗營業의規制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8條(청문) 警察署長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風俗營業所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9條(行政士法の 改正) 行政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청문) 大韓行政士會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士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0條(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의 改正) 公益法務官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8條(청문) 法務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務官 身分剝奪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1條(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의 改正) 公益法人의設立·運營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의2(청문) 主務官廳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益法人의 設立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2條(法務士法の 改正) 法務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第3項, 第43條第2項 및 第51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8章에 第7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2(청문)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의 登錄取消

2.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法務士合同法人 設立認可의 取消

第53條(辯護士法の 改正) 辯護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2項 및 第3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4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3條의2(청문) 法務部長官은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法務法人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8條의6第2項중 “第43條”를 “第43條·第43條의2”로 한다.

第54條(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의 改正) 保護觀察등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5章第2節에 第7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2(청문) 法務部長官은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生保護事業者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5條(教育法の 改正) 教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2條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2條의5(청문) 監督廳은 第91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閉鎖를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6條(私立學校法の 改正) 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7條의2(청문) 管轄廳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校法人의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7條(幼兒教育振興法の 改正) 幼兒教育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청문) 認可廳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幼兒園의 閉鎖를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8條(資格基本法の 改正) 資格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청문)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民間資格의 公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59條(學校施設事業促進法の 改正) 學校施設事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의2(청문) 監督廳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計劃의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0條(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의 改正)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청문) 教育監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學院의 登錄抹消
2.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習所의 廢止命令

第61條(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의 改正) 學點認定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2(청문) 教育部長官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學習課程評價認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2條(競輪·競艇法の 改正) 競輪·競艇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競走場 設置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3條(公演法の 改正) 公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條(청문) 文化體育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公演者 登錄取消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公演場 設置許可의 取消
3. 第19條의3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 公演許可 取消

第64條(觀光宿泊施設支援등에관한特別法の 改正) 觀光宿泊施設支援등에관한特別

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등의 取消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 및 지정의 取消

第65條(觀光振興法の 改正) 觀光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9條(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등 또는 事業計劃承認의 取消
2.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取消

第66條(圖書館및讀書振興法の 改正) 圖書館및讀書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文化體育部長官은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圖書館의 登錄을 取消 하고자 하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7條(文化財保護法の 改正) 文化財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9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9條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 文化財管理局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8條의5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術者の 登錄取消
2. 第18條의7의 規定에 의한 修理技能者の 登錄取消
3. 第18條의9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修理業者의 登錄取消
4.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取消
5.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文化財賣買業者의 許可取消

第68條(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の 改正) 博物館및美術館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計劃의 承認取消

2.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博物館 또는 美術館의 登錄取消

第69條(映畫振興法の 改正) 映畫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7조의 規定에 의하여 영화업자의 登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0條(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의 改正) 外國刊行物輸入配布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외국간행물수입업자의 登錄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1條(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의 改正) 音盤및비디오物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條(청문) 登錄廳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2條(著作權法の 改正) 著作權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0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6章에 第8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0條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8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著作權委託管理業의 許可를 取消하거나 營業의 閉鎖를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3條(傳統寺刹保存法の 改正) 傳統寺刹保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4條(地方文化院振興法の 改正) 地方文化院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文化院의 設立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5條(青少年基本法の 改正) 青少年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3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1條의2(청문) 市·道知事は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修鍊施設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6條(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의 改正) 體育施設의설치·이용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청문)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3.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또는 營業의 閉鎖命令

第77條(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의 改正) 出版社및印刷所의登錄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제5조의3(청문) 등록청은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8條(鄉校財産法의 改正) 鄉校財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의2(청문) 文化體育部長官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鄉校財團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9條(家畜傳染病豫防法の 改正) 家畜傳染病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0條의2(청문) 動物檢疫機關의 長은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飼養管理人 또는 保管管理人の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0條(農産物檢査法の 改正) 農産物檢査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제17조의2(청문) 검사소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1條(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의 改正) 農水産物加工産業育成및品質管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2(청문)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2條(농수산물수출진흥법의 改正) 농수산물수출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제34조의2(청문) 농림부장관은 제34조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생산자·지정수집·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3條(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의 改正) 農水産物流通및價格安定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3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63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3條의3(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都賣市場의 開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都賣市場法人 또는 都賣市場共販場開設者의 指定 또는 承認取消
2. 第6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仲都賣業의 許可 또는 蒐集商의 登錄取消

第84條(農藥管理法의 改正) 農藥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청문) 農村振興廳長, 市·道知事 또는 國立植物檢疫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登錄取消
2. 第14條(第16條第4項 또는 第1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品目登錄의 取消

第85條(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の 改正)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0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7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0條의2(청문) 農林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7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6條(農漁村整備法の 改正) 農漁村整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第2項, 第98條第3項 및 第4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9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98條의2(청문) 農林部長官 또는 海洋水産部長官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休養地事業者의 지정取消
2. 第98條의 規定에 의한 認可·승인·許可 또는 지정의 取消

第87條(農業機械化促進法の 改正) 農業機械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條(청문) 農林部長官은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8條(農業協同組合法의 改正) 農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2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72條의2(청문) 主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第127條 및 第16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取消
2. 第172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解散命令

第89條(農地改良組合法의 改正) 農地改良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97條의2(청문) 農林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6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合併·分割 또는 解散命令
2. 第9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 또는 當選의 取消

第90條(農地法の 改正) 農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7條(청문) 農林部長官,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區廳長은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91條(肥料管理法의 改正) 肥料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청문)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肥料生産業者 또는 肥料輸入業者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肥料販賣業者의 販賣營業所

에 대한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92條(飼料管理法의 改正) 飼料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의2(청문) 農林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의 登錄取消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의 登錄取消

第93條(山林法の 改正) 山林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의3(청문) 山林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地方山林管理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認可의 取消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轉用許可의 取消
3. 第31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休養林造成計劃承認의 取消
4. 第3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樹木園造成計劃承認의 取消
5.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種·苗生産業登錄의 取消
6.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貸付 또는 使用許可의 取消
7. 第89條의 規定에 의한 分收林設定의 取消
8. 第9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의 形質變更許可의 取消
9. 第90條의4第2項(第90條의6第4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의 取消
10. 第90條의4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團地의 指定解除

第94條(獸醫師法の 改正) 獸醫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청문) 農林部長官 또는 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獸醫師免許의 取消
2.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動物病院 開設許可의 取消

第95條(糧穀管理法의 改正) 糧穀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청문) 市·道知事は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糧穀加工業者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96條(人蔘産業法の改正) 人蔘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청문) 農林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97條(林業振興促進法の改正) 林業振興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청문) 山林廳長은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98條(林業協同組合法의改正) 林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1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71條의3(청문) 山林廳長과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3條의3(第67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設立認可取消
2. 第71條의2의 規定에 의한 解散(중전의 山林組合法 第26條第1項第4號의 경우를 포함한다)

第99條(蠶業法の改正) 蠶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청문) 市·道知事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絲業者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00條(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의改正) 鳥獸保護및狩獵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의2(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狩獵免許의 取消
2. 第2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捕獲許可의 取消
3.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人工飼育許可의 取消
4.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剝製業登錄의 取消

第101條(種子産業法の改正) 種子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9條(청문) 農林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管理士의 資格取消
2. 第13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種子業者 또는 種子賣買業者의 種子業 登錄取消 또는 營業所의 閉鎖命令

第102條(草地法の 改正) 草地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第2項 내지 第5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1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2(청문) 市長·郡守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03條(畜産物衛生處理法の 改正) 畜産物衛生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4項을 削除한다.

第1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8條의2(청문) 農林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許可, 品目許可 또는 製造許可의 取消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04條(畜産法の 改正) 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0條(청문) 農林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師의 免許取消
2.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精液等處理業의 許可取消
3.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授精所의 登錄取消
4. 第31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孵化業등의 登錄 또는 許可의 取消
5.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家畜市場 開設許可의 取消

第105條(畜産業協同組合法의 改正) 畜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2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2條의2(청문) 主務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103條 및 第1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取消
2. 第142條의 規定에 의한 組合의 解散命令

第106條(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의 改正) 計量 및 測定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2.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07條(高壓가스安全管理法の 改正) 高壓가스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의3을 削除한다.

第35條의3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5條의3(청문) 許可官廳 또는 登錄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2. 第35條의2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指定取消

第108條(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의 改正) 工業配置 및 工場設立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의2(청문)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 등의 承認取消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取消
3. 第2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取消
4.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 등의 承認取消

第109條(鑛業法の 改正) 鑛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2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의 取消 또는 鑛區의 減少處分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鑛業權의 取消
3.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租鑛權의 取消

第110條(軍納에 관한 法律의 改正) 軍納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納業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11條(對外貿易法の 改正) 對外貿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9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各 組合의 設立認可取消
2.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貿易商社의 指定取消

第112條(都市가스事業法の 改正) 都市가스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43條의3(청문) 通商産業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13條(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의 改正) 貿易業務自動化促進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14條(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의 改正) 半導體集積回路의 配置設計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9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の 取消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配置設計權의 設定登錄取消

第115條(發明振興法の 改正) 發明振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7條(청문) 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센터의 許可 또는 指定取消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機關의 指定取消

第116條(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의 改正) 訪問販賣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0條(청문) 市·道知事は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17條(産業標準化法の 改正) 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7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18條(商工會議所法の 改正) 商工會議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1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40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議員總會의 解散
2.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選舉 또는 當選의 取消

第119條(石油事業法の 改正) 石油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0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3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0條(石炭産業法の 改正) 石炭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2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1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21條第1項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1條(送油管事業法の 改正) 送油管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2條(輸出自由地域設置法の 改正) 輸出自由地域設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7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3條(輸出品品質向上에 관한 法律의 改正) 輸出品品質向上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取消

第124條(昇降機製造 및 管理에 관한 法律의 改正) 昇降機製造 및 管理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3.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25條(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 管理法의 改正) 液化石油가스의 安全 및 事業 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의2(청문) 許可官廳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6條(鹽 管理法의 改正) 鹽 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4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7條(鹽業組合法의 改正) 鹽業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8條(오존層 보호를 위한 特定物質의 製造 規制 등에 관한 法律의 改正) 오존層 보호를 위한 特定物質의 製造 規制 등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許可의 取消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數量의 許可取消

第129條(流通産業發展法の 改正) 流通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청문) 市·道知事は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0條(電氣工事業法の 改正) 電氣工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4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1條(電氣事業法の 改正) 電氣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1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4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2條(電氣用品安全管理法の 改正) 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3條(電力技術管理法의 改正) 電力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6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4條(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 관한 法律의 改正)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3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3條의2(청문) 中小企業廳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5條(中小企業創業支援法の 改正) 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會社 및 相談會社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創業保育센터事業者의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6條(中小企業協同組合法의 改正) 中小企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0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主務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을 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7條(集團에너지事業法の 改正) 集團에너지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8條(品質經營促進法の 改正) 品質經營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7條·第1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9條(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の 改正) 航空宇宙産業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8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0條(海底鑛物資源開發法の 改正) 海底鑛物資源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2條의2(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探查權 또는 採取權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1條(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의 改正) 化學武器의금지를위한特定化學物質의製造·輸出入規制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2條(環境親和의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관한 法律의 改正) 環境親和의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7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 또는 研修機關의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3條(別定郵遞局法の 改正) 別定郵遞局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2(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別定郵遞局의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4條(有線放送管理法의 改正) 有線放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2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2(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臨時許可의 取消
2. 第22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第145條(電氣通信基本法の 改正) 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45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5條의2(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3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第146條(遞信窓口業務의 委託에 관한 法律의 改正) 遞信窓口業務의 委託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8條의2(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契約을 解止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7條(大氣環境保全法の 改正) 大氣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2條(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1條第3項 · 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2. 第2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者에 대한 登錄의 取消
3.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供給·販賣 또는 使用의 禁止命令
4.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燃料의 製造·販賣 또는 使用의 禁止命令
5. 第34條第4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缺陷是正命令
6.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7. 第4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에 대한 指定의 取消
8.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에 대한 登錄의 取消

第148條(먹는물管理法의 改正) 먹는물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2條(청문)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2.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第149條(騒音·振動規制法の 改正) 騒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4條(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工事의 閉鎖命令
3.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4. 第45條(第47條第5項 및 第4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50條(水道法の 改正) 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9條(청문) 環境部長官, 建設交通部長官,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貯水槽清掃事業場의 閉鎖命令
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認可의 取消

第151條(水質環境保全法の 改正) 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3條(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1條第3項·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2.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3. 第4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4. 第43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廢水處理劑의 製造 또는 販賣의 禁止命令
5. 第4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52條(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의 改正)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1條(청문)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2.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53條(有害化學物質管理法의 改正) 有害化學物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2條(청문)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54條(自然環境保全法の 改正) 自然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155條(廢棄物管理法의 改正) 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7條(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2. 第30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閉鎖命令
3.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56條(廢棄物の國家間移動및그처리에관한法律의 改正) 廢棄物の國家間移動및 그처리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를 削除한다.

第157條(下水道法の 改正) 下水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7條의2(청문) 公共下水道管理廳은 第13條 및 第20條의 許可를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58條(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의 改正)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를 削除한다.

第159條(環境影響評價法の 改正) 環境影響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청문) 環境部長官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60條(家庭儀禮에관한法律의 改正) 家庭儀禮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1條(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의 閉鎖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61條(公務員및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の 改正) 公務員및私立學校教職員醫療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의2를 削除한다.

第162條(公衆保健獎學을爲한特例法の 改正) 公衆保健獎學을爲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0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醫師·齒科醫師 또는 看護師의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63條(公衆衛生法の改正) 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4條(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3條第1項 또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의 取消 또는 閉鎖命令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3. 第31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에 대한 지정의 取消
4.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의 認可取消

第164條(國民年金法の改正) 國民年金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65條(老人福祉法の改正) 老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條의2(청문)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廢止命令 또는 許可의 取消
2.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66條(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の改正) 農漁村등保健醫療를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167條(大麻管理法의改正) 大麻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4條의2(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68條(痲藥法の改正) 痲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3條의2(청문) 免許廳은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痲藥取扱者의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69條(埋葬및墓地등에關한法律의改正) 埋葬및墓地등에關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4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4(청문) 道知事は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施設의 使用禁止를 명하거

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0條(母子福祉法の 改正) 母子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4條의2(청문) 市·道知事は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 명하거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1條(社會福祉事業法の 改正) 社會福祉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5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人의 設立許可取消
2.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3.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命令

第172條(生活保護法の 改正) 生活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章에 第24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4條의2(청문) 保護機關은 第1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결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3條(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의 改正) 性暴力犯罪의處罰및被害者保護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9條의2(청문) 市·道知事は 第29條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廢止를 명하거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4條(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의 改正) 屍體解剖및보존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5條(食品衛生法の 改正) 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4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5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의 取消나 營業所의 閉鎖命令

2.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第176條(兒童福祉法の 改正) 兒童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6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6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認可 또는 委託의 取消
2. 第26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閉鎖命令

第177條(藥事法の 改正) 藥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9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9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 서울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승인 또는 登錄의 取消, 品目製造禁止 命令 또는 品目輸入禁止命令
2. 第7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第178條(嬰幼兒保育法の 改正) 嬰幼兒保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 명하거나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9條(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의 改正) 外國民間援助團體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80條(衛生士등에관한法律의 改正) 衛生士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81條(淪落行爲등防止法の 改正) 淪落行爲등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82條(應急醫療에관한法律의 改正) 應急醫療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8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 또는 資格의 取消
2.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營業許可의 取消 또는 閉鎖命令

第183條(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의 改正) 醫療技士등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6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84條(醫療法の 改正) 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3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3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許可의 取消
2.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등의 사용금지명령
3.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 또는 醫療機關의 閉鎖命令
4.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第185條(醫療保險法の 改正) 醫療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8條를 削除한다.

第186條(醫療保護法の 改正) 醫療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를 削除한다.

第187條(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の 改正) 入養促進및節次에관한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4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88條(障礙人福祉法の 改正) 障礙人福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1條의2(청문) 市·道知事は 第42條 또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廢止를 명하거나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89條(傳染病豫防法の 改正) 傳染病豫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0條의9(청문) 市·道知事は 第40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90條(精神保健法の 改正) 精神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1條(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許可의 取消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設置의 取消
3.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閉鎖命令

第191條(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의 改正)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5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92條(血液管理法의 改正) 血液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청문) 保健福祉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1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2.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許可의 取消

第193條(雇傭保險法の 改正) 雇傭保險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3條를 削除한다.

第194條(公認勞務士法の 改正) 公認勞務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2條(청문) 勞働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條의6의 規定에 의한 設立認可의 取消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195條(國家技術資格法の 改正) 國家技術資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2條의2(청문) 主務部長官은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資格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96條(技能大學法の 改正) 技能大學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1條의2(청문) 勞働部長官 또는 教育部長官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97條(産業安全保健法の 改正) 産業安全保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3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3條의2(청문 및 처분기준) ① 勞働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5條·第16條·第30條·第31條·第36條·第42條·第43條·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2. 第34條의5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3.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4.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② 第15條·第16條·第30條·第31條·第34條의5·第36條·第38條·第42條·第43條·第47條·第49條 또는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取消 또는 指定의 기준은 勞働部令으로 정한다.

第198條(職業安定法の 改正) 職業安定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3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6條의2(청문) 勞働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3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99條(職業訓練基本法の 改正) 職業訓練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6條의2(청문) 勞動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職業訓練施設設置 承認의 取消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認定職業訓練 認可의 取消
3.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內職業訓練計劃 承認의 取消
4.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教師 免許의 取消

第200條(建設機械管理法의 改正) 建設機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指定의 取消
2.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의 閉鎖命令
4.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操縱士免許의 取消

第201條(建設技術管理法의 改正) 建設技術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7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7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지정 또는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02條(건설산업기본법의 改正) 건설산업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청문)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規定에 의하여 건설업의 면허취소 또는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03條(建築法の 改正) 建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5條(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69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04條(建築士法の 改正) 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免許의 取消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士事務所의 登錄取消

第205條(高速鐵道建設促進法の 改正) 高速鐵道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7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을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06條(骨材採取法の 改正) 骨材採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3項 및 第31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4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7條의2(청문)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業의 登錄取消
2.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骨材採取許可의 取消

第207條(交通安全法の 改正) 交通安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의7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條의7(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7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安全管理者的 資格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08條(國有鐵道の運營에 관한 特例法の 改正) 國有鐵道の運營에 관한 特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 후단을 削除한다.

第209條(國土利用管理法의 改正) 國土利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의 제목“(監督 및 意見陳述)”을“(監督)”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道知事는”을“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으로 하며,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6條의2(청문)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10條(道路法の 改正) 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5條의2(청문) 管理廳이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非管理廳의 工事施行許可를 第74條 또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11條(都市計画法의 改正) 都市計画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8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78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3條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의 取消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의 取消

第212條(都市公園法の 改正) 都市公園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3條의2(청문) 公園管理廳 또는 綠地管理廳은 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13條(都市交通整備促進法の 改正) 都市交通整備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의9(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9條의8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交通影響評價機關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14條(都市再開發法の 改正) 都市再開發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4章에 第50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0條의2(청문) 市長·郡守·區廳長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組合設立認可의 取消
2. 第22條第1項·第23條第2項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認可의 取消
3.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處分計劃認可의 取消

第215條(都市鐵道法の 改正) 都市鐵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鐵道事業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16條(不動産仲介業法の 改正) 不動産仲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4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許可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6條의4第5項의 規定에 의한 去來情報事業者의 指定取消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仲介業의 許可取消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仲介士資格의 取消

第217條(索道·軌道法の 改正) 索道·軌道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6條의3(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索道事業者 또는 軌道事業者의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18條(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의 改正)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建設交通部長官, 海洋水産部長官,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施行者指定의 取消
2. 第17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承認의 取消

第219條(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の 改正) 首都圈新空港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3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이 第7條第1項의 實施計劃의 승인을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0條(施設物の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の 改正) 施設物の安全管理에관한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6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專門機關의 지정의 取消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維持管理業의 登錄의 取消

第221條(旅客自動車터미널法の 改正) 旅客自動車터미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25條의3(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旅客自動車터미널 事業者의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2條(有料道路法の 改正) 有料道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에 第3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③建設交通部長官이나 당해 地方道路管理廳이 第12條의 非道路管理廳의 有料道路工事 施行許可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3條(流通團地開發促進法の 改正) 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1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4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1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4條(賃貸住宅法の 改正) 賃貸住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0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賃貸事業者의 登錄을 抹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5條(自動車管理法의 改正) 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75條(청문)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2항·제30조제6항·제42조제2항·제44조제3항·제45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2.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
3. 제54조제2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第226條(濟州道開發特別法の 改正) 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청문) 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指定取消
2. 第2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굴착 또는 利用許可의 取消

3. 第4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의 登錄取消

4.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事業의 施行承認의 取消

第227條(駐車場法の 改正) 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24條의3(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9條의8에 의하여 安全度認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28條(住宅建設促進法の 改正) 住宅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8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長등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建設事業者의 登錄抹消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3. 第3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業의 登錄抹消

4. 第39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管理士등의 資格取消

5. 第41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材生産業의 登錄抹消

6. 第44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住宅組合의 設立認可取消

7. 第45條의3의 規定에 의한 인정의 取消

第229條(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의 改正)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 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鑑定評價士의 資格取消

2.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開設登錄 또는 設立認可의 取消

第230條(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의 改正)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3條第3項 후단 및 第5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5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3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施設管理權의 取消

2. 第5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認可·승인 또는 지정을 취

소하고자 하는 경우

第231條(地下水法の 改正) 地下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5條(청문)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0條第1項(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 또는 利用許可의 取消
2. 第11條第2項(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 또는 利用施設의 閉鎖命令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 또는 利用施工業의 登録取消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指定取消

第232條(鐵道小運送業法の 改正) 鐵道小運送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7條의3(청문) 鐵道廳長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小運送業의 登録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3條(測量法の 改正) 測量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7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46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量業의 登録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4條(宅地開發促進法の 改正) 宅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3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指定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5條(土地區劃整理事業法の 改正) 土地區劃整理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7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77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7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의 施行 또는 組合設立의 認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6條(特定多目的댐法の 改正) 特定多目的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2條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2條의5(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4條 또는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使用權의 取消
2. 第36條第1項第2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第237條(河川法の 改正) 河川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第2項 및 第68條第2項을 각각 削除한다.

第6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8條의2(청문)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第67條 및 第68條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 또는 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8條(航空法の 改正) 航空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0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2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航空運送事業者의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39條(海外建設促進法の 改正) 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5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建設業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40條(貨物流通促進法の 改正) 貨物流通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2條(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3.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4. 第48條의15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

第241條(公有水面管理法의 改正) 公有水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5條의2(청문) 管理廳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 및 使用許可를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42條(公有水面埋立法의 改正) 公有水面埋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2條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2.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認可의 取消

第243條(낙시어선업법의 改正) 낙시어선업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청문) 시·도지사는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44條(船舶安全法の 改正) 船舶安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의6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6條의6(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6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認定의 取消
2. 第6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형식승인의 取消
3. 第8條第3項 또는 第16條의2第5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4. 第16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

第245條(船舶職員法の 改正) 船舶職員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條(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46條(水路業務法の 改正) 水路業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1條(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47條(水産物檢査法の 改正) 水産物檢査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를 削除한다.

第248條(水産業法の 改正) 水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93條(청문) 行政官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業權의 取消
2. 第35條(第51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免許漁業의 取消
3. 第4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또는 入漁의 禁止

4. 第47條 또는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5. 第4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事前許可의 取消
6. 第5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第249條(水産業協同組合法의 改正) 水産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7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57條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5條第2項(第10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認可의 取消
2. 第15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選舉 또는 當選의 取消
3. 第155條의 規定에 의한 解散命令

第250條(新港灣建設促進法の 改正) 新港灣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18條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51條(漁船法の 改正) 漁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8條(청문)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市·道知事は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造·改造許可의 取消
2.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漁船登錄의 抹消

第252條(漁港法の 改正) 漁港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19條第2項중 “第18條第3項 및”을 削除한다.

第5章에 第33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33條의2(청문) 管理廳은 第18條第1項, 第19條第1項 또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53條(韓國海運組合法의 改正) 韓國海運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章에 第40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0條(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3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組合의 解散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54條(航路標識法の 改正) 航路標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5條를 削除한다.

第255條(港灣法の 改正) 港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8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8條의2(청문) 管理廳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59條 또는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承認·港灣施設使用許可 또는 占用許可의 取消

第256條(港灣運送事業法の 改正) 港灣運送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29條의3(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免許의 取消
3. 第26條의5第1項(第26條의6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257條(海上交通安全法の 改正) 海上交通安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1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51條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4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등의 取消

第258條(海洋汚染防止法の 改正) 海洋汚染防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6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6條(청문)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 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64條第9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取消

第259條(海運法の 改正) 海運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6條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6條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2.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3.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資格의 取消

第260條(海運産業育成法の 改正) 海運産業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6條의2(청문) 海洋水産部長官은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61條(科學館育成法の 改正) 科學館育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청문) 科學技術處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計劃承認의 取消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262條(氣象業務法の 改正) 氣象業務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28條(청문) 氣象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豫報事業許可의 取消
2. 第2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第263條(技術士法の 改正) 技術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9條(청문) 科學技術處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64條(大德研究團地管理法의 改正) 大德研究團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청문) 科學技術處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入住承認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65條(原子力法の 改正) 原子力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4條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104條의3(청문) 科學技術處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7條第1項, 第24條第1項, 第35條, 第40條第1項, 第42條의6, 第60條, 第68條第1項 또는 第7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2.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指定의 取消
3. 第75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4. 第90條의7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許可의 取消
5. 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의 取消

第266條(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 法律의 改正) 定期刊行物の登錄등에 관한 法律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3條(청문) 公報處長官은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刊行物の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67條(綜合有線放送法の 改正) 綜合有線放送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0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0條(청문) 公報處長官 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指定의 取消
2. 第3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附 則

①(施行日) 이 法律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草地法の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4月 10日까지는 草地法 第12條의2의 改正規定중 “市長·郡守”는 “許可廳”으로 본다.

[부록 2]

個別法令에 나타난 意見聽取制度

1. 聽 聞

「청문」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본문의 도표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법률 184건, 대통령령 166건, 총리령·부령 45건 등 모두 395건에 이른다.

이들 각각의 법령은 청문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각 법령마다 서로 다른 절차를 채택하고 있고, 청문을 실시하는 요건도 다르다.

각 개별법령에 나타난 청문절차는 그 절차를 관장하는 부서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하는 도표의 형태로 제시하고자 한다. 행정법령의 집행은 행정부처의 임무이며, 모든 행정법령은 그 집행을 위한 책임을 어느 행정부처가 담당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⁴¹⁾.

(1) 財政經濟院

재정경제원이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13건, 대통령령 12건, 총리령·부령 1건 등 26건에 달한다.

각각의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공인회계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9조 (설립인가 의 취소 등) 제2항	장관은 처분을 명하는 경우 미리 상대방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들어야 함. 다만, 처분의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6조 (이사등) 제1.2항. 제27조 (자본금등) 제1항	회계법인에는 5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이사로 두어야 하는 규정, 회계법인은 이사와 직원중 20인 이상이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는 규정, 회계법인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회계법인이 3월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면 설립인가 취소나 1년 이내의 기간정지.

41) 이 장에서 작성된 도표는 총무처 조직국 제도1과에서 법령정비를 위하여 조사·작성한 도표 기초로 하여 이 연구보고서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9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2항	장관은 처분을 명하는 경 우 미리 상대방 등에게 의 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 계인의 의견도 들어야 함. 다만, 처분의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 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함.	제39조 (설립인가의 취소 등) 제1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업무정지 명령에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 령에 위반한 경우인 때에는 그 설립인 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48조 (징계)	장관은 공인회계사가 이법 또는 이법 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등인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 하여 등록취소, 2년 이하의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명할 수 있음.

● 관세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 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8조 (등록의 취소)	관세사징계위원회가 등록취소의결을 한 때. 폐업, 사망시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18조 (인가의 취소 등)	관세사법인이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 부터 3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 한 때, 기타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20조 (허가의 취소 등)	통관취급법인이 이법,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관업의 전부·일부 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7조 (징계)	관세사가 이법·관세법을 위반하거나이법 ·관세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관세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처분을 행한다.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7조 (부정당업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제2항	각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7조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제1항	각중앙관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 담배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의3 (청문)	미리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판매업의 등록취소)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제3호에 해당시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17조 (소매인지 정의취소)	소매인이 각호의 1(제1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한 때,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 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과 대리인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5조 (과징금)	이법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채권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과 대리인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6조 (이행강제금)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지체없이 당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징금부과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에 부동산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제10조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처벌 등) 제1항, 제3항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반대급부이행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아니한 등기권리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 과징금을 부과받고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제12조 (실명등기의무 위반의 효력) 제2항	제11조의 기존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제5조(과징금), 제6조(이행강제금)의 규정을적용한다.
		제14조 (기존양도담보권자의 서면제출의무 등) 제2항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채권자 및 서면에 채무자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케한 실채무자에 대해서는 당해 부동산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 상품권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2조 (청문)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0조 (업무개선 명령)	시도지사는 상품권소지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발행자에 대하여 상품권발행에 관한 업무방법의 변경 기타 업무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1조 (인가, 등록의 취소 및 발행의 정지) 제1항	상품권발행자가 각호의 1(제8조 규정에 의해 상품권 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제7조제2항 각호에 해당된 때, 제10조 규정에 위반하여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등)에 해당시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상품권의 발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신용관리기금법

절차조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의 16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예금자보호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 기타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0조의3 (경영관리) 제1항	재경원장관은 금고가 각호의 1(24조2항 규정에 의한 영업인가취소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예금자보호를 위해 경영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 등)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사장의 제청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여 당해 금고에 대해 경영관리를 한다.
		제30조의11 (계약이전 의결정) 제1항	제30조의8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전의 요구를 받은 금고와 계약이전을 받기 위해 지정받은 금고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경원장관은 계약이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과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부여.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2조 (업무의 정지 및 허가의 취소)	재경원장관은 신용정보업자가 각호의 1에 해당할 때 허가,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범위내에서 업무의 전부,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5호에 해당시에는 허가,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 신용카드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업무의 정지 등)	1.신용카드업자 등이 각호의 1(허가를 받지 않고 6조 규정에 의한 업무를 영위한 때 등)에 해당시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신용카드업자 등이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등)에 해당시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외국환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제2항 (허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한등)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2조 (인가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 제한등) 제1항	재경원장관은 외국환은행 또는 환전상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또는 영업폐쇄명령을 하거나 위반행위를 한 영업소의 업무를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26조 (행정처분) 제1항	재경원장관은 이법의 적용을 받는 거래의 당사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거래한 경우(제1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경고, 관련 외국환거래의 정지, 허가, 인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다.

● 은행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0조의6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17조의4 (금융전업 기업가) 제2항	금융전업 기업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치 못하게 된 경우 금융전업 기업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7조의3에서 규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은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도에 적합토록해야 함. 의결권 행사범위는 취소된 날부터 한도를 제한한다.
		제37조의4 (인가취소 등) 제1항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각호의 1(합병, 영업의 양도 등)에 의한 소멸,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등에 해당시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제1항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법에 의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한국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당해 위법행위 또는 불건전영업행위의 중지 및 일정기간영업정지등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0조의6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40조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제1항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법에 의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한 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3조 (청문)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함.	제22조 (행정처분) 제1항, 제2항	1. 종합금융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주된 업무의 선택을 하지 아니하거나 주된 업무를 영위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의 인가를 받은 때 등의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증권투자신탁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8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43조 (감독, 검사등) 제5항제3호	임직원의 문책요구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조치
		제45조제1항 (허가취소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등 제2항각호에 해당된 경우에는 임원의 해임등 징계명령, 허가의 취소, 업무의 정지, 당해 신탁계약에 대한 원본의 추가신탁이나 새로운 신탁계약의 체결을 제한하는 명령, 당해 신탁계약의 해지 또는 신탁약관의 변경명령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 관세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청문시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7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물가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5조의2 (과태료부과 및 청문) 제3항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29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호의 1(제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등)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조 (청문절차)	1.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사유, 일시, 장소를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청문시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서면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진술기회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의11 (청문의 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 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청문절차)	1. 지체없이 청문일 7일전까지 청문서를 신용정보업자. 대리인에게 발송해야 한다. 2. 신용정보업자. 대리인은 청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청문시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해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한다.		

● 신용카드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의 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청문서를 받은 신용카드업자.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함.		

●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5조의2 (청문의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은행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청문시 처분권자 또는 위임받은 자는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기명날인. 서명하게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 (청문절차)	1.청문시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청문시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 (청문)	1.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사유, 일시, 장소를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청문시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재경원장관및소속청장주관예속하는비영리법인설립허가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 (청문)	주무관청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함. 청문시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청문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9조 (임원선임의 보고등) 제3항	주무관청은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임원간의 분쟁, 회계 분쟁 등으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달성할 수 없을 때 등인 경우 취임승인을 얻은 임원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15조 (설립허가의 취소 및 시정 명령)	주무관청은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설립허가에 불인 조건에 위반한 때,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인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統一院

통일원이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총리령인 「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건이다.

이 규칙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통일원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의2 (청문)	장관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청문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 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11조 (임원취임인가 등) 제2항	장관은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임원이 민법. 이규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17조 (설립허가의 취소)	장관은 법인이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인 경우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3) 外務部

외무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해외이주법 및 동 시행령 2건이다.

이들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해외이주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의6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의5 (해외이주알선의허가취소등)	해외이주 알선업자가 다음 각호의 1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않은 때 등)에 해당시 외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해외이주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1.청문 예정일 7일전까지 피청문인에게 통지. 2.피청문인.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4) 內務部

내무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13건, 대통령령 8건, 총리령·부령 6건 등 27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빈집의 정비) 제2항	제1항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당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의견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빈집의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3조 (빈집의 정비) 제1항	시장·군수는 농어촌지역안에 위치해 있는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건축법 제4조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

● 도로교통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1조의2 (청문)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8조 (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71조의10 (지정의 취소등)	1. 각호의 1(전문학원이 제71조 2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치않게 된 때 등)에 해당될 때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해야함. 2. 각호의 1(학감이 제71조의5·6의 규정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될 때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전문학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제71조의6 규정에 의한 기능검정을 정지시킬 수 있음.
		제78조 (면허의 취소, 정지)	1. 각호의 1(제70조제2항에 해당될 때 등)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면허취소하거나 1년 범위내에서 면허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6.7호 해당시 취소해야 한다. 2. 면허자가 고의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시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본인귀책 사유없을 때 예외.
		제101조 (자동차의 사용 정지)	운전자 또는 자동차가 각호의 1(운전자가 고의과실로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의 범위내에서 자동차의 사용자에게 자동차의 사용정지와 자동차등록증 반납을 명하고 등록번호표를 영치할 수 있다. 불가항력 등 사용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

● 사격및사격장단속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의2 (청문)	허가관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8조 (허가의 취소)	허가관청은 사격장 설치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지정된 기간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와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청문)	1. 영업자가 제6조제2호 각목의 1에 해당된 경우에 그 영업을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법인영업자에 대해 제6조제2호 아목 사유로 허가취소하는 경우는 임원개임에 필요한 3월 이상의 여유를 주어야 함. 2. 영업자가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소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6조 (청문)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등)	소방대상물의 위치, 관리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상, 화재발생시 인명에 위협이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나 중지 그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 제4항	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의 지정의 취소, 시험의 정지에 관해서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6조 (청문)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설치허가의 취소·사용 정지)	제조소 등의 설치자가 각호의 1(변경허가를 받지않고 제조소 등의 위치, 구조, 설비를 변경한 때 등)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소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일부에 대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등록의 취소·영업정지)	소방시설 점검업자가 각호의 1(등록기준에 미달시,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등)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40조 (자격의 취소·정지)	소방시설관리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합격한 때,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시 등)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에 해당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49조 (허가의 취소·영업의 정지)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제조업자가 각호의 1(제44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시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58조 (면허의 취소·영업정지)	소방설비 공사업자가 각호의 1(제53조 규정에 의한 면허기준에 미달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등)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호, 제3호에 해당시에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6조 (청문)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의9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소방시설 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 감리업자가 각호의 1(제65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등)에 해당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호, 제3호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공중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허가의 취소)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등)에 해당시 광고물 등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영업정지등)	옥외광고업자가 각호의 1(제10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때)에 해당시 시도조례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온천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굴착허가의 제한등) 제3항	시장·군수는 허가일부터 6월 이내에 굴착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6월 이상 굴착공사를 중지한 때에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하수를 섞어서 사용한 때에는 제13조 규정에 의한 온천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당해 온천이용시설의 관리자에 대해 온천이용의 제한을 명하거나 보건, 위생상 위해에 대한 예방 및 온천 이용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유선및도선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7조 (청문)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행정처분) 제1항	유·도선 사업자가 각호의 1(제6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등)에 해당시 사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일부.전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시 그 사업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 전당포영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 (청문)	미리 당해 영업자. 대리인의 출두를 요구하여 석명이나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경찰서장은 처분사유와 청문기일. 장소를 1주일전에 통고해야 한다.	제27조 (행정처분)	전당포주가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벌금형을 받고 그 정상이 전당포주로서 부적당할 때,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을 유지하지 아니한 때 등의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당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 (면허의 취소. 정지) 제1항, 제2항	1. 면허받은 자가 제9조제2호. 제4호에 해당된 때에는 지체없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2. 면허받은 자가 허위방법으로 면허를 받았거나, 영구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21조 (특별한 목적을 위한 포획허가) 제5항	허가를 받은 자가 조수를 포획함에 있어 허가 내용에 위배되거나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2조 (인공사육허가 등)제5항	인공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3조 (박제업자의 등록등) 제4항	시장·군수는 박제업자가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6조의2 (청문)	미리 처분의 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면허의 취소, 정지) 제1항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면허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를 받은 사람이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았을 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이 취소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제45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총포·도검류의 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때등)에 해당될 때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5호(지정된 기한내 사업개시하지 아니한 때) 제7호(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총포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등에 대한 행정처분)	1.총포·도검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화약류 사용자가 각호의 1(제1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등)에 해당될 때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제12조 규정에 의한 법인의 대표자가 소지허가를 받은 경우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은 산업용총 등의 대수의 일부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행정처분)	풍속영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가 각호의1(제3조의 규정에 위반시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풍속영업소의 폐쇄, 6월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시설개수명령을 할 수 있다.

● 행정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	처분시 행정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처분원인 사실과 청문일지, 장소를 기일 2주일전까지 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청문을 하지 않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취소)	행정사가 각호의1(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업무를 행하지 않은 때, 제4조 규정에 의해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때 등)에 해당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13조 (업무정지 명령)	행정사가 각호의1(제23조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때,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징계처분)	1. 행정사가 소속 지방행정사회 또는 대한 행정사회의 정관 등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빈집소유 자에 대한 청문절차)	1.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14일전까지 통지. 2.빈집소유자는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 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 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진술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사격및사격장단속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3조 (청문절차)	10일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통지, 지정된날 출석의견진술하거나 서면의견제 출, 출석진술시 관계공무원 그 요지서면 작성 확인케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불응 하면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9조의2 (청문)	장관은 법 제62조에 의해 금고의 설 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내무 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 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 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 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62조 (설립인가 취소)	주무부장관은 금고가 다음 각호의1(허위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회원이 1년 이상 계속하여 50인 미만인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6조 (청문의 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 온천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 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3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 서면통지. 2. 용역경비업자 또는 대리인 지정된 날 출석진술하거나 서면의견제출. 3. 관계 공무원 그 요지 서면작성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불응하면 기회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5. 법 제6조의5 경비지도사 자격취소, 정지처분 경우 준용하여 의견진술기회 부여.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의2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서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명시.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조 (청문의 절차)	1.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하여야 한다.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3조의2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통지. 취소사유 명백시 단속현장에서 청문통지서 교부가능. 2.출석진술. 의견제출가능.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통지받은 운전자는 단속현장. 조사과정서 의견진술. 제출가능 3.경찰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청문에 응하지 않을시 의견없는 것으로 본다.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 (청문)	1.청문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새마을금고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에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소방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6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 당사자는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 소방용기계·기구등의검정등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형식승인의 취소) 제2항	장관은 형식승인과 형식번호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3조 (형식승인의 취소)	장관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제조업허가가 취소된 때,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때, 정당한 이유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상 개별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형식승인과 형식번호를 취소할 수 있음.

●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5) 法務部

법무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5건, 대통령령 3건, 총리령·부령 1건 등 9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8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공익법무관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공익법무관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16조 (신분박탈)	공익법무관이 각호의1(변호사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정지당한 때,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공익법무관의 신분을 가지는 것이 부적당한 때등)에 해당시 법무부장관은 직권에 의해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해 신분을 박탈해야 한다.
		제17조 (복무기간연장등)	1. 공익법무관이 장기입원 또는 요양등 직무의 사유로 2월 이상 근무 못한 경우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복무하게 할 수 있다. 2.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기타 직무상의무를 위반하거나 대만히 한 경우에 그 사유에 상응하여 상당한 기간을 연장복무하게 하거나 봉급 3분의1 이하를 감액 또는 견책할 수 있다.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6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1. 공익법인이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등)에 해당 시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2.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명해도 응하지 않을 때 행한다.

● 법무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1조제2항 (임의적 등록취소)	법무사협회가 등록취소를 할 때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1조제1항 (임의적 등록취소)	법무사협회는 법무사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법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취소가 능.

● 변호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3조 제2항, 제3항	2. 미리 당해 법무법인의 대표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석명이나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청문을 행하여야 한다. 3. 인가취소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청문 7일전에 법무법인에 통지해야 한다.	제43조 (인가취소) 제1항	법무장관은 법무법인이 각호의 1(제35조 규정에 의한 구성원의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3월 이내의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때, 업무집행에 관하여 법령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시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70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취소등) 제1항	장관은 사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때 등)에 해당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 (청문)	1. 청문 7일전에 공익법무관, 대리인에게 통지. 2. 공익법무관,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의2 (청문의 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4조 (청문)	1. 청문기일 7일전에 통지 2. 사업자 또는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법무부장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의견진술기회부여시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민법 제38조 및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6) 國防部

국방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1건이다.

이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41조의3 (청문)	1. 처분시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3.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5.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청문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뜻 명시.	법 제22조 (지정의 취소) 제1항, 제2항	1. 방산업체가 각호의 1(제4조에 의한시설기준과 보안요건에 미달하게 될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방산물자가 각호의 1(군의 소요가 없거나 편제장비에서 삭제된 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감독) 제3항	장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지정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응한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게 하거나 일정한 기간 새로운 융자추천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教育部

교육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3건, 대통령령 5건, 총리령·부령 2건 등 10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교육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제162조의5 (청문)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다.	제91조	각호의 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이 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는 학교는 감독청이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제11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 (시행계획 승인의 취 소등) 제1항	감독청은 사업시행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가 각호의 1(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 등)에 해당시 이 법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다.	제17조 (행정처분)	1. 학원이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해당시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해당시 등록을 말소해야 함. 2. 교습소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등)에 해당시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다. 1호 해당시 교습소 폐지를 명해야 한다.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제20조 (청문)	교육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학원등에 대한 조치) 제1항	등록, 신고없이 학원,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등록말소, 폐지처분, 교습정지를 받고도 계속 교습, 학습장소제공하는 경우 학원,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을 중지시키기 위해 각호의 조치할수 있다. 1. 학원간판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2. 학원이 등록치 않은 사실 알리는 게시문 부착

●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제53조 (청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4조 (인정도서의 사용범위등) 제3항	교육부장관은 인정도서의 인정을 한 교과목에 관하여 교과서 또는 지도서가 있게 되거나 교육과정의 변경 등으로 당해 인정도서를 사용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인정도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장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취소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6조 (위탁의 취소)	장관은 1종 도서의 편찬을 위탁 받은 연구기관 또는 대학등이 각호의 1(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그 위탁을 취소하고, 교부한 편찬에 관한 경비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47조 (검정합격 취소등)	장관은 2종 도서가 각호의 1(저작자 또는 발행자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그 검정의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그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3조 (청문)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9조 (보고해태 등에 관한 조치)	장관은 발행자가 48조에 의한 보고를 해태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기피 또는 방해한 때와 보고내용이나 관계공무원의 검사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1종 도서의 경우 발행권부여를 취소할 수 있으며, 2종 도서의 경우 그 사유를 들어 당해 교과서 및 지도서의 저작자에게 발행권설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교육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0조의2 (청문의 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의 절차)	1. 청문에정일 10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학술진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4조의2 (청문)	교육부장관은 제21조 규정에 의해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 대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을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청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	장관은 연구비의 지급을 받는 자가 각호의 1(연구비를 지급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등)에 해당시 그 연구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또는 이미 지급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다.

●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 (청문의 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의2 (청문)	처분시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청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7조 (합격증서의 수여등) 제5항	검정고시위원장은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의 학력조회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함.

●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의2 (청문)	합격취소의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등에게 청문을 하여야 함. 다만,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청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4조 (합격증서의 수여등) 제6항	검정고시위원장은 검정고시 합격자의 학력조회결과 학력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합격을 취소하여야 함.

(8) 文化體育部

문화체육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11건, 총리령·부령 10건 등 23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공연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5조 (청문등)	문체부장관 등은 처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처분의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6조의2 (등록의 취소)	시·도지사는 공연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한 때,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제12조 (허가취소 등)	시장 등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후 3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연장을 준공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3월이하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7조 (공연의 정지등)	시장 등은 공연이 공연신고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할 때, 장관의 심의에 합격한 각본 또는 대본의 내용과 상위한 공연을 한 때 등인 경우 공연의 정지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음.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5조 (청문등)	문체부장관 등은 처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처분의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9조의3 (허가취소)	장관은 외국인 공연허가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관광진흥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49조 (청문)	문체부장관은 처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8조 (등록취소등) 제1항	장관은 사업의 등록 등을 받거나 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명의이용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경영을 하지 아니한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그 등록 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가능.
		제19조 (과징금의 부과)	장관은 관광사업자의 사업정지를 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제41조 (자격취소등)	장관은 관광종사원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 또는 비위사실이 있을 때,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자격취소나 6월 이내의 정지가 능.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5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5조 (법인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제2항	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한 시설, 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문체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준용)	제25조제2항, 제3항 등의 규정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 문화재보호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9조의2 (청문)	장관 등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처분의 상대방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8조의9 (문화재 수리업자의 등록취소등)	문화재관리국장은 등록한 문화재 수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자격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등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22조 (허가취소)	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기타 사유로 국가지정문화재의 가치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18조의5 (등록취소등)	문화재관리국장은 수리기술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음.
		제65조 (허가취소등)	시장 등은 문화재판매업자가 이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때,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9조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승인 등)제4항	문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시정 및 정관 명령) 제2항	문체부장관은 제1항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정관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의취소)	1.등록박물관, 미술관이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6조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때등)에 해당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 이내에는 이를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

● 영화진흥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7조 (등록취소등)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영화업자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9조 (등록취소 영업정지) 제1항	외국간행물 수입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하의 기간을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조 (등록취소등)	등록청은 제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때, 제7조 등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유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작, 판매, 배포, 대여, 시청제공등 당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등록한 자가 제12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저작권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0조 (허가의 취소등) 제3항	장관은 처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상대방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80조 (허가의 취소등)	장관은 저작권 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외의 수수료를 받은 경우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업무의정지명령을 받고 그 업무를 계속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폐쇄명령을 발할 수 있음.

● 지방문화원진흥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9조 (설립인가의 취소)	지방문화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청소년기본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 제4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 (허가취소등) 제1항, 제2항	1.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각호의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한 때 등)해당시 수련시설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또는 수련시설위탁운영단체가 각호의 1(수련시설을 다른 자에게 운영하게 한 때 등)해당시 6월 이내의 그 수련시설의 운영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6조 (청문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34조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등)	1.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승인.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체육시설업에 대한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에 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등록취소)	1.등록체육시설업자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취소해야 한다. 2.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 병설 또는 대중골프조성비의 예치의 무의 전부.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을 폐쇄명령을 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공언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의2 (청문절차)	장관 등은 청문을 하는 경우 7일전까지 공무원은 그 요지를 작성 확인 후 서명 날인. 상대방 등에게 서면통지. 통지받은 상대방 등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제출.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도서관및독서진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의절차)	1.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권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청문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8조 (청문)	청문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함. 통지받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소명요지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확인케 하여야 함.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절차)	1.청문 10일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영화진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3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명시.		

●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0조 (청문의 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케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명시.		

●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의 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케 해야 함. 4.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명시.		

● 저작권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 (청문의 절차)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는 경우 7일전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제출.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 시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지방문화원진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서명날인케 해야 함. 4.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명시.		

●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7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청문서 송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 (청문의 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봄.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케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청문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9) 農林部

농림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5건, 대통령령 3건, 총리령·부령 1건 등 9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표시변경등의 처분) 제1항	제14조 규정에 의한 시판품의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그 제품이 표시한 규격에 해당되지 않거나 표시품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의 변경·정지·판매의 정지 또는 인증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3조 제4항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매시장법인 등·중도매인 또는 수집상에게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 및 청문의 일시, 장소를 통지하고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자는 출석에 갈음하여 변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3조 (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2.도매시장법인, 도매시장공판장 개설자가 이법에 의한 명령, 처분에 위반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3.중도매인 또는 수집상이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시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수집상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농약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7조 (등록의 취소등)	1.제조·원제·수입업을 등록한 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판매·방제업을 등록한 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수출입식물방제업을 등록한 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영업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4조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등)	1. 품목등록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등록후 등록된 품목을 신청한 내용대로 사용시 약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3. 병해충 방제를 위해 긴급시에는 적용 병해충 또는 농작물의 범위에 관한 등록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 (원제의 등록) 제4항	1. 원제업자가 원제를 생산해 판매하고자 할 때 등록해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제등록에 관련된 원제등록자의 지위승계, 신청에 의한 변경등록 등, 직권에 의한 등록 취소, 등록의 실효에 관해서는 12조, 13조, 14조제1항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품목은 원제로, 제조업자는 원제업자로 본다.

● 농약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	농촌진흥청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7조 (수입농약의 등록) 제3항	1. 수입업자는 농약, 원제를 수입, 판매코자할 때 등록해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농약의 품목 등록의 신청, 직권에 의한 품목등록의 취소 등에 관해서는 제8조제2항 내지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직권에 의한 수입 원제 등록취소 등의 규정은 제16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0조 (허가취소 등) 제3항, 제4항)	농림부장관 또는 자치단체장은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시행자 또는 그 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행해야 한다.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기일 및 장소를 기일1주일전에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0조 (허가취소등) 제1항	이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각호의1(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시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농어촌정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8조 제3항, 제4항	시장·군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청문을 해야 한다.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일시 및 장소를 청문 1주일전에 당해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5조 (지정취소등)	농어촌 휴양지 사업자가 각호의 1(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농어촌휴양지사업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시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8조 (허가취소등) 제1항	이 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각호(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인가, 승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물건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의 조치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검사합격의 무효, 취소등) 제2항	농림부장관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검사결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미달한 농업기계에 대해서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출하를 금지하고 보관을 지시하거나 검사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2조의2 (청문)	주무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설립등기의 효력과 설립인가의 취소)	1.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7조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조합이 설립인가일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제87조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부장은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7조 (준용규정)	제21조(설립등기의 효력과 설립인가의취소) 등의 규정은 전문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3 (준용규정)	제21조(설립등기의 효력과 설립인가의취소) 등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제167조 (위법 또는 부당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과 중앙회의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무부장은 그 전부·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169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 처분)	1.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 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해 시정 명하거나 관계 직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조합·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업무의 전부·일부정지 시키거나 관계 임원의 개선·직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2조 (해산명령)	주무부장은 조합이 각호의1(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2회 이상 제169조제2항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 등)에 해당시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 농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7조 (청문)	농림부장관 등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전용허가의 취소등)	농지전용허가 또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등)에 해당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공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비료관리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2조 (청문)	주무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등록취소와 영업의 취소등)	1. 비료생산업자, 비료수입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에 해당시 등록 취소하거나 3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 5, 12호에 해당시 등록 취소해야 한다. 2. 비료판매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때 등)에 해당시 판매영업소의 폐쇄 또는 3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조 (과징금처분)	1.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제20조제1항제8호 내지 제11호의 1에 해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영업정지처분으로 비료수급 불균형과 가격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사료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 (사료의 성분등록 및 취소) 제3항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조업 또는 무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등)에 해당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수입업자는 그 사료성분 등록증을 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26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7조 (제조업의 등록의 취소등) 제1항 제18조 (영업의 정지명령 및과징금처분)제1항	제조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9조제5항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고 제조시설을 변경한 때 등)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조업자, 수입업자가 각호의1(제6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방법을 위반하거나 제7.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13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필요한 경고를 하거나 6월이내의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의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는 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시에 한한다.

● 산림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5조의3 (청문)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8조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영림계획의 작성등) 제5항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 제1항 제31조 (자연휴양림의 지정과 조성등) 제7항	영림계획의 인가를 받은 산림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된 내용대로 사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허가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때, 대체 조림비, 전용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55조의3 (청문)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34조 (수목원의 조성등) 제6항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을 중단한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48조 (등록의 취소)	중요생산업자가 제45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하거나 제46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제47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중요생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78조 (대부취소등)	산림청장은 지정기간내에 대부료,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한 산림의 전부, 일부를 반환시킬 수 있다.
		제89조 (분수림설정의 취소)	분수림이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사업 또는 토지수용법 제3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계약상의 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그 전부, 일부에 대하여 이의 설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0조 (입목벌채등의 허가과 신고) 제4항	제19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시장군수·지방산림관리청장"으로 본다.
		제90조의4 (채석장의관리 등)제2항	채석허가를 받은 자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6월 이상 채석을 않거나 허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채석에 착수하지 않은 때에는 채석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수의사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6조 (청문)	농림부장관등 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 제1항, 제2항	1. 수의사가 각호의1(제5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해당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등)에 해당 시 면허취소할 수 있다. 제1.2호에 해당 시 면허취소해야 한다. 2. 수의사가 각호의1(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등)에 해당 시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면허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6조 (청문)	농림부장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 (개설허가의 취소)	동물병원이 각호의 1(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그 동물진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양곡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 (청문)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영업정지)	1. 시·도지사는 양곡가공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6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따로 주무관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주무관청에 대해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 인삼산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	농림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등록취소등)	1. 등록제조업자가 각호의1(제12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등)에 해당시 등록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호 해당시등록을 취소해야함. 2. 등록제조업자가 제15조에 의한 표준제조방법을 위반하여 홍삼·태극삼·백삼을 제조한 경우 6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임업협동조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1조의3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3조의3 (조합의설립과 인가의취소)	조합이 설립인가일부터 60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전부, 일부를 취소하거나 집행을 정지케 할 수 있다.
		제71조의2 (해산명령)	조합이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간 사업을 실시하지 않을 때, 2회 이상 제71조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 시킬 수 있다.

● 잠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청문)	농림부장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등록의 취소등)	1.누에서 생산업자가 각호의1(제6조 규정에의한 불합격 누에씨를 폐기하지 아니한 경우등)에 해당시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제사업자가 각호의 1(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등)에 해당시 그 등록의 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해당시 등록취소 해야 함.

● 종묘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의2 (청문)	농림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4조 (판매의 제한)	농림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및 검사의 결과종묘의 형질이 조악하여 보급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생산 또는 판매를 금지하거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 (등록 등의 취소)	종묘업자 또는 종묘상이 각호의1(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시 당해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제한 또는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종자산업법('97.12.31시행)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9조 (청문)	농림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7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제2항	종자관리사가 이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중대한 과오를 범한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139조 (종자업등록의 취소등) 제1항, 제2항	1. 종자업자. 종자매매업자가 각호의 1(이법.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시 종자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종자업자. 종자매매업자가 제1항에 의한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시 영업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140조 (종자의 수출입) 제3항	농림부장관은 국내 생태계보호 및 자원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자의 수출, 수입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제145조 (종자의 유통조사등) 제2항	농림부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법에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고 있는 종자에 대하여 그 생산 또는 판매를 중지하게 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한 종자에 대하여는 그 목록을 작성하여 수거당시 당해 종자를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던 자에게 이를 교부하게 하여야 한다.

● 주요농작물종자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의3 (청문)	시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 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행정처분)	1. 종자판매업자가 각호의1(판매업신고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된 때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초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허가의 취소) 제2항 내지 제5항	허가청은 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 초지조성자, 대리인에게 청문을 행해야 함. 사유, 일자, 장소를 청문일 15일전까지 통지해야 함. 초지조성자,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증거제출할 수 있음. 농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취소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봄.	제12조 (허가의 취소) 제1항	허가청은 각호의 1(허가일로 부터 1년이경과해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때, 부정 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축산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0조 (청문)	농림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수정사의 면허취소등)	시·도지사는 수정사가 다음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때, 제16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제20조 (정액등 처리업의 허가취소등)	농림부장관은 정액등 처리업자가 각호의 1(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기준에 미달한 때,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2조 (수정소의 등록취소등)	수정소 또는 수정소를 개설한 수정사 또는 수의사가 각호의 1(수정사 또는 수의사면허가 취소된 때 등)에 해당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제3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시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농림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 (감측명령, 초과사육 부과금등)	1. 종축업자 또는 등록, 허가축산업자가 각호의 1(제26조 및 제27조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시 사육가축의 감측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육할 수 있는 가축의 최고두수, 초과두수의 감측방법 등을 명해야 한다. 2. 제1항의 감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초과사육 부과금납부를 명해야 한다.
제31조 제1항, 제2항		1. 부화업자가 각호의 1(제26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등)에 해당한 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종축업자 또는 등록, 허가축산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때 등)에 해당시 그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42조 (가축시장 개설허가의 취소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장개설자가 각호의 1(제36조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한 때, 제40조 규정에 의한 비율을 초과하여 가축매매수수료를 징수한 때 등)에 해당시 가축시장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시장의 개장을 정지시킬 수 있다.	

● 축산업협동조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2조의2 (청문)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7조 (조합의 성립과 인가의 취소)	1. 조합은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 조합이 설립인가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무장관은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3조 (준용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 등의 규정은 이를 업종조합에 준용한다.
		제133조 (준용규정)	제17조 등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42조의2 (청문)	주무부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37조 (위법 또는 부당 의결사항의 취소 또는 집행정지)	조합과 중앙회의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또는 중앙회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9조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1. 조합 또는 중앙회의 업무와 회계가법령,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조합, 중앙회에 대해 그 시정명령. 2. 조합,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에는 주무장관은 업무의 전부, 일부를 정지시키거나 관계임원의 개선 또는 직무의 정지를 명령.
		제142조 (해산명령)	주무장관은 조합이 각호의1(정당한 사유없이 장기적 사업을 실시하지 아니할 때, 2회 이상 제193조제2항의 처분을 받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때등)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6조 제4항, 제5항	4. 미리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7조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명인지정의 취소등) 제1항	장관은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해당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37조 (처분기준 및청문절차) 제2항 내지 제5항	2.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통지 3.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5.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2조 (청문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농약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절차)	1.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4조 (청문)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서 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농업기계화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9조 (청문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 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뜻으로 명시.		

● 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6조 (청문절차)	1.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3.처분상대방·대리인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해야 함.		

● 비료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청문절차)	1.청문 10일전까지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진술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함.		

● 사료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의절차)	1.청문 10일전까지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진술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함.		

● 산림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0조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수의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1. 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양곡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3조 (청문)	1. 청문 7일전에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인삼산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임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의2 (청문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제출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잠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 (청문절차)	1. 청문에정일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종묘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의2 (청문절차)	1. 의견진술기회를 주하고자하는 경우에는 10일전에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주요농작물종자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청문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조 (청문의 절차)	1.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하고자 하는 경우 7일전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 후 서명날인토록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축산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 (청문의 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 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7조 (청문절차)	1. 청문을 행하고자 할 때 청문사유,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해야 함.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 후 서명날인토록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농림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청문)	주무관청은 처분시 미리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상대방은 지정일에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확인 후 서명날인.	제12조 (임원선임의 승인 및 취소)	주무관청은 승인을 얻은 임원이 민법 또는 이 규칙이나 법인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수 없을 때 등인 경우 임원선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17조 (설립허가의 취소)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인 경우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농지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8조 (청문)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2조 (청문)	장관 등은 청문실시 7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은 지정일에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 통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봄.		약사법 제69조 (허가취소와 업무의 정지등), 제71조 (약사, 한약사 면허의 취소등)

(10) 通商産業部

통상산업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30건, 대통령령 30건 등 60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7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3조 (취소등) 제1항	교정검사 기관 등이 제15조 등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3조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반드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조의3 (청문)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허가, 등록의 취소등)	사업자 등이 각호의 1(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은 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 (과징금)	1.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 또는 저장소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여야 할 경우 그 처분에 같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1조의2 (청문)	시·도지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3조의2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해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의 취소 또는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림법 제9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6항	2.공장을 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통산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제13조의2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공장의 등록취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공장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등록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1조의2 (청문)	시·도지사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7조 (이전명령의 위반에 대한조치)	1.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제22조에 의한 기간내에 이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에 대한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각종지원을 중지해 줄 것을 관계 행정기관장에 요청할 수 있다.

● 군납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군납업자에 대해 청문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제6조의 군납조합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당해 군납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청문을 하지 않고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 (등록의 취소등)	군납업자가 다음 각호의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군납업의 등록을 한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군납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군납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대외무역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9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5항 (불공정한 수출입행위의 금지)	장관은 무역거래자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하였다거나, 무역위원회로부터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제43조제1항 (수출입질서 유지를 위한 조정명령)	장관은 수출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무역거래자에게 수출입하는 물품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또는 그 대상지역에 관한 필요한 조정명령가능.

● 대외무역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9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종합무역상사의 지정)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종합무역상사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 (각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각조합이 다음 각호의1(제4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치 않은 때, 제46조 규정에 의한 사업외의 사업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유통산업발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5조 (청문)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등록의 취소등)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때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때등)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2호, 5호, 6호에 해당시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15조 (과징금처분)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제15조제1항 각호(등록취소등)에 해당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시장 등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5조 (체인사업자의 지정 취소등)	시·도지사는 체인사업자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6월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도시가스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3조의3 (청문)	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허가의 취소등)	도시가스사업자가 각호의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10조 (과징금)	1. 통산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제9조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의2 (시공자의 등록등) 제3항, 제4항	3. 등록된 자가 각호의 1(제1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등)에 해당시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등록된 자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정사업자.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지정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 (지정의 취소등) 제1항	지정사업자가 각호의1(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호 해당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9조 (청문)	장관은 미리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재정의 취소)	1.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배치설계를 이용하지 않거나 제13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사유가 종료하고 다시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재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상이용권은 그 취소가 있는 날부터 소멸한다.
		제24조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취소)	설정등록된 배치설계가 각호의 1(제3조제1항에 의한 조약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한 설정등록을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설정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시 설정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발명진흥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7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17조 (정보센터의 허가취소등)	정보센터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지정을 받은 경우,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정보센터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제22조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의 경우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50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방문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영업의 정지)	방문판매업자가 각호의 1(제4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5조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외의 자를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하게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0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방문판매업자·통신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영업의 정지)	1.통신판매업자가 각호의 1(제17조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제18조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를 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일부의 정지를 명할수 있다.
		제46조 (등록의 취소)	1.다단계판매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 제28조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해당시 제28조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제2호·제4호 해당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산업표준화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7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의 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25조 (표시제거등의 처분)	1.지정품목의 제품,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고 인정한 때에는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판매의 정지 기타 처분을 할 수 있음. 2.제17조 등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제26조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제조업자·지정가공기술의 사용자가 시판품 조사결과 규격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석유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등록의 취소등)	1.석유정제업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그 석유정제업의 허가 또는 제7조에 의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석유수출입업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1년 이내의 석유수출입정지를 명할 수 있다. 3.석유판매업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의2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과징금처분)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가 각호의1(석유정제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한 때 등)에 해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석탄산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제5항	미리 당해 석탄가공업자 또는 석탄광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제2항	1. 석탄가공업자가 각호의 1(제19조 각호의1에 해당된 때등)에 해당시 허가취소를 하거나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부과할 수 있다. 2. 석탄광업자가 제1항제4호(제24조제1항의 조치위반시) 또는 제5호 해당시 6월이내의 광업정지를 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송유관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2조 (허가의 취소등)	1. 송유관사업자가 각호의 1(제6조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6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송유관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당해 송유관사업자의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1 이상 1천분의 10이하의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12조 (지정의 취소 또는 정지)	검사기관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 검사업무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일류화 상품표시 승인의 취소)	일류화 상품표시의 승인을 얻은 기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일류화 상품표시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 일류화 상품표시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 (청문)	중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사업자.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제조업등록의 취소등) 제1항	제조업자등이 각호의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9조 (형식승인의 취소)	공업진흥청장은 각호의1(제5조 규정에 의해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형식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제12조 (보수업의 등록의 취소등) 제1항	보수업자가 각호의1(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호 또는 제4호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함.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6조의2 (청문)	허가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허가의 취소등)	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이 각호의1(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1.3호 해당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8조의2 (과징금)	1. 허가관청은 사업자 등이 제8조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명령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의2 (시공자의 등록등) 제3항, 제4항	3. 제1항에 의해 등록한 자가 각호의1(제15조에 위반하여 부도급한 때등)에 해당시 등록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4. 제1항에 의해 등록한 자가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1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22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등)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호에 해당시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32조 (진단기관의 지정취소등)	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때등)에 해당시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1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제조업의 등록취소등)	제조업자가 각호의 1(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42조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치 않게 된 때등)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제50조 (형식승인의 취소) 제1항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제46조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등록이 취소된 때등)에 해당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호, 제2호에 해당시 그 형식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제56조 (시공업의 등록취소등)	시공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신고한 때,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치 않은 때등)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공업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營業取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허가의 취소등)	통산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영제조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3조제3항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등)에 해당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제3호에 해당시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제조업허가의 취소등)	제조업자가 각호의1(제5조각호의1에 해당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때등)에 해당시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제조수량의 허가취소등)	1.제조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허가수량을 감량할 수 있다. 2.제조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감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제5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제1항	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각호의1(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의2 (청문)	중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8조 (등록의 취소) 제1항	청장은 등록제조업자가 각호의1(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의2 (청문)	중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3조 (형식승인 취소) 제1항	공업진흥청장은 제9조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얻은 등록제조업자 또는 1종 전기용품수입판매업자가 각호의1(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3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33조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제1항	청장은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중기청장은 등록한 지도사가 각호의 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 등록을 한 경우등)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의2 (청문)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1. 투자회사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등)에 해당시 등록취소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2. 상담회사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등)에 해당시 등록취소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3. 창업보육센터 사업자가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때 등)에 해당시 사업자지정취소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0조 제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0조 (행정명령) 제2항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항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그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 집단에너지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1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5조 (사업허가의 취소등)	1.사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때등)에 해당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 내의 사업정지를 명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제2호 해당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사업을 양도하거나 임원을 변경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품질경영촉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소속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인증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인증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11조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7조의 규정은 연수기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22조 (검정사업의 승인취소등)	제7조의 규정은 제21조규정에 의한 공산품의 안전을 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안전전문기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8조 (제조허가의 취소등)	1. 허가제조자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조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2. 허가제조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한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청문)	중기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인증기관이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 받은 날부터 1년이상 인증업무를 하지않은 때등)에 해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해당시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제21조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17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의 규정은 연수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인증업무"는 "연수업무"로, "제16조제2항"은 "제20조제4항"으로 본다.

●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9조 (청문의 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청문시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본다는 뜻 명시.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조 (청문절차)	1.청문 7일전에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8조의3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청문일시는 복수로 할 수 있고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지정된 복수일수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 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군남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조 (청문)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종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사유, 청문일시 및 장소를 청문일 1주일전에 해당 군남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대외무역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2조 (청문)	1.청문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출석진술하거나 의견진술가능.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해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때 진술기회포기로 간주.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절차)	1.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명시.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청문절차)	1.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서면, 전자문서로 의견을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반도체집적회로의배치설계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7조 (청문)	1.청문 7일전에 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가능.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기회포기한 것으로 간주.		

● 발명진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1.청문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7조 (청문)	1.청문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는 뜻 명시.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절차)	1.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청문시 진술내용을 작성해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는 뜻 명시.		

● 석유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3조 (청문의 절차)	1.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7일전에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석탄산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의 절차)	1. 7일전에 통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때에는 예외.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송유관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조 (청문절차)	1.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청문의 절차)	1. 청문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청문시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청문절차)	1. 의견진술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사업자,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기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5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1조 (청문절차)	1. 의견진술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명시.		

● 염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의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1. 청문 7일전에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명시.		

● 전기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에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하도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		

●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의2 (청문의 절차)	1.청문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 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명시.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0조 (청문절차)	1.청문에정일 10일전까지 통지. 2.지도사 또는 대리인은 지정된 일시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는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의4 (청문)	1.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청문 7일전까지 통지. 3.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가능 4.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해 출석자 서명날인. 5.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포기로 간주.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1.청문 7일전에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1조 (관리권 취소를 위한 청문)	1. 의견진술 지정일 15일전에 미리 서면 통지 2. 민간개발자 또는 대리인은 출석진술하 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 석자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의견진술 예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 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33조 (공공시설의 이용제한 금지등) 제3항	민간개발자가 제2항에 의 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 을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당 해 공공시설의 관리권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에 통지. 처분상대방. 대리 인이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 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진술기 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 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 견진술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 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3조 (청문절차)	1.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해야 한다.		

(11) 情報通信部

정보통신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4건, 대통령령 3건 등 7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유선방송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제5항	정통부장관은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등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2조 (허가의 취소등)	장관은 유선방송사업자가 이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장관은 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시설의 보수, 이전 또는 사용정지 명령에 위반한 때 등인 경우 허가취소나 6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정지명하거나 1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할 수 있음.

● 전기통신공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체신부장관은 처분을 언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당해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8조 (공사시행의 시정명령등)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전기통신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공함으로써 공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수급공사의 범위를 초과하여 공사를 도급받은 때,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등인 경우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공사시행의 중지명령가능.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체신부장관은 처분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당해 공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9조 (영업의 정지 및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체신부장관은 공사업자가 사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때, 허가 또는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공사업의 상속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전기통신기본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5조의2 (청문)	정통부장관은 처분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3조의2 (성능시험 기관의 지정등) 제2항	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전기통신관계법령을 위반한 때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35조 (형식승인의 취소등) 제1항	장관은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형식승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당해 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23조 (허가의 취소등) 제4항	정통부장관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해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제23조 (허가의 취소등)	장관은 자가전기통신설비가 그 설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설치자가 이 법에 의한 명령 위반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9조 (전기통신 설비의 제공에 관한 명령 및 협정 체결 신청)	통신위원회는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9조	기간통신사업자는 협정의 체결명령이있는 경우 기간통신사업자가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제공조건 기타 협정의 내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3조 (청문)	정통부장관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상대방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만,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5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정통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허가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등 인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28조 (사업의 폐지명령등) 제1항	장관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때, 신고한 날부터 1년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한 때 등인 경우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64조 (과징금의 부과)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해당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가능.
		제65조 (시정명령등)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법, 전기통신기본법, 전파법 또는 관련법률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사업자의 업무처리절차가 현저히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 등인 경우 시정을 명해야 함.

● 유선방송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의 절차)	장관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제출.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2조 (의견진술 절차)	통신위원회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10일전 당사자에게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 그 요지서면 작성확인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위 규정은 법 제45조의2(청문)와 법 제23조제4항의 경우에 준용토록 함		

●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 (의견진술 절차)	장관은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10일전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진술이나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이 그 요지서면으로 작성하여 확인케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통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는 뜻 명시.		

(12) 環境部

환경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12건, 대통령령 7총리령·부령 9건 등 28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대기환경보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2조 (청문)	환경부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제3항	대기환경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승인을 얻은 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승인취소
		제17조 (조업정지 명령등)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이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조업정지 명령,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제한,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2조 (청문)	환경부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 지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18조 (시설의 이전명령등) 제1항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변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명령.
		제20조 (허가의 취소등)	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변경 신고를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명령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배출시설의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6월이내 배출시설 조업정지
		제20조의2 (과징금처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온방시설 등의 배출시설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영업정지 명령해야 하는 경우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같음하여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제23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제5항	측정대행업자 등록취소, 영업정지를 제 46조(등록의 취소등)준용하는 경우
		제40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제5항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 영업정지를 제 46조(등록의 취소등)준용하는 경우
		제52조 (청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 먹는물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건강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4조 (조사대행자의 지정취소등) 제1항	조사대행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조사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등의 경우 지정취소, 6월이내 업무정지.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건강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8조 (폐쇄조치등) 제1항	환경부장관은 허가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때 또는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영업하는 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폐쇄하기 위한 조치 위한 간판 기타 영업표식물 제거, 삭제, 적법한 사업장이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부착, 시설물 기타 영업사용도구 봉인.
		제40조 (허가의 취소등) 제1항 내지 제3항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 받거나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는 등의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6월이내 영업정지, 영업정지명령 위반 계속 영업하는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취소,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휴업한 경우 허가 또는 등록취소

● 소음·진동규제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와 주거환경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16조 (조업정지 명령등)	시·도지사는 개선명령 불이행하거나 기간내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배출시설 전부 또는 일부조업정지명령,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의 위해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 즉시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시간제한,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17조 (시설의 이전명령등) 제1항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공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거나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거환경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공장의 이전명령.
		제18조 (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에 위반한 때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취소.
		제26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등)	시·도지사는 제25조제2항의 규정(작업시간의 조정, 방음, 방진시설의 설치등)에 의한 명령위반한 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조치명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와 주거환경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40조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제2항	시·도지사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의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등 명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규제대상의 사용금지 또는 폐쇄명령
		제45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이하 기간 정하여 영업정지명령
		제47조 (측정대행업의 등록) 제5항	측정대행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하여 제45조(등록취소등)를 준용하는 경우
		제4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 제5항	검사대행자의 지정취소에 관하여 제45조(등록취소등)를 준용하는 경우
		제54조 (청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분

● 수질환경보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3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수질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11조 (방지시설의 설치등) 제3항	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방지시설 안착 취도 되는 승인을 얻은 자가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승인취소
		제17조 (조업정지 명령등)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내 이행은 하였으나 조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조업정지명령, 수질오염으로 건강상의 위해와 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 즉시 당해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시간제한, 조업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3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수질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18조 (시설의 이전명령등) 제1항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주민의 건강상의 위해와 주변환경상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명령
		제20조 (허가취소등)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변경신고를 한 때, 이법 또는 법명령을 위반한 때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취소,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6월이내 조업정지명령
		제20조2 (과징금처분)	환경부장관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발전소의 발전설비, 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시 주민의 생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제30조의2 (특정시설의 설치신고등) 제4항, 제5항	환경부장관은 개선명령에 위반한 때 조업정지, 당해 특정시설의 폐쇄명령, 이전명령
		제37조 (호소시설에 대한 개선명 령등) 제2항	시도지사는 명령위반 차에 대한 당해 호소 특정시설의 사용중지 등 특정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
		제41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방지시설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공사를 일관하여 도급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이하 영업정지
		제43조 (폐수처리업 허가) 제4항	폐수처리업자의 허가취소, 영업정지를 제41조(등록의 취소등)에 준용하는 경우
		제44조 (측정대행업 의등록) 제5항	특정대행업자의 등록취소, 영업정지를 제41조(등록의 취소등)를 준용하는 경우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3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수질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지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43조의2 (오수·폐수 처리제의 규격 및 기준) 제3항	환경부장관은 검사결과 그 규격 및 품질이 규격 및 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하여 당해 오수·폐수처리제의 제조 또는 판매금지
		제53조 (청문)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1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대리인,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4조 (가축사육의 제한등)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사육으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우려가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이전 기타 위해 제거등 필요한 조치명령
		제37조 (허가취소 및 과징금부과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거나 허가받은 후 1년 이내 영업개시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우 허가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영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에 해할 우려있는 때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제40조 (등록의 취소등)	오수처리시설 등의 설계, 시공업자 또는 정화조 제조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후 1년 이내 영업개시 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내 휴업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부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을 또는 환경보전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1조제1항 (취급제한 유독물의 제조 금지등)	환경부장관은 심사결과 당해 화학물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 또는 수입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 관계기관의 장에 요청
		제13조 (특정유독물의 제조금지등)	환경부장관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유독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조·수입·판매 또는 사용금지하거나 제한
		제18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유독물영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이내 영업정지, 등록된 품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등록을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유독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 품목등록취소, 6월이내 제조 또는 수입정지 명령
		제21조제1항 (과징금 처분)	유독물 영업자중 유독물 제조업자 또는 유독물취급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 그 영업정지가 국민에게 심히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 과징금납부
		제22조제1항 (개선명령등)	유독물영업자에 대하여 시설, 장비 등이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
		제23조 (이전명령)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이 인근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의 이전명령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6조 (청문)	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3조 (자원재활용 권고 및 조치명령) 제2항	재활용지정사업자, 제1종지정사업자·제2종지정사업지 및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가 지침권고 준수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위반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명령
		제15조 (포장폐기물 등 발생억제 권고 및 조치명령) 제2,5항	주무부장관은 제조자 등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지역의 자원재활용 촉진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조치명령
		제16조 (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의 이행등) 제2항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배출자에 대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

● 폐기물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7조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8조 (허가의 취소등)	폐기물처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받은 후 1년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우 허가취소, 6월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제29조 (과징금처분) 제1항	폐기물처리업자에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나 그 영업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같음하여 2천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제34조 (등록의 취소등)	설계시 공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거나 등록한 후 1년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1년 이상 휴업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 폐기물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청문)	통상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와 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그러하지 아니함.	제15조 (폐기물의 수출입 허가취소) 제1항	상공부장관은 폐기물의 수출 또는 수입허가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허가취소
		제20조 (반입명령등) 제1항	상공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가 허가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하는 등의 경우 기간을 정하여 당해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정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함

● 해양오염방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66조 (청문)	내무부장관, 환경부장관,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각각 내무부령, 환경부령 또는 공동부령에 따라 미리 당사자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1조 (등록의 취소등)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운반선의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1년 2회 이상 운반선 사용정지처분을 받는 등의 경우등록취소, 6월 이내 운반선 사용정지
		제29조 (부적합선박에 대한조치) 제2항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선박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시설 등의교체, 개선 또는 수리 등의 명령을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선박을 항행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해양환경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박에 대한 항행정지처분
		제42조 (방제, 청소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제2항	내무부장관의 방제, 청소업자에 대한 시설개선명령 위반한 때 6월이내 당해 시설의 조업정지명령
		제44조 (방제, 청소업의 등록취소)	내무부장관은 방제, 청소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 명령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한 사항이 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66조 (청문)	내무부장관, 환경부장관, 수산청장 또는 해운항만청장은 각각 내무부령, 환경부령 또는 공동부령에 따라 미리 당사자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45조 (자가처리시설) 제4항	환경부장관은 자가처리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당해 시설의 개선 또는 처리방법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6월이내 당해 시설사용정지명령
		제64조 (해양오염방지 설비, 자재, 약제 형식승인등) 제9항	해운항만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형식승인 얻은 자가 대통령령(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 얻거나 검정받는 경우, 성능시험기준에 미달하는 설비, 자재 또는 약제판매한 경우 등, 영 제52조)이 정하는 사항 위반한 경우 승인취소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5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취소)	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인증을 받은 자가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얻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사용의 인증을 취소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제3항 (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등)	장관은 처분시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처분의 상대방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3조 (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등) 제1항	장관은 평가대행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대행업무를 일괄 하도급한 경우 등인 때에는 지정취소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법 제52조 (청문)	환경부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와 대기환경보전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하여 지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44조 (제작차배출가스검사수탁기관지정의 취소)	제작차 배출가스검사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 지정취소
		법 제43조 (등록의 취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 당시는 유해성이 판정되지 아니하였으나 새로운 연구결과 또는 계속사용으로 인하여 유해성이 확인된 경우 첨가제 등록취소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6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청문 사유 일시 장소 등 통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의견제출,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 그 내용 서면 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법 제54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와 주거환경에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음	제9조 (제작차 소음검사 업무수탁기관지정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제작차 소음검사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거나 지정조건에 위반한 경우, 시험장비·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지정취소
		법 제3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하여도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인증취소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법제3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총리령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해하여 지는 경우 그렇지 않음	법제19조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	법 제19조(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변경명령을 말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9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서면청문 사유 일시장소 등 통지, 출석진술하거나 서면의견제출가능, 출석진술시 공무원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3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청문 사유 일시장소 등 통지, 지정된 일시에 출석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시 공무원 그 내용 서면작성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의 절차)	1.청문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3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서면청문 사유. 일시. 장소통지, 일시는 복수, 복수일시 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 의견진술, 서면제출, 출석진술시 공무원 그 내용 서면작성 확인 하게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9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상대방. 대리인에 서면청문 사유. 일시 및 장소통지, 일시는 복수로 정하여야 함. 지정된 복수일시중 원하는 일시에 출석 의견진술하거나 서면 의견제출, 출석진술시 공무원 그 내용서면 작성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0조 (청문절차)	7일전 서면청문 사유 일시 장소 등 통지. 일시는 복수로, 지정된 복수일시중 원하는 날 출석 의견진술, 서면제출, 출석진술시 그 내용서면 작성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3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 청문사유, 일시, 장소 등 통지, 지정된 일시에 출석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제출,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 그 내용서면작성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경우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2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상대방, 대리인에 서면청문사유, 일시, 장소통지, 일시는 복수로, 지정된 일시 출석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의견제출, 출석진술시 공무원 그 내용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 포기로 본다는 뜻 명시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5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 청문사유, 일시, 장소 등 통지, 출석의견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시 관계 공무원 그 내용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 기회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1조 (청문절차)	청문일 7일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 청문사유, 일시, 장소 등 통지, 일시 복수로, 지정된 일시출석의견진술, 서면제출, 출석진술시 관계 공무원 그 내용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환경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청문시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 제출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하여야 함. 서면통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11조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 승인의 취소)	장관은 민법.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이 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등인 경우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3) 保健福祉部

보건복지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24건, 대통령령 24건, 총리령·부령 6건 등 54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1조 (청문)	시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행정처분) 제1항	영업자가 각호의1(신고를 한 후 3월이 지나도 그 영업을 개업하지 아니한 때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1조 (청문)	시장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과징금처분) 제1항	영업자가 제9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1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8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68조 (과징금등) 제1항, 제2항	1.요양기관종사자가 요양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보험급여했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때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할 수 있다. 2.요양기관종사자가 제1항의 행위로 보험자등에게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부담케 한 때 제1항에 의한 면허자격정지를 명하거나 부당하게 한 비용의 10배 상당금액 이하의 과징금부과 가능

● 공중위생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행정처분)	1.영업자 등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영업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하거나 6월이내의 영업 또는 제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용업자나 미용업자가 제2항에 의해 면허취소나 업무정지 된 때에도 또한 같다. 2.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이법 등 위반한 때에는 면허취소나 6월이내의 업무정지명 할 수 있다.
		제25조의2 (과징금처분)	영업자 등이 제23조제1항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또는 제조업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 제4항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국민연금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3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3조 (지급의 정지) 제1항	수급권자가 각호의1(정당한 사유없이 공단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요구에 응하지 않은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5조의2 (청문)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허가의 취소등)	1. 노인복지시설이 각호의1에 해당시 사업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유료노인복지시설이 각호의1에 해당시 사업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실시하는 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사업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20조의3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25조 (등록의 취소등)	노인여가시설이 다음 각호의1(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이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자격정지) 제1항	장관은 이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대마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4조의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처분이 긴급하게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허가의 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마취급자가 다음 각호의1(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마약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3조의2 (청문)	면허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처분이 긴급히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3조 (면허취소와 업무정지)	1. 마약취급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기타 마약에 관한 법령에 위반시 면허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한의마약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시 허가관청은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53조의3 (과징금처분)	마약취급자에 대해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해 국민보건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5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설립허가 취소등)	1.주무관청은 법인이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거나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한 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감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정을 명한 후 1년이 지날 때까지 법인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23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주무관청은 법인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수익을 그가 행하는 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에는 그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9조 (허가취소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호의1(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0조 (정비의 권고등)	1.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이 목적달성, 기타 사유로 계속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다른 유사한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 또는 그 장소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다. 2.제1항에 의해 권고받은 시설이 다른 시설로의 전환이나 목적사업의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없 음		제29조 (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법령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 식품위생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4조 (청문)	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58조 (허가의 취소등)	1.영업자가 각호의1(이법 위반시등) 해당시 영업허가 취소나 6월이내의 영업정지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2.영업자가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명령에 위반해 계속 영업시 영업허가 취소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영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6월이상 휴업시 영업허가취소나 영업소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59조 (품목의 제조정지등)	1.영업자가 각호의1(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목 또는 품목류의 제조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3조 (면허취소등)	1.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각호의1(제38 각호의1에 해당시,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시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아동복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제2항	장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써 통지하고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6조 (인가취소와 사업정지등) 제1항	아동복지시설이나 교육훈련시설(대학은 제외한다)의 장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사업의 정지, 인가 또는 위탁의 취소, 시설의 폐쇄(제20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 등의 조치를 할수 있다.

● 약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9조의2 (청문)	장관 등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위생상 큰 위험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등)	1. 의약품 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또는 의료용구의 판매업자가 각호의1(이법 위반시등)에 해당시 허가·승인 또는 등록취소하거나 품목제조금지 또는 품목수입금지를 명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시설기준이 적합치 않게 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71조 (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등)	1. 보사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1에 해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2. 보사부장관은 약사 또는 한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해서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해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영유아보육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 또는 그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인가의 취소등)	보육시설이 각호의1(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윤락행위등방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2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소재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18조 (허가의 취소등)	1.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 또는 상담소가 각호의1(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시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48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7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 자격정지등)	1.응급의료종사자가 각호의 1(제16조의 규정에 해당한 때 등)해당시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2.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가 각호의1(이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때 등)해당시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 가능
		제49조 (과징금처분)	1.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영하는 자가 제47조제2항에 해당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국민보건의료에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청문)	장관등 은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당사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1.보사부장관은 의료기사 등이 다음 각호의1(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게 된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해당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제24조 (개설등록의 취소등)	1.시장·군수·구청장은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1(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의료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63조의2 (청문)	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 (설립허가의 취소)	보사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1(정관으로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한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50조 (시정명령등)	<p>보사부장관 등은 의료기관이 제17조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 제32조의2제1항, 제2항, 제34조 내지 제37조, 제40조규정에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일정한기간을 정해 그 시설, 장비 등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p>
		제51조 (개설허가의 취소등) 제1항	<p>의료기관이 각호의1(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 제31조에 의해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p>
		제52조 (면허의 취소 및 재교부) 제1항	<p>보사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1(제8조제1항1호 내지 5호의1에 해당된 때, 면허를 대여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p>
		제53조 (자격정지등) 제1항	<p>보사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1(의료인으로서 심히 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p>
		제53조의2 (과징금처분)	<p>의료기관이 제51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의료업정지 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p>

● 의료보험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8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77조 (과징금등) 제1항, 제2항	1. 요양기관종사자가 요양급여기준 등을 위반해 보험급여를 했거나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때 1년 이하의 면허자격정지를 할 수 있다. 2. 요양기관종사자가 제1항의 행위로 보험자 등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케한 경우 제1항에 의한 면허자격정지 명하거나 보험급여비용의 10배 상당 금액이하의 과징금부과 가능

● 의료보호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5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의료보호 진료기관의 지정취소등)	1. 의료보호진료기관이 각호의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시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의료보호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월이상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9조 (허가의 취소등)	1. 입양기관이 다음 각호의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전염병예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0조의9 (청문)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0조의8 (허가의 취소등)	1. 시도지사는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1(제40조의3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않은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정신보건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처분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8조 (정신의료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복지부장관은 정신의료법인이 다음 각호의1(정관으로 정한 사업이외의 사업을 할 때, 이법 또는 이법이 정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 (설치허가의 취소등) 제1항,제2항	1.사회복지시설이 각호의1(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한 때등)해당시 그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범위내에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정신의료기관이 각호의1 해당시 당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허가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5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와 국민보건 위생상 큰 위해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어 처분이 긴급히 행해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5조 (허가, 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업무의 정지)	1.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가 각호의1(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등)해당시 이법에 의한 허가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의약품의 성분 등의 변경에 의해 허가목적 달성할 수 있을 때의 변경만 명할 수 있다.
		제35조의3 (과징금처분)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에 대해 제35조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부과는 업무정지 처분이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 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가정의례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6조의3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공중위생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의2 (청문절차)	1.청문일7일전까지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국민연금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6조의2 (청문의 절차)	1.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직원은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노인복지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의2 (청문)	1.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	1.청문 7일전에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대마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조의2 (청문의절차)	1.청문 7일전에 청문서 발송(처분권자가 복지부장관인 경우는 10일전) 2.대마취급자 또는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관계공무원은 청문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 마약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7조의2 (청문의 절차)	1. 청문 7일전(처분권자가 복지부장관인 경우는 10일전)에 도달되도록 청문서 발송.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4.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의 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송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관계공무원은 청문시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조 (청문)	시장 등은 처분시 청문을 하여야함. 청문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상대방은 지정일에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을 확인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식품위생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7조 (청문의 절차)	1. 청문일 7일전(처분권자가 복지부장관인 경우는 10일전)에 도달되도록 통지 2. 영업자.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 아동복지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청문서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지정된 기일까지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해야 한다.		

● 윤락행위등방지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에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청문)	1. 청문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 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의 절차)	1.청문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의료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 (청문)	1.7일전에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의료보험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3조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의료보호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3조 (청문의 절차)	1.청문일7일전(처분권자가 복지부장관인 경우는 10일전)에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절차)	1. 청문일 7일전(처분권자가 복지부장관인 경우는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의2 (청문)	1. 처분시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청문 7일전에 통지 3.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 후 서명날인 5.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제16조 (지정의 취소등)	복지부장관은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각호의1(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등)에 해당된 때에는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다.

● 전염병예방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1조의4 (청문의 절차)	1.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정신보건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조 (청문의 절차)	1.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 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 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조의2 (청문의 절차)	1.청문일 7일전(처분권자가 복지부장관인 경우10일전)에 도달되도록 통지 2.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또는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관계공무원은 청문서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 안마사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청문)	시도지사는 처분서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요지 작성하여 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9조 (행정처분의 기준)	개설신고 불이행, 휴업·폐업신고 불이행, 개설신고·변경신고불이행, 시설기준위반 등인 경우 영업정지 1월부터 폐쇄명령까지 가능

● 약사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0조 (청문절차등)	1.청문일 7일전까지 청문서 송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청문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지정취소의 절차등)	1.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해야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14조 (지정의 취소등) 제1항	장관은 제13조제1항의 응급의료기관이 각호의1(이 법과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이에 불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제3항, 제4항	3.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취소를 할 경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을 해야 한다.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에 관해서는 영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지도·감독)	1.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적정한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지정양성기관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2.영 제2조3항의 규정에 의해 각호의1(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등) 해당시 1년 이내의 양성업무의 정지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처분을 받을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처분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5조 (지정의 취소)	처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휴업하거나 그 영업실적이 없을 경우 시·도지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적출물처리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 (청문)	시·도지사는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시 당해 처분을 받을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처분을 받을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3조 (지정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또는 적출물처리업자가 갖춘 처리시설이 법령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처리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하여야 함.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명령, 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위반사항이 행하지 않으면 지정취소가능

(14) 勞動部

노동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4건, 대통령령 4건 등 8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공인노무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2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7조의6 (노무법인 인가취소)	사원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월이내 사원을 보충 않거나 이법 또는 이 법명령을 위반한 때 노무법인설립인가 취소
		제19조 (등록의 취소등)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개업등록을 하거나 이종으로 등록하는 등의 경우 개업노무사 등록 취소
		제21조 (자격의 정지처분)	자격대여 행위금지를 위반하거나 이법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관계법령위반 벌금 이상 형의 선고받은 경우 공인노무사 3년이내 자격정지

● 산업안전보건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제1항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청문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청문기회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63조의2 (청문 및 처분기준)	제15,16,30,31,36,38,42,43,47,49,5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대행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교육기관, 지정검사기관, 지정측정기관 등의 지정, 물질제조 등의 허가 또는 지도사등록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또는 영업정지명령

● 직업훈련기본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0조 (승인의 취소)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승인을 얻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거나 직업훈련기준에 미달하거나 기타 이법 또는 이법명령에 위반한 때 승인취소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6조의2 (청문)	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3조 (직업훈련의 인가취소)	인정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거나 직업훈련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인가취소
		제26조 (직업훈련등의 계획) 제4항	사업내 직업훈련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되거나 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등의 경우 승인취소
		제43조 (면허의 취소)	직업훈련교사면허를 받은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면허취소,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때 면허취소

● 직업안정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제3항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 청문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청문기회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6조 (허가의 취소등)	노동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8, 19, 29, 33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나 제 23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월 이내 사업 또는 모집행위정지, 허가취소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의5 (청문절차)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청문기일 및 장소 청문개시 7일전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의 견제출, 서면의견제출, 출석진술 공무원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기회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5조의2 (청문)	청문예정일 10일전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의견진술, 서면의견제출, 출석진술시 공무원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직업안정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5조 (청문)	청문에정일 7일전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의견진술, 서면제출 가능, 출석진술시공무원 그 요지서면 작성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는 경우 의견진술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7조의2 (청문의 절차)	청문에정일 7일전 처분상대방 또는대리인에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의견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시 공무원 답변서 작성확인케 한 후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불응하는 경우 의견진술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15) 建設交通部

건설교통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23건, 대통령령 20건, 총리령·부령 6건 등 49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86조 (청문)	장관은 건설부령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각협회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82조 (영업정지등)	1. 건설업자가 각호의1(제81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은 때 등) 해당시 6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할 수 있다. 2. 건설업자가 각호의1(제12조 위반시 등)에 해당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위반한 공사의 도급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장관은 건설부령에 의하여 당해 건설업자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각협회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영업소의 소재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83조 (건설업의 면허취소등)	1. 건설업자가 각호의1(제21조 규정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시 건설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3.5호 해당시 건설업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2. 각 협회가 회원인 건설업자에 대한 건설업의 면허취소를 건의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건축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5조 (청문)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건축주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9조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제1항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법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중지를 명하거나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 (기존건축물에 대한안전점검및시정명령등)	1. 기존건축물이 공익상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 시도지사 승인을 얻어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용도변경, 사용금지,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미관지구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상장애가 될 때 개축, 수선하게 할 수 있다. 5. 제4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건축물개축, 수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건축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의2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면허의 취소등)	1. 건축사가 다음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은 사실이 판명된 때, 제9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되 된 때 등)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8조의2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 건축사 등의 업무정지 명령)	1. 건축사 사무소개설자가 각호의 1(부정등록등) 당시 건축사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거나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에게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나 업무정지가 소속 건축사나 건축사보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소속건축사 및 건축사보에 대해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도로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75조의2 (청문)	관리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4조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관리청은 각호의1(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해 발하는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등)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해 발하는 명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의9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교통영향평가 기관·대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8 (등록의 취소등) 제1항, 제2항	1. 교통영향평가 기관이 각호의1(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교통영향평가기관에 대한 등록취소등을 명하는 경우 당해 교통영향평가 업무에 참여한 전문인력에 대해 1년 이내의 평가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도시재개발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0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 (감독) 제1항, 제2항	1. 재개발사업시행이 이법에 의한 명령 등에 위반되었을 때 그 처분의 취소, 변경, 정지, 공사중지, 변경, 임원의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재개발사업의 계속 시행이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이법에 의한 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시행자에게 공사의 중지,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명할 수 있다.

● 도시철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도시철도사업면허를 받은 자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만, 면허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9조 (면허의 취소등)	장관은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 승인 또는 인가에 불인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법에 의해 면허, 승인 또는 인가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9조의2 (과징금의 부과)	장관은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사업 정지 처분에 해당할 경우 이에 같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부동산중개업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6조의4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 제5항	건설부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 (허가의 취소)	허가관청은 중개업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인 경우에 법인이 해산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4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3조 (업무의 정지처분)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고용 또는 해고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범위의 제한을 위반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이법에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48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8조 (감독) 제1항	사업시행자가 각호의1(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법에 의한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수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9조 (청문)	건교부장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영리행위 금지등) 제2항	환경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수도사업자외의 자는 수돗물을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 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 (지하수의 취수제한등) 제1항	시장·군수는 도관 또는 기기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지하수를 취수하는 지역에 있어서 지하수 취수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수질오염, 수원고갈 및 지반침하 등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수를 제한하거나 취수시설의 폐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9조 (청문)	건교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조치)	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가 각호의1(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등)에 해당시 이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시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
		제47조 (개선명령) 제1항, 제2항	1.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2. 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48조 (공급조건의 변경)	인가관청은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도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6조 (청문)	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1.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 진단업무를 하고자 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의지정을 받아야 한다. 2. 제19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은 "지정"으로, "등록취소"는 "지정취소"로 본다.
		제22조 (등록의 취소등)	유지관리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등록한 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하지 않고 1년 이상 휴업한 때등)에 해당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해당시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5조의3 (청문)	교통부장관은 처분시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의 의견 들어야 함. 다만,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처분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5조 (면허의 취소등)	교통부장관은 여객터미널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 인가에 불인 조건에 위반하거나 인가를 받지 못한 때, 공사의 합격 처분을 받지 못한 때등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25조의2 (과징금 처분)	교통부장관은 사업자가 제25조에 의한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 징수한 과징금은 여객터미널 주변 교통시설의 확충에 사용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1조 제2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감독) 제1항	건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각호의1(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등)에 해당한 때 이법에 의한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임대주택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0조 (청문)	장관은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임대사업자의 등록말소) 제1항	건설부장관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6조제2항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 자동차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5조 (청문)	건교부장관 등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처분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1조제2항. 제30조제6항. 제42조제2항. 제44조제3항. 제45조제4항. 제47조제4항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등,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기계, 기구검사 대행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등, 택시미터의 검정 등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또는 사업, 업무의 정지
		제24조제2항. 제37조제1항 후단	시도지사는 개선명령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음. 시도지사는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등의 소유자에 대한 정비, 점검 또는 원상복구명령시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음.
		제30조 (자동차의 형식승인등) 제4항	장관은 제작자 등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시설 및 기술인력에 미달한 때, 개선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시설 및 기술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때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31조 (제작결합의 시정) 제2항	건교부장관은 제작결합의 시정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제작자 등에 대하여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정명령가능
		제38조제3항. 제46조제2항. 제64조제2항	시도지사는 정비관리자가 이법 또는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위반시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정비관리자의 해임명령가능. 건교부장관은 기술인력에 해당되는 자가 이 법이나 처분, 명령위반시 당해 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에게 해임명령 또는 일정기간 직무정지하게 할 수 있음.
		제54조 (결격사유) 제2항, 제66조 (사업의 취소, 정지)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시도지사는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정기점검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월이내 사업정지가능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5조 (청문)	건교부장관 등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처분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응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74조 (과징금의 부과)	건교부장관등은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 기계, 기구검사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등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자동차운수사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31조의3 (청문)	미리 당해 사업자 또는 대리인의 의견 들어야 함. 다만 사업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정지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확인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1조 (사업면허의 취소등)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 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인가받은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6월이내 사업의 정지,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취소
		제31조의2 (과징금처분)	자동차운송사업자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제55조 (준용규정)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처분은 제31조, 제31조의2 준용
		제55조의12 (준용규정)	자동차대여사업의 면허취소, 사업정지, 과징금처분은 제31조, 제31조의2 준용

● 전문건설공제조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2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이사장 또는 감사에 대해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시 당해 조합의 임·직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이사장 또는 감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이사장 및 감사의 취임승인취소) 제1항	건설교통부장관은 각 조합의 이사장 또는 감사가 이법 또는 정관의 규정나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제주도개발특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7조 (청문)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해당 처분을 받을 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을 받을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6조 (지하수의 굴착·이용허가 취소등) 제1항, 제2항	1. 각호의1(정당한 이유없이 허가일부터 3월이내 공사착수하지 않은 때등) 해당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굴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제25조제1항에 의한 지하수이용으로 인해 보전위생상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동항에 의한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 받은 자에 대해 지하수이용제한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 (관광토산품의 제조업)제3항	도지사는 제조업자가 불량품을 제조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 (감독)	1.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각호의1(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등)에 해당시 이법에 의한 인가, 승인, 허가, 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변경, 이전, 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의2 (평가대행자의 지정취소 및 지도, 감독등)	1.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시행령 제14조의3제1항-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등)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주차장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의3 (청문)	건교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의8 (안전도인정의 취소)	1.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작자 등이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도인정을 받은 경우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도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 (감독) 제3항	3.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에 대해 당해 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4조의3 (청문)	전교부장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 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영업정지등)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각호의1(주차장의 구조, 설비기준 등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게 된 때등)에 해당시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택건설촉진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8조의2 (청문)	장관은 그 처분을 받을 자에 대해 미리 청문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등록의 말소등)	1. 등록업자가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9조 (지정의 취소)	1. 지정업자가 다음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9조의2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등)	1. 주택관리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등) 해당시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6호의2 해당시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3.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1 해당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39조의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등)	1. 주택관리사 등이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소한 때 등)에 해당시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시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8조의2 (청문)	<p>장관은 그 처분을 받을 자에 대해 미리 청문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 기타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제41조의2 (주택자재 생산업의 등록말소등)	주택자재생산업자가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등)에 해당시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2에 해당시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제44조 (주택조합의 설립등) 제8항	시장등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의3 (인정의 취소)	공업화주택 또는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량주택자재를 건설 또는 생산하는 자가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때 등)에 해당시 그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 (청문)	<p>1. 미리 상대방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3.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등록사항 변경신고 또는 정관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청문 절차의 통지가 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하지 않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p>	제17조 (자격의 취소) 제1항	감정평가사가 다음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얻은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제28조 (등록취소등) 제1항, 제2항	<p>1. 감정평가업자가 각호의1(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등)해당시 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내에서 영업정지를 명할수 있다. 2. 감정평가사가 각호의1(제15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시 1년의 범위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p>

● 철도소운송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의3 (청문)	미리 당해 소운송업자의 의견 들어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그러하는지 아니함	제17조 (등록의 취소등)	철도청장은 소운송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처분위반하거나 업무범위를 한정된 경우 그 범위를 위반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 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제17조의2 (과징금처분)	철도청장은 사업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 갈음하여 300만원 이하 과징금 처분

● 측량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7조 (제재처분과 청문)	1. 제46조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해 측량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하며 필요시 측량협회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측량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않고 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46조 (측량업의 등록취소등)	1. 측량업자가 각호의1(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대여한 때 등)에 해당시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2. 측량업자가 각호의1(고의, 과실로 인하여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 등)에 해당시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0조 (청문의 절차)	1. 청문 7일전까지 통지. 영업소소재지 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건설업자.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건축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0조의2 (청문절차)	1. 청문에 정일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는 뜻 명시		

● 건축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의2 (청문절차)	1. 청문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는 뜻 명시		

●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9조의2 (청문)	1. 처분시 미리 청문을 해야 하며 필요시 참고인 의견을 들어야 함. 2. 청문 7일전까지 통지 3.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4.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5.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는 뜻 명시	법 제22조 (면허의 취소등)	장관은 매립에 관한 공사의 준공인가전에 각호의1(매립면허받은 자가 법령규정 또는 이에 의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 등)해당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매립에 관한 공사의 시행구역내에 있는 공작물 기타 물건의 개축, 제거 또는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 (청문)	1. 청문에정일 7일전까지 통지 2. 당해 교통영향평가기관의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함.		

● 도시재개발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53조 (의견진술절차)	1. 의견진술 예정일 7일전에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해야 한다.		

● 도시철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의3 (청문절차)	장관은 의견진술일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통지받은 상대방은 지정일에 출석하여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공무원은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확인후 서명날인케 하여야 함.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0조의2 (청문절차)	1.청문 7일전에 도달되도록 청문서 발송 2.거래정보사업자, 중개업자 또는 공인 중개사는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3.관계공무원은 답변서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7조의2 (감독처분 등을 위한 청문절차)	1.의견진술 지정일7일전에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해야 함.		

● 수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8조 (의견진술절차)	1.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6조 (의견진술의 절차)	1. 의견진술 예정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본다는 뜻 명시		

● 여객자동차터미널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조 (청문절차)	청문에정일 10일전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 그 요지 서면작성 확인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통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때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1조 (감독처분 등을 취한 청문절차)	1.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에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 (청문절차)	건교부장관등은 청문에정일 10일전까지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 그 요지서면작성 확인제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통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때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조의2 (청문절차)	청문예정일 10일전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 그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통지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기회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전문건설공제조합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4조의2 (청문의 절차)	1.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통지 2. 이사장·감사 또는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주차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의2 (청문)	1. 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2. 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4조의2 (청문의 절차)	1.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피청문인에게 통지. 2. 피청문인, 대리인은 구두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0조 (청문의 절차)	1.법 제29조에 의한 청문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대방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사유와 청문 기일 및 장소를 청문개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상대방의 주소불명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철도보호에관한규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에 서면통지. 상대방은 출석하여 의견제출.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 후 서명날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철도소운송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6조의4 (청문의 절차)	당해 소운송업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 측량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5조 (청문의 절차)	1.청문예정일 10일전까지 측량업자에게 통지. 영업소재지 불명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측량업자.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 건설교통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청문)	주무관청이 처분하는 경우 미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함. 의견진술일의 7일전까지 일시. 장소 등을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은 출석하여 의견진술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 후 서명날인.	제10조 (임원선임의 승인 및 취소) 제2항	주무관청은 임원선임승인을 얻은 임원이 민법 또는 이 규칙이나 법인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 민법 또는 이 규칙에 의한 주무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도로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의2 (청문의 절차)	1.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서면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조 (청문의 절차)	1. 청문예정일 7일전까지 당사자. 대리인에게 통지 2. 당사자. 대리인은 구술로 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때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조 (청문)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대행자·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사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조 (경고처분)	장관 등은 대행자, 사업자 등이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 위반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때에는 법이 정하는 허가 등의 취소, 사업 등의 정지 또는 해임명령을 하지 아니하고 경고를 할 수 있음.

(16) 海洋水産部

해양교통부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11건, 대통령령 11건, 총리령·부령 7건 등 29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낚시어선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시·도지사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또는 안전운항과 위해방지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0조 (행정처분) 제1항	낚시어선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이법·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에 해당시 영업의 폐쇄 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시에는 영업의 폐쇄를 명해야 한다.

● 선박직원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청문)	해운항만청장은 처분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청문하여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해기사는 청문에 있어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제출 가능	제9조 (면허의 취소등)	해운항만청장은 해기사가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선박직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행이 있는 때,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면허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등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견책을 할 수 있음.

● 수로업무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1조 (청문)	해양부장관은 처분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미리 수로측량업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다만, 수로측량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0조 (수로측량업의 등록취소등)	해양부장관은 수로측량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수로측량업등록증을 대여한 때 등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수로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때 등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함.

● 수산물검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청문)	검사소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 (제조·가공의 중지명령등)	검사소장은 수산물의 제조·가공을 하는 자 또는 수출·판매를 목적으로 수산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조·가공 또는 소유하는 수산물로서 이 법에 위반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가공 또는 운반을 중지하거나,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3조 (청문)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31조 (어업의 개시등) 제2항	시·지사는 어업권을 취득한 자가 그 어업을 개시한 후 1년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당해 어장을 유희상태로 두어 어장의 종합적인 이용이 조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어업권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5조 (면허어업의 취소)	시·도지사는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때, 제10조제1호에 해당될 때,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등)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제40조 (입어 등의 제한) 제4항	시·도지사는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가 제2항의 협의 또는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위반하거나 입어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건 또는 정지에 위반한 때에는 그 면허한 어업을 제한·정지하거나 면허를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다.
		제47조 (어획물 운반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어획물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호의 1(외국의 어업에 관한 법령,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한 어획물 또는 그 재품을 운반한 때 등)에 해당시에는 그 허가한 어획물운반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3조 (청문)	행정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8조 (수산제조업의 사전허가) 제5항	5. 수산청장은 사전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간내에 제49조제2항의 허가기준에 의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전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산제조업의 제한, 정지 또는 취소)	수산청장은 수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각호의1(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수산동식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제조하고자 할 때 등)에 해당한 때에는 허가한 수산제조업을 제한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5조 (유료낙시터의 지정등) 제3항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은 유료낙시터의 지정을 받은 공동어업의 어업권자가 그 낙시터를 제2항(유료낙시터의 지정, 수산자원의 조성 기타 유료낙시터의 요금,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7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 (조합의 설립과 인가의 취소)	1.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에 의한 설립인가를 받은 자가 인가일부 60일이 경과하여도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6조 (준용규정)	제18조 내지 제25조, 제26조의2 등의 규정은 조합에 이를 준용한다.
		제139조 (준용규정)	제18조,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제20조 내지 제23조, 제25조제1항 등의 규정은 이를 중앙회에 준용한다.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57조의2 (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4조 (법령위반에 대한 조치)	1.총회, 의결, 선거가 법령 등에 위반시 의결, 선거, 당선을 취소, 집행정지케 할 수 있음. 2.조합의 업무·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시 조합에 대해 시정명령하거나 관계임직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 3.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1·2항의 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시키거나 임원의 해임, 직권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55조 (해산명령의 사유)	해양수산부장관은 조합(중앙회제외)이 각호의1(조합이 장기간 그 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 조합이 사업량으로 보아 조합운영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등)에 해당시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 이를 해산시킬 수 있다.
		제157조 (전용계약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내용이 공익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어선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8조 (청문)	장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10조 (허가의취소) 제1항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조, 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조선업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이법,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등)에 해당시에는 건조·개조허가를 취소하거나 어선의 건조·개조의 중지, 어선 또는 어선설비의제거를 명할 수 있다. 제1호 해당시는 허가를 취소해야 함.
		제19조 (등록의 말소와 선박국적증서 등의 반납) 제2항	어선의 소유자가 각호의1(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적증서 등의 효력이 상실된 때 등)에 해당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등록말소를 신청할 것을 최고해야 하며 당해 어선의 소유자가 최고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어선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 어항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제3항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제1항	관리청은 비관리청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각호의1(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때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및 제2호 해당시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제19조 (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1.관리청은 각호의1(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해 필요한 때등)에 해당시 제12조에 의한 허가 또는 제15조에 의한 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중지 또는 시설물의 개축을 명할 수 있다. 2.제18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은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항로표지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의견의 청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인에게 미리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제9조 (등화등의 제한) 제2항	해운항만청장은 항로표지로 오인될 우려있는 등화사용, 음향을 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등화 또는 음향의 소멸을 명하거나 기타 항로표지로 오인되지 아니 하도록 필요한 조치명령
		제11조 (식물에 관한 제한) 제2항, 제3항	해운항만청장은 항로표지부근에 항로표지 시야를 가리거나 가릴 우려있는 식재된 식물에 대하여 권한을 가진 자에게 당해 식물의 항로표지에 장애가 되는 부분제거 또는 이식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항로표지 설치시 현존식물이 시야를 가리거나 우려있으면 장애 부분제거 또는 이식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 항만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8조의2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부여,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처분의 상대방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2조 (등록의 취소등)	해운항만청장은 예선업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예선의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제33조 (과징금처분)	해운항만청장은 사업정지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당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 음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제59조 (법령위반등에 대한 감독처분)	관리청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와 이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조례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조례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항만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기타 조치
		제60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항만의 상황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항만공사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는 자 처분취소, 변경, 항만공사중지, 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원상회복

● 해운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6조의2 (청문)	해운항만청장은 처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1조 (면허의 취소등)	청장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면허, 허가 또는 인가에 불인 조건에 위반한 때 또는 선박안전법 등의 관련규정에 위반한 때 면허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6조의2 (청문)	해운항만청장은 처분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38조 (등록의 취소등)	청장은 해운중개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당해 사업의 실적이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제42조 (자격취소)	청장은 해무사 또는 해기관리사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결격사유에 해당한 때,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

● 艀시어선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청문절차)	1. 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선박직원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청문에정일 15일전까지 사유와 일시 및 장소를 당해 해기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후 공고, 당해 해기사외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도 의견진술가능. 공고된 청문일부터 15일 지나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청문을 행하지 않고 당해 처분 가능		

● 수로업무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조 (청문의 절차)	의견진술을 주고자 하는 경우 10일전 서면으로 통지. 지정된 날 출석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한 경우 공무원 그 요지서면 작성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 통지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때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수산물검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조 (청문)	1.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 작성해 출석자 확인 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수산업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4조 (청문)	1.청문 7일전까지 통지 2.당사자·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해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68조 (청문절차)	1.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진술자확인 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어선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절차)	1.청문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서면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어항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3조 (청문절차)	1.청문에정일 10일전까지 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진술자 확인후 서명날인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의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뜻 명시		

● 항로표지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관계인의 의견청문)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인에게 하는 청문의 기일과 장소통지는 서면으로 하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기일과 장소, 명령하고자 하는 대상인 물건의 표시, 명령하고자 하는 조치의 요지, 명령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통지는 의견듣고자 하는 날 1주일전 행하여야 함.		

● 항만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8조의2 (청문의 절차)	청문에정일 7일전 처분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서면처분사유, 청문일시, 장소 등 통지, 지정될 일시에 출석의견진술, 서면의견제출, 출석진술한 때 공무원 내용 서면작성한 자로 확인케 한 후 서명 또는 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 뜻 명시		

● 해운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의2 (청문의 절차)	의견진술기회를 주는 경우 10일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이 확인후 서명날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함.		

●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우수사업장인정등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우수사업장 인정을 받은 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의견진술예정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통지받은 상대방은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 후 서명날인.	제8조 (우수사업장 인정의 취소등)	장관은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자가 법령의 기준에 의해 제조. 정비규정에 대한 승인이 실효 또는 취소될 때, 우수사업장의 인정을 받은 법인이 해산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등인 경우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함.
		제11조 (제조. 정비규정의 실효와 취소)제2항	장관은 제조. 정비규정의 변경지시를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제조. 정비규정을 변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 정비기준에 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7조의2 (청문)	장관은 처분시 당해 사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의견진술 예정일 1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통지받은 사업자는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제출 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 확인후 서명날인.	제7조 (형식승인의 취소등) 제1항	장관은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때, 형식이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인 경우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 선박직원법시행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 (청문의 통지)	시행령 제21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통지 서식규정		

● 어선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9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청문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상대방이 청문에 응한 경우 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서면 작성하여 확인 후 서명날인	제8조 (검사원에 대한 감독)	장관은 검사원 또는 견습검사원이 그 직무수행에 있어 법령 또는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어선협회에 대하여 당해 검사원 또는 견습검사원을 해임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어선또는어선용품의우수사업장지정등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청문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통지받은 상대방은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상대방의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10조 (우수사업장 지정의 취소등)	장관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건조규정, 제조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거나 그에 위반하여 건조, 제조 또는 변경한 때 등인 경우 우수사업장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어선용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2조 (청문)	장관은 처분시 청문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청문에 관하여 통지. 상대방은 지정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제출 가능. 관계공무원은 상대방의 제출된 의견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7조 (형식승인의 취소등)	장관은 어선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을 얻은 형식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어선용품을 제조, 판매한 때, 형식승인을 얻은 당해 어선용품의 검정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 등인 경우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17) 科學技術處

과학기술처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5건, 대통령령 5건 등 10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과학관육성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7조 (과학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등)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의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시정 및 정관 명령) 제2항	시정명령을 받은 등록 과학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과학관의 停館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 (등록의 취소)	등록과학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 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호에 해당된 때에는 그렇지 아니함.

● 기상업무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8조 (청문)	기상청장은 처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0조 (허가의 취소)	청장은 예보사업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등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명령가능
		제24조 (기상정보지원기관의 지정등) 제3항	청장은 기상정보지원기관이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시정명령가능. 3회 이상의 시정명령지시 어긴 경우 취소가능

● 기술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9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으로 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12조 (등록취소)	사무소등록 기술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기술사사무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13조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10조 (입주승인의 취소) 제1항	주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의 설치 또는 건축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원자력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4조의3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처분이 지역주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사선 장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상대방·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17조 (건설허가의 취소등)	발전용 원자로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 (운영허가의 취소등)	발전용 원자력 운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받은 건설공사를 개시하지 아니할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35조 (건설, 운영등 허가의 취소등)	연구용 원자로 등 설치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내에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04조의3 (청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해 처분이 지역주민에 직접 영향을 주는 방사선 장애가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상대방.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함.	제40조 (생산업허가의 취소등)	생산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
		제42조의6 (성능검증업 허가의 취소등)	성능검증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6조 (허가 등의 취소등)	연료주기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0조 (사용 또는 소지허가의 취소등)	핵연료물질사용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68조 (사용 또는 판매사업허가의 취소등)	방사선동위원소 사용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받아야 할 사항을 허가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79조 (폐기업허가의 취소등)	폐기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받은 사업을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0조의7 (판독업허가의 취소등)	판독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 허가를 받은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허가받은 업무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등에는 그 승인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3조 (면허의취소등)	면허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등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 과학관육성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절차)	1. 청문일 10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사유, 일시, 장소 등을 통지해야 함.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하게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기회를 포기한다는 뜻 명시		

●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제26조 (청문)	1.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어야함.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청문 7일전까지 통지 3.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제출 가능 4.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해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 5. 응하지 않을 경우 진술기회 포기 뜻 간주	제13조 (국산신기술 제품지원 조치의 취소)	국산신기술제품에 대한 지원을 받는 자가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공장건설 또는 제품생산을 하지 않거나 법 제8조의2제3항에 의한 국산신기술제품의 성능, 품질보장에 필요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 국산신기술제품의 지원조치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장은 과기처장관과 협의 해야 한다.

● 기술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8조 (청문)	1. 청문일 7일전까지 통지 2. 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 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해야 함. 4.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 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절차)	1.청문일 7일전까지 서면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케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은 경우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원자력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336조 (청문의 절차)	1.청문시 청문일 7일전에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요지를 작성하여 출석자 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 진술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18) 公報處

공보처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2건, 대통령령 2건, 총리령·부령 1건 등 5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	공보처장관이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발행인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발행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2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제1항	장관은 정간물등록을 한 자가 이미 등록된 사항을 등록변경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여 그 정간물을 발행한 경우 등인 경우 3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정간물의 발행을 명할 수 있음.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3조 (청문)	공보처장관이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발행인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발행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2조 (등록취소의 심판청구등) 제2항	장관은 정간물을 등록한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때, 정간물의 내용이 등록된 발행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행한 때 등인 경우 6월 이하의 발행정지를 명하거나 법원에 정간물의 등록취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제12조의2 (직권등록취소)	장관은 정간물을 등록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후 1년이내에 당해 정간물을 발행하지 아니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당해 정간물의 발행을 중단한 때에는 당해 정간물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종합유선방송법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50조 (청문)	공보처장관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재허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유선방송국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유효기간 만료후에도 운영하고자 할 때는 재허가를 받아야 함 2. 재허가는 허가조건을 성실이 이행했는지 여부 등을 심사해야 함. 3. 재허가가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야 한다. 4. 재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관계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함.
		제21조 (허가의 취소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선방송국이 각호의1 해당시 허가취소. 3월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2. 프로그램공급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허가취소. 3월이내의 업무정지 명할 수 있음. 3. 전송망사업자가 각호의1에 해당시 지정취소. 3월이내의 업무정지 명할 수 있음 6.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업무정지 같음해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제32조 (지사 등의 설치) 제3항	공보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 받은 지사 또는 지국이 다음 각호의 1(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았을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등)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5조 (청문의 절차)	장관등은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7일 전에 대상간행물의 발행인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 상대방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못하는 경우 지정일전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지정일 변경요청가능. 진술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야 함. 정당한 사유없이 포기하는 경우 이를 명시.		

●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45조 (청문절차)	1.청문 7일전까지 처분상대방, 대리인에게 통지 2.처분상대방, 대리인은 출석진술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3.관계공무원은 진술내용을 작성하여 출석자확인후 서명날인토록 해야 함. 4.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진술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 공보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0조의2 (청문)	장관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청문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12조 (임원취임의 승인 및 취소) 제2항	장관은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등인 경우 취임승인을 받은 임원의 취임을 승인할 수 있음.
		제20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1항	장관은 법인이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2년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등인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19) 國家報勳處

국가보훈처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건이다.

이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국가보훈처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21조 (청문)	처장은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청문일 7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해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할 경우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12조 (임원취임 인가등) 제3항	처장은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이 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등인 경우 임원의 취임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20조 (설립허가의 취소)	처장은 법인이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규정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0) 公正去來委員會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령가운데서 청문절차를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1건이다.

이 법령이 규정하는 청문절차를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 공정거래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칙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	위원회는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청문시 7일전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지정된 날에 출석한 상대방은 의견제출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10조 (임원취임의 승인 및 취소)	위원회는 민법. 이 규칙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감독관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위반한 때,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으로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등인 경우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제17조 (청문)	위원회는 처분시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청문시 7일전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지정된 날에 출석한 상대방은 의견제출 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후 서명날인. 서면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의견진술의 기회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16조 (설립허가의 취소)	위원회는 법인이 설립목적외의 사업을한 때,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등인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2. 公聽會

현행 개별법령 가운데서 「공청회」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8건, 대통령령 30건, 총리령·부령 3건 등 모두 40건에 달한다. 이들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공청회 절차관련 규정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재정경제원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관세법 시행령	제4조의8 (이해관계인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	재경원장관 또는 무역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거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음.		
기업활동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6조 (공청회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출석하고자 하는 자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지를 제출하여야 함. 위원회는 참석자 및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여 의안을 심의하여야 함.		

외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관계기관등과의협조) 제3항	단장은 기획단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		

교육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중앙교육 심의회규정	제11조 (의견의 청취)	심의회는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농림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시행령	제36조 (공청회등 주민의 의견 청취)	시장·군수가 정주생활권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장소 등을 개최 14일전까지 공고하여 열람시켜야 함.		
농지법시행령	제16조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시장등은 농지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 14일전까지 일시·장소 등 필요사항을 공고하고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협동조합발전 기획단의설치및 운영에관한규정	제5조 (여론의 수렴)	기획단은 평가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음		
농어촌발전특별 조치법시행규칙	제38조 (농어촌발전기 본방침 등의 수립)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도계획 또는 시·군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관련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통상산업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산업표준화법	제8조 (공청회)	공업진흥청장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이해관계자는 서면으로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도 인정되면 지체없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공업발전법 시행령	제29조 (공청 및 청문)	공업발전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청문할 수 있음. 공청 또는 청문을 하는 경우 5일전까지 관계자들에게 일시·장소 등을 공고하거나 통지하여야 함. 참가자들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7조의2 (산업 피해 조사의 실시) 제3항	이해관계인은 의견의 진술이나 상반된 이해관계인과의 협의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역위원회에 공청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무역위의 요청에 의하여 공청회에 참석하는 증인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		
산업정책 심의회규정	제8조 (공청 및 청문)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공청 또는 청문을 개최하는 경우 개최 5일전에 참석자들에게 그 일시·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함.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0조 (공청회)	공진청장은 산업표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공청회를 하는 경우 10일전까지 일시·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함. 공청회는 공진청장이 주재함. 출석하여 발언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요지를 공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환경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주민의 의견수렴)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는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지역안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이 경우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 (공청회의 개최등)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민 30인 이상이 제출한 때,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를 의미(이하는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령과 유사한 공청회절차 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실천계획의 수립등) 제2항	시·도지사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보건복지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사회보장기본법	제21조 (공청회)	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발전방향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국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장애인복지대책 위원회규정	제9조 (공청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노동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노사관계개혁 위원회규정	제11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및 방송토론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건축법	제62조 (도시설계의 작성)	도시설계를 작성한 자는 작성후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교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주민 등의 청취)	시장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타당성있는 의견은 계획수립에 반영하여야 함. 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자치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제10조의2 (도시기본 계획의수립)	시·도지사는 20년을 단위로 하여 장기 도시개발의 방향 및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도시재개발법	제3조 (재개발기본 계획의 수립)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0조 (공청회)	시·도지사 등은 종합계획 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공청회의 개최 기타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함.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도시설계의 변경)	도시설계작성자는 확정된 도시설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 청취등)	시장 등은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간신문에 14일전까지 일시, 장소등 필요사항을 공고하여야 함.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코자 하는 자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요지를 제출하여야 함. 공청회는 시장 등 또는 시장 등이 지명하는 자가 주재함.		
지역균형 개발및지방 중소기업 육성에관한 법률시행령	제5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5항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광역개발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14일전까지 일간신문에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함. 이해관계인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가능.		
건축법 시행규칙	제37조 (도시설계작 성 세부기준) 제2항	도시설계작성자는 도서를 작성하여 30일간 주민의 공람 또는 공청회를 거쳐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총무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공무원인사 정책심의회 규정	제9조 (의견청취등)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공청회, 토론회등을 개최할 수 있음		
국가경쟁력 강화기획단 규정	제7조 (여론의수렴)	기획단은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		
세계화추진 위원회규정	제10조 (관계 기관등에의 협조요청등)	위원회 또는 기획단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		
정책기획 위원회규정	제11조 (공청회등의 개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토론회 등의 개최를 통해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지방자치제도 발전위원회 규정	제9조 (관계 기관등에의 협조요청등)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개최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 관한규정	제38조 (통상산업 부소관)제3항	통상산업부장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공청회의 개최에 관한 권한을 국립기술품질원장에게 위임함		
행정규제완화 위원회규정	제6조 (공청회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5일전에 참석자·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등에게 그 일시, 장소 및 주요내용 등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함		
행정쇄신 위원회규정	제12조 (여론의수집)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와 방송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		

과학기술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추진및시설조달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 (지원사업 계획)	과기처장관은 지원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장기계획 및 연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시설주변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과학기술자문회의규정	제9조 (공청회)	자문회의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시행령	제6조 (공청회등)	자문회의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과학기술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회의에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추진및시설주변지역의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	과기처장관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일시·장소·공청사항·발언자의 범위, 발언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기타 필요사항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2 이상의 지방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 구체적인 절차 규정. 지원사업계획에 대한 공청회 역시 이를 준용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추진위원회규정	제13조 (여론의 수렴)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제29조 (공청회등)	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폐기물처리시설설치추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임지타당성 조사의공개) 제5항	임지선정위원회는 지역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3. 意見聽取

현행 개별법령 가운데서 「의견청취」라는 용어로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21건, 대통령령 36건, 총리령·부령 4건 등 모두 61건에 달한다. 「의견청취」라는 용어는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청문」, 「공청회」를 모두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서 사용되므로 이 용어를 사용한 아래의 개별법령은 모두 정비대상 법령에 해당된다. 이들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관련 규정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재정경제원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7조 (이의신청)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그 내용, 결정의 취소, 반환 명령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41조 (법령위반등에대한처분) 제2항	주무관청은 처분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 미리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4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주무관청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지정·승인 등을 받은 경우 등인 경우에 이법에 의한 명령에 의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이전·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 가능
			제42조 (공익을 위한 처분)	주무관청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상황변경이나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인 경우 제41조와 같은 처분 가능
주세법	제18조의2 (불이익 처분시의 의견청취)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5조의2제5항·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함.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들어야 함.	제5조의2 (주조사) 제5항	국세청장은 주조사가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주류의 제조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법 또는 식품위생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제15조 (주류의 제조·출고의정지)	주류제조자가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주세를 포탈한 때, 이법의 규정에 의한 주류규격에 위반된 주류를 제조하였을 때 등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의 제조 또는 출고의정지처분을 하여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주세법	제18조의2 (불이익 처분시의 의견청취)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5조의2제5항, 제15조 내지 제18조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들어야 함.	제16조 (주류제조 면허취소)	주류제조자가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기준미달의 보완명령을 위반한 경우, 2주조 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인 경우 그 주류제조장의 각종 주류제조의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제17조 (밀술, 술덧의 제조면허 취소, 제조 또는판매의 정지)	밀술, 술덧의 제조자가 이법에 위반하여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2주조 연도 이상 계속하여 제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등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제조 또는 판매의 정지처분을 하여야 함.
			제18조(주류 판매정지또는 면허취소)	주류의 판매업자가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등인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판매업을 정지처분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경제과학심 의회의운영 규정	제6조 (사무국장의 참석발언등)	심의회의의 의장은 위원이 아닌 경제과학관계 연구단체의 장 기타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보험업법 시행령	제7조 (의견의 청취)	보험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기타 관계인을 초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세무대학의 운영에관한 규정	제21조 (연구활동)	연구소는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에게 과제를 위탁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시·도경제 협의회규정	제18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등 임직원 기타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예산자문위원회 규정	제1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예산회계제도심의회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 (의견의 청취)	경영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투자기관의 임·직원 기타 관계인의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통계위원회 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지정기관의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통일원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의견의 청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외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재외국민정책심의위원회 규정	제8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재외국민에 관한 사항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내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소하천정비법	제11조 (주민의 의견청취등)	관리청은 소하천의 지정 및 정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전문가 및 당해 지역의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함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0조 (주민의견의 청취등)	관리청이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또는 열람시켜야 함		

법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파산법	제324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법원은 파산폐지의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조건의 구비여부에 관하여 파산자, 파산관재인 및 이의를 신청한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345조 (의견의 청취)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파산자 및 이의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353조 (의견청취)	법원은 면책취소의 재판을 하기 전에 파산자 및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국방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정보상 심의회규정	제5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군무회의 규칙	제4조 (의견청취)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교육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교원징계처분 등의재심에 관한규정	제13조 (청구인등의 진술)	재심위원회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 재심위원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함.		
중앙교육 심의회규정	제11조 (의견의청취)	중앙교육심의회는 안전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특수교육 진흥법시행령	제20조 (재심의청구)	특수교육심의회는 출석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함.		

문화체육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2조 (의견의 청취)	관광숙박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 등록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인 또는 안전·소방 등에 대한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관계자의 의견청취)	위원회와 각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기타의 자를 회의에 출석케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농림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농어촌정비법	제8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낙농진흥법 시행령	제3조 (의견의 청취)	농림부장관은 분쟁을 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신청인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26조 (조정)	농림부장관은 토지소유자와 낙농자간의 조정신청을 심의·조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 (주민의견 청취생략)	단순한 기술적인 사항 등 경미한 사항의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음		
농업정책심의회규정	제7조 (의견의 청취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또는 농업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축산법시행령	제7조 (의견의 청취)	축산발전심의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통산산업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공업발전법	제21조 (공업발전심의회의 설치)	심의회는 민간의 의견청취 등 그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별 민간협의회를 둘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광업법	제72조 (의견청취)	장관은 제71조(재결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광업권자 및 광업권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게 통지를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함.	제71조 (재결신청)	지정광구의 광업권양도 명령 등에 따라 광업권을 양수할 자 또는 조광권을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는 장관에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음.
부정경쟁 방지법	제9조 (의견청취)	특허청장은 위반행위의 시정 권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어, 타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부정경쟁 방지법 시행령	제9조 (의견청취의 절차)	특허청장은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청일 7일 전까지 상대방, 이해관계인, 참고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현행법령상의 청문절차와 동일)		
철강공업 심의회 규정	제6조 (의견청취)	철강공업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함		
항공우주 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수당)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의 위원중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출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변리사법 시행규칙	제18조 (의견청취 절차)	특허청장은 7일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지정일에 출석하여 의견제출 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	영17조 (등록말소)	특허청장은 폐업신고를 한 때, 사망한 때, 변리사회에서 제명당하거나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변호사자격이 상실된 때 등인 경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정보통신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전기통신 공사업법	제17조의3 (조정외 신청등)	전기통신공사업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 의심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 쟁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 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후천성면역 결핍증예방법	제18조 (의견청취)	보호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 한 경우 관계공무원, 당해 감염자 기 타 관계인에게 출석을 요청하고 그 의 견을 청취할 수 있음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시행령	제15조 (의견의청취)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는 필요한 경 우 분야별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노동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최저임금법	제18조 (의견청취)	최저임금심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근로 자와 기타 관계인의 의견을 청 취할 수 있으며,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고용정책기 본법시행령	제8조 (협조요청)	고용정책심의회는 안전의심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 을 청취할 수 있음.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유해성 조사보고서 에 관하여 공단 기타 관계자의 의견 을 들을 수 있음		

건설교통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공익을 위한 점용허가의 취소) 제1항	철도청장은 점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미리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함	제31조 (공익을 위한 점용허가의 취소) 제2항	철도청장은 점용허가 된 철도재산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여야 할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도선법	제16조 (의견의 청취)	도선안전심의회는 그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도시계획법	제16조의2 (주민등의 의견청취)	시장 등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시장 등은 도시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임시조치법	제6조 (주거환경개선계획의 수립등)	시장 등이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 등은 산업입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이 타당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8조의2 (광역시설 계획의 수립)	지역시설계획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 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확정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지역균형 개발및중소기 업육성에관한 법률	제13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촉진지구를 지 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 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함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의견청취등)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필 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 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38조의5 (건설공사의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발주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주민·이해 당사자 및 관계기관 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그 의견 이 타당한 경우 이를 기본계획에 반 영하여야 함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등)	도시계획의 결정을 할 경우 관계지방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 열 거		
	제14조의2 (공청회 및 주민의 의견청취등)	시장·군수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 하여야 함.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7조 (의견의 청취등)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위 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 우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시행령	제6조 (의견의 청취의 예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시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을 요하는 처분 등 열거함		
사회간접자본 시설추진 위원회규정	제6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 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 음		
수도법시행령	제23조의5 (의견의 청취)	수돗물의 안전성 진단위원회는 그 심 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인을 출석케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 (의견의 청취)	건설기계형식심의회는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 을 수 있음		

해양수산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어항법	제8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리청은 시설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어항정책심의회 심의에 앞서 미리 당해 지역의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어항법시행령	제7조 (의견의 청취등)	어항정책심의회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12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관리청이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해당시, 군, 구청장은 지역주민, 이해관계인 및 수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		

총무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소청절차 규정	제10조 (진술권)	소청심사위원회는 출석한 소청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야 함. 출석한 소청 당사자는 서면에 의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정책자문 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정부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함		

공보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정부간행물 조정심의위원회규정	제7조 (의견청취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등)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의 청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		

4. 意見陳述

현행 개별법령 가운데서 「의견진술」이라는 용어로 의견청취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법률 37건, 대통령령 19건, 총리령·부령 22건 등 모두 78건에 달한다. 「의견진술」절차가 과연 행정절차법상의 간소화된 의견진술의 요건에 부합하는가, 아니면 청문절차가 요구되는 경우를 의견진술로 간소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들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관련 규정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재정경제원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단기금융 업법	제17조 제3항 (인가의 취소등)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7조 제2항 (인가의 취소등)	단기금융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재산상태나 경영이 건전하지 못하여 공익을 해할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전부나 일부 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사항 명하거나 영업의 인가를 취소
선물 거래법	제83조 제5항 (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미리 상대방·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필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들어야 함.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줄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83조 제1항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 받거나, 설립등기 후 2년 이내에 선물시장 개설하지 않거나,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계속 업무하거나 정지명령 2회 이상 받은 경우의 거래소에 대한 설립허가 취소
			제83조 제2항	제5조(업무)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소가 영리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한 경우 당해 거래소에 대한 1년이내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정지 제9조(정관)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소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당해 거래소에 1년 이내에 업무전부 또는 일부정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선물 거래법	제83조 제5항 (거래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미리 상대방·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필 요시 이해관계인의 의견 들어야 함.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 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줄 수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83조 제2항	제24조(업무규정)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정 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래소에 1년 이내 업무전 부 또는 일부정지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 탁계약준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재 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거래소에 대한 1년 이내의 업무전부 또는 일부정지
				명령이나 거래소의 정관. 업무규정. 수탁계약준칙 기타 업무에 관한 규 정에 위반한 당해 회원에 대하여 필 요한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정당한 이유없이 선물거래를 할 수 있게 된 날부터 1년 이내 선물거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선물거래품목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하여 선물거래를 중지한 경 우 1년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제83조 제3항	거래소의 행위 또는 개설하는 선물 시장에 있어서 선물거래의 상황이 공익 또는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정지
				부정한 방법으로 임직원이 된 자가 있는 것을 안 경우 또는 임직원이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거래소에 대하여 사유를 제시 하고 당해 임직원의 직무 집행정지 또는 해임명령 거래소에서의 공정거래유지나 위탁 자 및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래소로 하여금 정관. 업무규정 또는 수탁계 약준칙 등의 변경명령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p>선물거래법</p>	<p>제84조 제4항 (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p>	<p>제83조 준용</p>	<p>제84조 제1항</p>	<p>제37조(허가)의 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을 영위 하고자 하는 자 법인으로서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 해외에서 선물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별도허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업하기 위해 지점 기타 영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취소</p>
				<p>제38조(금융기관의 물거래업 경영)에 의한 금융기관의 선물거래품목별 경영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취소</p>
				<p>제52조(허가)에 의한 선물투자기금업허가, 해외선물투자기금업허가, 외국법인의 국내영업 위한 지점 기타 영업소 설치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취소</p>
				<p>제53조(금융기관 등의 선물투자기금업 경영)에 의한 금융기관이 선물투자기금업경영허가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허가취소</p>
				<p>제39조(허가기준)에 위반한 경우 허가취소</p>
				<p>제41조(영업의 변경등)에 의한 합병또는 해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폐지 및 양도, 양수 및 허가내용 변경시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허가취소</p>
				<p>업무정지명령에 위반하여 계속 업무를 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2회 이상받은 경우 허가취소</p>
				<p>명령에 위반하여 선물업자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허가취소</p>
<p>제38조(금융기관의 선물거래업 경영)에 의한 선물거래 등에 관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전부 또는 일부정지</p>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선물거래법	제84조제4항 (선물업자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제83조 준용	제84조 제2항	<p>제43조(거래위험의 사전통지등), 제44조(자기계약의 금지), 제45조(부당권유 행위 등의 금지), 제46조(업무에 관한 서류), 제47조(사업보고서의 제출), 제48조(임직원의 거래제한등) 제49조(선물거래 등의 수탁 등에 관련된 재산관리 및 회계처리), 제50조(책임준비금)의 규정위반한 1년 이내 업무정지</p> <p>제51조(해외선물거래)에 의한 해외선물거래하고자 하는 자 선물거래업자에게 위탁하여 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전부 또는 일부정지</p> <p>제53조(금융기관 등의 선물투자기금업 경영)에 의한 투자기금의 조성 및 운용업무에 관하여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계리토록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전부 또는 일부정지</p> <p>제55조(선물투자약관의 승인), 제56조(기금의 운용), 제57조(기금의 평가), 제58조(업무의 제한), 제59조(불공정 행위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1년 이내 업무전부 또는 일부정지</p> <p>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비추어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어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 업무전부 또는 일부정지</p> <p>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물투자기금업자로 하여금 선물투자 약관 변경명령</p> <p>부정한 방법으로 임직원이 된 자가 있는 것을 안 경우, 선물업자임직원이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에는 임직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임명령</p>
	제85조제2항 (협회에 대한 감독상의 처분)		제85조 제1항	<p>재경원장관은 공익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회에 대하여 정관의 변경, 업무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p> <p>재경원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소의 임직원이 된 자가 있는 것을 안 경우 또는 거래소 임직원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사실을 안 경우 당해임직원의 직무집행정지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음</p>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소비자보호법	제52조의2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업자는 당해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제13조 (시험, 검사 시설의 설치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비자나 소비자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때 검사기관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조사의뢰하여 시험 등 실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사업자는 당해 행정기관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음	제17조의3, 제17조의4, 제17조의5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명령, 제조·수입·판매금지,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물품 및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법 위반사실의 공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44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10일전까지 사업자, 이해관계인, 대리인에 서면통지,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시는 기회포기로 본다는 뜻 명시, 지정된날 출석진술하거나 서면의견제출 가능, 출석진술시 관계 공무원 그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일원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남북교류협력법시행령	제33조 (취소절차)	30일전 취소의 사유 기재한 문서 협력사업자에 통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통지받은 협력사업자는 승인취소에 대한 의견진술 가능	제32조 (협력사업자 승인의 취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협력사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나 제30조의 규정에 미달하게 되거나 변경승인을 얻지 않고 승인을 얻은 사업외의 사업을 북한주민과 공동으로 행하는 등의 경우 통일원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승인취소

외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외무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5조 (설립허가의 취소)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하여야 함	제15조 (설립허가의 취소)	외무부장관은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허가취소

내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농어촌 도로 정비법	제25조 제2항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5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부당한 수단으로 허가·승인을 받은 자는 허가취소, 승인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소하천 정비법	제17조 제2항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7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이 법 및 이 법에 의한 명령위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취득,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 인가 기타 처분받지 못하거나 받은 후 취소, 효력실효되어 이 법에 의한 허가 불필요한 경우, 허가에 관계되는 공사 기타의 행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폐지된 경우 허가취소, 공작물 또는 물건이전 제거 필요한 조치
			제18조 (공익을 위한 처분)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등인 경우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분의 취소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용역경비법	제12조 (행정처분) 제4항	허가관청은 처분을 하는 경우 미리 용역경비업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2조 제1항, 제2항	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허가관청은 용역경비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등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자연 공원법	제39조 제2항 (법령위반 등에 대한처분)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상대방 등이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9조 제1항	공원관리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음.
			제39조 제1항	공원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을 정지 또는 변경하게 할 수 있음.
			제40조 (공익을 위한 처분)	공원관리청은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원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자연공원 법시행령	제25조의2 (의견진술등)	공원관리청은 7일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서면통지. 상대방은 출석하여 의견제출 가능.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은 확인후 서명날인. 서면통지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는 뜻 명시		
내무부및 경찰청소 관비영리 법인의설 립및감독 에관한규 칙	제14조제2항 (설립허가의 취소)	취지 및 이유 당해 법인에 문서로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 주어야 함	제14조 제1항 (설립허가의 취소)	내무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법인이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설립허가취소

법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출입국 관리법	제45조 제2항 (등록취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외국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이 경우 주무관청은 등록취소 사유, 출석일시, 장소 출석일 7일전 까지 통지	제45조제1 항 (등록취소)	외국단체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된 활동목적의 범위의외의 활동을 하는 등의 경우 등록 취소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제55조 (의견진술 절차)	통지는 서면으로 함. 통지를받은 대표자는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음. 외국단체의 대표자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 관계 공무원은 서면으로 요지를 작성하여 진술한 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하여야 함.		

국방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국방부및병 무청소관비 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 에관한규칙	제15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2항, 제3항	장관 또는 청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소재불명으로 통지가 불가능 할 경우 관보에 게재 함	제15조 제1항	장관 또는 청장은 법인이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설립허가에 불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인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교육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국외유학에 관한규정	제16조 (유학인정의 취소) 제2항	장관 등은 유학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봄.	제16조 제1항	장관 등은 유학인정을 받은 자가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유학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유학하는 국가로부터 강제출국을 당하는 경우 등인 경우 유학인정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교육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8조 제2항 (설립허가의 취소)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써 통지하며, 의견진술기회 부여	제18조 제1항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 업무개시 아니하는 등의 경우 설립허가 취소

문화체육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저작권법 시행령	제8조 (의견진술)	저작물이용의 승인 신청받은 경우 당해 저작재산권자 또는 대리인에 7일 이상 30일 이내 정하여 의견진술기회 부여, 다만 이용신청의 경우 60일의 기간 정하여 신청내용 관보공고, 절차에 관하여는 제31조 (청문절차) 준용	제7조 (저작물 이용의 승인신청)	지적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이나 공표된 저작물의 방송을 하고자 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용승인 신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문화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설립허가의 취소)	취지 및 그 이유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부여	제20조 제1항 (설립허가의 취소)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

농림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5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처분) 제1항	이법 또는 이법 명령처분 위반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받은 경우 허가, 승인의 취소, 물건의 이전,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식물방역법	제29조 (이의신청) 제2항	농림부장관 등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지 후 신청인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해 신청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축산물위생처리법	제18조 (작업장설치허가의 취소등) 제4항	장관 등은 처분을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8조 (작업장설치허가의 취소등) 제1항	도지사는 작업장이 설치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작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8조 (작업장설치허가의 취소등) 제2항	도지사는 작업장에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작업장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작업장의 위치 또는 시설의 변경이나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음.

통상산업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전기공사업법	제34조 (의견진술)	장관은 제29조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이나 제31조에 의한 면허취소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제29조 (시공 및 영업을 정지처분)	장관은 법령에 의한 지시 또는 정지처분에 위반한 때 등인 경우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음
			제31조 (공사업의 면허의 취소)	장관은 공사업자가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공사실적이 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인 경우 그 공사업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열의공급 명령에 의하여 열을 공급하는 경우 요금등)	통상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후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상공자원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예속하는비영리법인에관한규칙	제16조제2항(설립허가의취소)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 통지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하여야 함	제16조 제1항(설립허가의취소)	주무관청은 법인이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등의 경우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 취소

정보통신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전기통신사업법	제35조(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명령 및 재정신청)	통신위는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제67조(실비보상, 손해배상의 절차 및 재정신청)제3항	통신위는 재정신청을 수리한 때에는 그 취지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채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정통부장관은 수탁자가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미달된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 가능.
전파법	제67조(무선국의 허가취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설자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67조(무선국의 허가취소등)제2,3,4항	시설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통신방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 6월이내 무선국 운용정지, 무선국운용허가 기간과 주파수 또는 공중선전력의 제한명령, 비상사태발생시, 혼선방지상 필요시의 경우 무선국허가취소, 설비의 변경, 운용의 제한, 정지,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운용휴지하는 등의 경우 허가취소
	제67조의2(과징금부과)제3항	제67조제6항 준용	제67조의2(과징금부과)	무선국의 운용정지 또는 주파수 등의 제한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 또는 제한이 당해 무선국의 이 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 부과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전파법	제67조의3 (형식검정 또는 형식등록의 취소)제3항	제67조제6항 준용	제67조의3 제1항	장관은 형식검정에 합격한 자 또는 형식등록을 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한 때 등인 경우 그 등록취소가능
	제67조의4 (전자파 적합등록의 취소)	제67조제6항 준용	제67조의4 (전자파 적합등록의 취소)	제67조의3 준용
	제69조 (무선중사 자의기술자 격의 취소등) 제3항	제67조제6항 준용	제69조 (무선중사 의 기술자격의 취소등)	무선중사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무선중사자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수첩을 교부받거나, 수첩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이상 2년이내 업무중사 정지명령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시행령	제9조 (프로그램 사용승인의 취소) 제2항~ 제6항	장관은 프로그램 사용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당사자 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 당사자는 지정일에 출석하여 의견제출가능. 관계공무원은 제출된 의견확인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면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제9조 (프로그램 사용승인의 취소) 제1항	장관은 프로그램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용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정기간내에 보상금을 공탁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프로그램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함.
무선설비 형식검정 및 기술 기준확인 증명규칙	제17조 (의견진술 절차)	미리 기기제작자 또는 수입자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0일전 서면통지. 출석진술 또는 서면의견제출. 출석진술시 관계공무원 요지 서면작성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제16조 (합격의 취소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검정에 합격하거나 합격기기로 계속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없는 등의 경우 합격기 기 형식검정의 합격취소, 신청서 또는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중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형식검정신청인의 신청자격 6월이상 2년이내 부여하지 않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전자과 장해검정 규칙	제33조 (의견진술)	미리 지정 시험기관 또는 장해 검정합격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10 일전통지, 출석 의견진술 또는 서면제출 가능, 출석진술시 공무원 그 요지 서면작성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제23조 (지정의 취소등)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고의과실로 시험업무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지정요건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시험의 신청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 지정시험 기관 6월이내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
			제25조 (합격취소)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해검정에 합격하거나 방지기준 및 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되거나 합격표장부착을 위한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합격기 기 합격취소

환경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 조치법 (미세정 법률)	제21조 (개선명령 등) 제3항	장관 또는 관계 자치단체장은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1조 제2항	행위제한에 위반하거나 이법 또는 이법 명령이나 처분 위반자에게 인·허가취소, 공사중지, 시설의 개선, 이전 및 제거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자연환경 보전법	제26조 (특정야생 동·식물의 보호) 제3항	장관은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미리 당해 처분을 받게 될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변명 및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26조 제2항	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야생물, 식물을 채취, 포획, 이식, 수출, 가공, 유통 또는 보관함에 있어서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하수도법	제37조의2 (의견진술)	공공하수도 관리청은 부령에 따라 당사자 또는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7조 (감독등)	제10,12조 내지 제14,20,24조 해당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받은 경우,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변경, 시행 등 필요조치와 공공하수도 공사시, 보전이나 상황변경으로 부득이 한 경우, 공공 이익사업 위해 허가취소, 공사중지, 변경, 시행 등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 (의견진술의 절차)	의견진술 지정일 10일전까지 의견진술의 사유, 일시, 장소통지, 통지시 불응은 의사 포기한 다는 뜻 명시, 지정된 날 출석 의견진술 또는 서면제출, 출석 의견진술시 공무원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보건복지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보건복지부 소관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5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2항	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제15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1항	장관은 법인이 설립목적외의 사업을한 경우,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인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1조 (요양기관의 지정등) 제4항	법 제33조제1항 지정 취소시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기회 부여, 다만 요양기관 폐업되거나 의료법, 약사법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받거나 개설허가 등록취소 또는 폐쇄명령받은 경우와 주소 불명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렇지 않음	법 제33조 (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제1항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노동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고용 보험법	제83조 (의견진술)	노동부령에 의해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9조제4항 (보험가입자) 제62조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납부의 특례)제3항	노동부장관은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음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거나 직업훈련기준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내 직업훈련계획에 의한 훈련 실시 안한 경우 사업내 직업훈련 계획의 승인취소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고용 보험법	제83조 (의견진술)	노동부령에 의해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기회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46조, 제47조, 제49조 준용규정	제46조 혼련거부 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49조 상병시 상병급여 지급제한
			제48조 (반환명령), 제49조 (상병시의 특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급여지급받은 자에 대한 반환명령과 전자를 준용한 상병시의 급여반환 명령
			제54조 (취직촉진 수당의 지급제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취직촉진수당 지급제한
국가기술 자격법			제12조 (기술자격을 취소등)	주무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등에게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노동쟁의 조정법	제35조 (의견진술)	관계당사자가 지명한 노동위의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나 특별조정위원회는 중재위의 동의를 얻어 의견진술가능		
국가기술 자격법시 행령	제33조의2 (의견진술)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 불명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법 제12조 (기술자격을 취소등) 제2항	기술자격취득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기술자격취소, 기술자격정지
고용보험 법시행규 칙	제115조 (의견진술)	의견진술 예정일 7일전 서면 통지, 출석 의견진술이나 서면 의견제출 가능, 출석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한 후 서명날인		
국가기술 자격법시 행규칙	제24조의3 (의견진술 절차)	영 제33조의2에 의한 의견진술기회 주고자 하는 경우 지정일 10이전 서면통지, 지정된 날 출석진술 또는 서면의견 제출가능, 의견진술한 경우 공무원은 그 요지서면 작성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불응하면 의사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유해·위협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 (지정의 취소) 제2항	장관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리 당해 교육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6조 (지정의 취소) 제1항	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교육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이를 태만히 한 때 등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	--	------------------	--

건설교통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건설기계 관리법	제36조 (의견진술)	대통령령에 따라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제14조제3항 (검사대행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기계를 검사하거나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검사대행업무를 계속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이법 위반벌금 이상형선고받은 경우 지정 취소하거나 6월이내 사업전부 또는 일부 정지명령
			제19조 (형식승인의 취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언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형식승인의 내용과 다르게 건설기계의 제작을 한 때는 형식승인취소
			제23조 (건설기계 사업의 폐쇄조치)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기점검을 하거나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는 건설기계사업자의 사업장 폐쇄명령
			제28조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의 취소, 정지)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받거나 면허효력 정지기간중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성검사기준에 현저히 부적합 한 때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키는 등의 경우에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취소, 1년이내 효력 정지
			제34조 (건설기계의 사용정지)	속도제한을 위반하거나 운행제한을 위반한 때 건설기계의 사용정지명령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건설기술 관리법	제37조의2 (의견진술)	이법에 의한 지정, 등록취소 업무정지 처분하고자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상대방 또는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대여하거나 교육훈련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 발주청으로 하여금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 발주청 시행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수행정지
			제18조의2 (신기술지정의 취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당해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함이 불가능한 경우 지정취소
			제20의4 (설계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발주청이 발주한 설계 등 용역수행한 건설기술자가 업무성실 수행않음으로써 제20조의3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발주청으로 하여금 당해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1년 이내 건설 등 용역업무수행정지
			제26조 (품질시험 대행자 지정의 취소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것이 판명되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품질시험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때 등의 경우 품질시험 대행자 지정취소하거나 6월이내 기간 정하여 영일정지
			제30조 (감리전문 회사의 등록취소등)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나 최근 3년간 5회 이상 업무정지 처분받은 때 등의 경우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불응하거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수행하지 않아 품질시험 실시하지 않거나 품질시험성과 조작한 때 등의 경우 6월이내 업무정지
제33조 (감리원의 업무정지등)	책임감리 성실히 수행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나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때 등의 경우 1년 이내 책임감리 업무정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골재 채취법	제19조제2항 (등록의 취소등)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 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이 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 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제19조 제1항 (등록의 취소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일로부터 2 년 경과한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 우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1년이내 영업을 정지
	제19조제3항 (등록의 취소등) 준용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1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등)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거나 허 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하는 등의 경우 허가취 소, 6월이내 골재채취 중지
교통 안전법			제7조의3 (자격의 취소등)	건교부장관은 교통안전관리 자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 로 취득한 경우등일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국토이용 관리법	제26조 (감독 및 의견진술)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 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 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 함	제26조 (감독 및 의견진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도 지사는 이법 또는 이법 명 령이나 처분 위반하거나 부 정한 수단으로 허가받은 자 에 대하여 허가의 취소 또 는 공사의 중지, 시설, 건 축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
도시 공원법	제23조의2 (의견진술)	건설교통부령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의 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 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0조 (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공원관리청 또는 녹지관리 청은 이 법 또는 이 법 명 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받은 자는 허가취소, 효력정지, 사업의 정지 또 는 변경 기타 필요한 처분
삭도· 케도법	제16조의3 (의견진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대리인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부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의견 들을 수 있음.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6조 (면허의 취소등)	삭도사업자 또는 케도사업 자가 면허 또는 인가의 조 건에 위반하거나 안전운행 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시행 의 인가신청 기간내에 인가 신청하지 않는 등의 경우 6 월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면허취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독) 제2항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조치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함.	제53조 (감독) 제1항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인 때에는 인가, 승인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 가능.
지하수법	제20조 (의견진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8조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지정명령등) 제2항	시·도지사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폐쇄명령
특정 다목적 댐법	제42조의5 (의견진술)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5조 (댐사용권의 양도명령 및 취소의 처분) 제2항	댐사용권을 양도하지 아니할 때는 하수점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한 하수점용권을 타자에게 허가할 뜻을 공고하고 타자가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댐사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취소
			제36조 (건설부장관 의권한) 제1항제2호	하천법 제23,25,45,46조의 허가받은 자 또는 허가 받아야 함에도 받지않은 자에 대한 하천법 제67,68조의 허가취소 기타 처분, 골재채취법 제31조 골재채취허가 취소 또는 골재채취중지와 동법 제33조 원상복구 등의 명령
항공법	제130조 (의견진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3조 (자격증명,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증명, 취소등)	항공종사자가 이법 위반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거나, 직무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신체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항공업무수행에 부적합하거나, 이법 또는 이법 명령에 위반한 경우 자격증명 또는 항공기 승무원 신체검사 증명취소 또는 1년 이내 항공업무 정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항공법	제130조 (의견진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110조 (감독)	공항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공항시설관리에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이 법 또는 이법 명령·처분 위반하거나, 사정변경으로 공항개발사업 계속 시행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시행 및 관리에 관한 허가·승인·지정취소·효력정지·공사중지·공작물·물건개축 변경 이전 제거원상회복 명령
			제129조 (면허의 취소등)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받거나, 이법 또는 이법 명령, 처분 위반하거나 면허, 허가, 인가에 불인 조건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면허·허가·인가 받은 사항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면허취소, 6월이내 사업전부 또는 일부정지
			제142조 (준용규정)	항공기취급업 면허취소, 상업서류 송달업, 항공운송총대리점업 및 도심공항터미널업의 영업소 폐쇄
			제150조 (허가의 취소등)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처분에 위반하거나 허가·인가에 불인 조건에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받은 사항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허가취소, 6월이내 영업정지
해외건설촉진법	제35조 (의견진술)	건설교통부령에 의해 미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9조 (영업의 정지처분)	해외공사의 부실수행 또는 부정행위로 현저하게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해외공사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치 않아 대외적 공신력을 추락시키는 등의 경우 2년이내 영업정지, 허위사실 유포비방 등으로 수주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다른 해외 건설업자 해외공사수행 방해 등의 경우 1년이내 영업정지
			제30조 (해외 건설업의 등록취소)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갱신등록하거나 면허·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해외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해외건설에 관한 중요한 정부시책을 누설하여 국가의 이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의 경우 해외건설업의 등록취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화물유통 추진법	제52조 (의견진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또는 대리인에 의견진술 기회부여,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20조 (등록의 취소등)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이법 또는 이법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제35조 (등록의 취소등)	화물터미널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화물터미널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못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개시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정지
			제46조 (등록의 취소등)	창고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하지 않거나 이법 또는 이법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는 등의 경우 등록취소, 6월이내 사업전부 또는 일부정지
			제48조의 15 (자격의 취소등)	물류관리사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자격취소, 이법 또는 이법 명령이나 처분 위반한 경우 1년이내 자격정지
			제51조 (과징금)	복합운송주선업자, 화물터미널사업자, 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정지명령하여야 하는 경우 사업의 정지가 당해 사업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같음하여 1천만원이하 과징금 부과
건설기계 관리법시 행령	제17조 (의견진술)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 서면통지,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출석의견진술이나 서면 의견제출가능, 출석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한 후의 서명날인		
건설기술 관리법시 행령	제59조의4 (의견진술 의절차)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 서면통지, 통지시 불응하면 의사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지정된 날 출석진술 또는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시 관계공무원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한 후 서명날인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교통 안전법 시행령	제16조의3 (의견진술)	미리 의견진술 기회부여, 필요시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가능, 정당 한 사유없이 불응. 소재불명 등 기회줄 수 없는 경우 그렇지 않 음. 10일전까지 서면통지, 불응 하면 기회포기 간주 명시, 출석 진술.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요 지 작성 확인 후 서명날인	법 제7조의3 (자격의 취소등)	교통안전관리자가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 나, 정신적, 신체적 중대 한 장애로 직무수행에 적 합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 우 자격취소, 이법 또는 이법 명령이나 처분 위반 하거나 교육받지 않은 경 우 등의 경우 1년 이내 자 격정지
국토이용 관리법 시행령	제43조의2 (의견진술 등)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 서면통 지, 통지시 불응은 의사없는 것 으로 본다는 뜻 명시, 지정된 날 출석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제출가 능, 출석진술시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서면 작성확인케 한 후 서명 날인		
삭도· 케도법 시행령	제6조 (의견진술 의절차)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서 면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때는 의견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지정된 날 출석하여 의견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 관계공무원으로 그 요지를 서면 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항공법 시행령	제48조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 서면통 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 니할 경우 기회포기한 것으로 본 다는 뜻 명시, 출석 의견진술하 거나 서면제출가능, 출석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서면 작성 확인케한 후 서명날인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	제20조 (의견진술 의 절차)	의견진술 예정일 10일전까지 당 해 사업자에 서면통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기회포기한다 는 뜻으로 본다는 것 명시, 지정 된 날 출석하여 의견진술, 서면 의견 제출가능, 출석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 요지서면 작성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도시 공원법 시행규 칙	제9조의2 (의견진술의 절차)	의견진술일 7일전 서면통지, 통 지시 불응하면 의사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지정된 날 출석 진술 또는 서면제출 가능, 출석 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 요지서 면작성 확인케한 후 서명날인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일 7일전까지 서면통지, 지정된 일시에 출석진술, 서면 의견제출 가능, 출석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 그 내용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하면 포기로 본다는 뜻 명시		
특정다목적 댐법 시행규칙	제22조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 지정일 10일전 서면통지. 통지시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면 의사가 없는 것으로본다는 뜻 명시,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하거나 서면의견제출, 출석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이 요지 서면작성 확인케 한 후 서명날인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규칙	제22조 (의견진술 절차)	의견진술 지정일 7일전 서면통지, 통지시 불응하면 의사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 명시, 출석진술하거나 서면의견 제출가능, 출석진술의 경우 관계공무원 요지 서면작성 확인하게 한 후 서명날인		

해양수산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항만운송 사업법	제20조 제3항 (검수원등의 금지행위)	지방청장은 제2항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 당해 검수원등에 대하여 미리 기일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함. 당해 검수원등은 그 장소에서 의견진술과 증거제출 가능	제20조 제2항 (검수원등의 금지행위)	지방청장은 검수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검수원 등의 업무를 정지하거나 그 등 록을 취소할 수 있음
어업면허 및어장관 리에관한 규칙	제40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 제3항	해지하기 7일전 당사자에게 의견진술하게 하거나 제출할 기회부여	제40조 (어업권의 행사계약등) 제3항	어촌계 또는 지구별조합이 어업권의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조합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하거나 어업권을 타인으로 하여금 행사하도록 하거나 어장에 입어하는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입어하도록 한 경우 등의 경우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해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위험물선박 운송및저장 규칙	제211조 (지정검사 기관의 지정취소)	해운항만청장은 처분 일30일전까지 사실 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 부여	제211조 (지정검사 기관의 지정 취소) 제1항	지정검사기관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검사대행에 관한 공신력을 상실하거나 검사대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정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검사대행의 정지명령

과학기술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원자력법 시행령	제16조 (의견진술등)	위원회는 그 소관사항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직원 으로 하여금 위원회 등에서 의견 의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음.		

공보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종합유선 방송법	제38조 (위원회의 직무) 제4항	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등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다만, 당사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제38조 (위원회의 직무) 제3항	위원회는 방송내용이 심의기준에 위반될 경우 방송국 또는 프로그램공급자에게 경고, 해명, 사과, 정정, 당해 광고 또는 프로그램의 중단을 명할 수 있음.

법제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공개청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예고 한 법령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청문을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음.		
법제처소관비 영리법인의 설립및감독에 관한규칙	제17조 (설립허가의 취소) 제2항	법제처장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를 당해 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함.	제17조 제1항	법제처장은 법인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법령명	절차조항	절 차 내 용	처분조항	처 분 내 용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52조 (의견진술 기회의부여)	이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납부 명령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기회부여, 행 정절차전 제50조(위반 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 취등), 위원회의 시정조 치의결, 제51조(위반행 위시정권고) 등을 먼저 거침	제5조 (시정조치)	제3조 위반 시장 지배적 사업 자에 대한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 한 조치명령
			제6조 (과징금)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가격인 하 명령 불응시 과징금납부 명령 및 제3조제2호 내지 제 5호 위반하는 남용행위를 한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위반행위 있는 날부터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내 과징금 부과
			제16조 (시정조치)	제7,8,9,10조의2,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 려가 있는 행위가 있는 때에 는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 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처분, 임원의 사임, 영업의 일부양 도, 당해 법 위반 채무보증의 취소, 법 위반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17조 (과징금)	제9,10조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회사에 대 하여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 장부가가격의 100분의 10 범위내 과징금 부과. 제10조 의2제1항 위반한 채무보증 회사에 대하여 당해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100분의 10 범 위내 과징금 부과
			제21조 (시정조치)	제19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때 행위중 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
			제22조 (과징금)	제19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 위의 실행이 있는 날부터 행 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 매출액의 100분의 5 범 위내 과징금 부과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2조 (의견진술 기회의 부여)	이법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납부명령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진술 기회부여. 행정절차전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시정조치 의결, 제51조(위반행위 시정권고) 등을 먼저 거침	제24조 (시정조치)	제23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는 불공정거래행위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정정광고,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24조의2 (과징금)	제23조제1항을 위반하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는 경우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매출액의 100분의2 범위내 과징금 부과
			제27조 (시정조치)	제26조 위반하는 행위가 있는 때는 당해 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28조 (과징금)	제26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경우 위반행위에 참가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제31조 (시정조치)	제29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당해 행위의 중지, 법 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31조의2 (과징금)	제29조를 위반하는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의 기간에 있어 매출액 100분의 2내 과징금 부과
			제34조 (시정조치)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국제계약이 있는 때는 계약의 취소, 계약 내용의 수정,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
			제34조의2 (과징금)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날부터 그 행위가 없어진 날까지 기간에 있어서 매출액의 100분의2 범위내 과징금 부과
제50조 (위반행위의 조사 및 의견청취 등)	법 시행을 위한 당사자, 이해관계인,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청취,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위촉 등, 소속공무원에게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기타 자료물건 조사할 수 있게 하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음.			

5. 意見聽取 根據없는 法令

현행 개별법령 가운데서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는 있으나 아무런 「의견청취」관련 규정을 두지 아니하는 법령은 법률 72건, 대통령령 16건, 총리령·부령 13건 등 모두 101건에 달한다. 국민에 대한 불이익처분을 할 경우 행정청은 의견진술, 청문 등 어떤 방식으로든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불이익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청취의 근거를 두지 아니한 법령은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법령이므로 모두 정비대상 법령에 해당된다. 이들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관련 규정을 도표로 표시한다면 아래와 같다.

재정경제원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관세법			제72조의3 (자율관리 보세구역의 지정등) 제6항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법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77조의4 (지정보세 구역의 취소)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의 감소 기타의 사유로 세관장이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80조 (반입정지등과 특허의 취소) 제2항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설영인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1년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의 정지처분을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국유 재산법			제28조 (사용, 수익 허가의 취소와 철회)	관리청은 행정재산 등의 사용, 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 등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음.
담보부사 채신탁법			제10조 (인가의 취소등)	장관은 신탁업자가 법령, 정관 또는 장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그 업무의 정지 또는 이사의 개선을 명하거나 인가 취소가능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보험업법			제20,147, 150,150조의4, 제205조의2	임원의 해임, 사업의 정지와 허가의 취소, 보험감독원의 보험모집인에 대한 등록취소, 재정원장관의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보험중개인의 허가취소 등, 재정원장관의 보험계리인 및 손해사정인에 대한 감독 등
수입인지에 관한법률			제9조 (판매인 지정의 취소)	장관은 판매인이 수입인지를 부정하게 거래하거나 판매하는데 필요한 자격 또는 신용을 잃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시설대여업법			제17조 (인가의 취소등)	장관은 시설대여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재산상태 또는 경영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등인 경우 인가를 취소하여야 함.
신용협동 조합법			제85조 (업무의 정지등)	장관은 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정지 시키거나, 임원의 경질을 요구할 수 있음.
			제86조 (설립인가의 취소)	장관은 조합이 허위 기타 부실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때 등인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신탁업법			제27조 (처분명령)	장관은 신탁회사의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종류 또는 방법의 변경이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제28조 (처분명령등)	신탁회사가 법령, 정관 또는 장관의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할 행위를 하는 때에는 업무의 정지 또는 이사, 감사의 개입을 명하거나 영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29조 (업무정지 후의 조치)	장관은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신탁회사에 대하여 그 정리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영업초생산 협동조합법			제9조 (감독)	장관은 필요한 감독상의 명령가능. 장관은 조합 및 총회등이 의결한 사항이 위법하다고 인정할 때 의결의 취소나 집행정지 가능. 장관은 조합 등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때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외자 도입법			제18조 (신고수리의 취소등)	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의 목적물을 법정기간내에 도입하지 아니한 때,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이 폐업하거나 계속하여 2년이상 사업활동을 아니한 경우 등인 때에는 그 신고수리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음.
장기신용 은행법			제21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조치)	장관은 장기신용은행이 법령, 정관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때에는 영업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한국 은행법			제116조	금통위는 금융기관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규정, 명령 또는 지시를 계속 위반하여 위법 또는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에는 은감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법 행위 또는 비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국유재산 에매장된 물건의발 굴에관한 규정			제10조 (승인의 취소)	관장기관은 발굴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발굴승인을 얻은 것이 판명될 때, 발굴자가 기한내에 발굴작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당해 발굴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국제도로 면세통과 증서의담 보하에행 하는화물 의국제운 송에관한 관세협약 및콘테이 너에관한 관세협약 의시행에 관한규정			제5조 (보증단체의 승인등) 제6항	관세청장은 보증단체가 운송협약이나 이영 또는 이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보증단체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7조 (콘테이너의 승인단체) 제3항	관세청장은 선급협회가 국제도로운송협약 또는 이 영이나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승인능력이 없거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콘테이너승인 업무를 폐지하거나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제13조 (콘테이너 검사기관의 지정) 제3항	관세청장은 지정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콘테이너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를 한 때 등인 경우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내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기부금품 모집규제법			제11조 (허가의 취소등)	허가권자는 모집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모집된 금품을 기부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할 수 있음.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 (공익을 위한처분)	군수는 도로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등인 때에는 이법에 의한 허가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용역 경비업법		*시행령 제23조 (청문절차) 제5항에 준용규정 있음	제6조의5 (경비지도사 자격의 취소, 정지)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교부받은 때 등인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함. 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경비원의 지도·감독·교육에 있어 고의·중대한 과실로 경비원이 경비대상에게 손해를 입힌 때 등인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음.
자연공원법			제41조 (공익을 위한 개수 명령등)	공원관리청은 구역내의 건축물이 공공의 안녕질서유지와 공원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의 개수를 명하거나 이전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법무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공증인법			제23조 (공증인 보조자)	공증인은 소속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보조자를 두고 직무를 보조케 할수 있음. 위의 인가는 필요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음

국방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군복및군용 장구의단속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허가의 취소등)	장관은 제조,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개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3월 이상 휴업한 때,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음이 발견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킬 수 있음.

교육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사립 학교법			제20조의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관리청은 임원이 이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 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등 인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리청은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 영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당해 사 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 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는 때 수익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47조 (해산명령)	장관은 학교법인이 설립허가조건에 위반 한때,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때 등인 경우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 할수 있음.
유아교육 진흥법			제10조 (폐쇄명령)	인가청은 유아원이 이법 또는 이 법에 의 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폐쇄를 명 할 수 있음.
상급학교 입학학력 인정에관 한학교지 정규칙			제8조 (지정의 취소)	장관은 지정을 받은 학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장관은 지정받은 학교가 학력고사 의 성적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때, 지정시 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학교설립 인가사무 처리규칙			제4조 (시설 등의 확보와 인가신청)	인가기관은 연기기간이 경과하여도 학교 의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문화체육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경륜·경정법			제5조 (경주장의 설치등) 제4항	장관은 경주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경주장의 설치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 음
스카우트활동 육성에관한법 률			제8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문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 트지원단체가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 주관단체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당해 스카우트지원단 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명령 가능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전통사찰 보존법			제6조 (허가사항) 제4항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허가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5조의2 (등록취소)	등록청은 등록한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등인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 관한법률			제7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연맹지원단체가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연맹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향교재산법			제11조 (허가사항) 제2항	장관은 허가를 받은 자가 자의로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거나 허가에 관한 조건이나 지시사항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2조 (우수생산 업체의 지정 등)제2항	장관은 우수업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이 법 및 이 영과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통상산업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 등인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저작권법시행령			제6조(지정 의취소)	장관은 지정된 시설이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업무를 함에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경우 등인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농림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0조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등)	동물검역기관의 장은 사육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낙농진흥법			제11조 (대부취소)	당해 토지에 대한 낙농지대 지정이 해제된 때, 낙농자가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대부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한 때 등인 경우 대부를 취소할 수 있음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6조 (공익을 위한 처분)	군수는 도로의 상황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등인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나 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농산물 검사법			제17조 (검사합격의 취소)	검사소장은 검사에 합격된 농산물이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가함으로써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인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농수산물 수출진흥법			제34조 (지정의 취소등)	장관은 지정생산자, 지정수집, 가공업자 또는 지정수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 이 법에 의한 행정명령에 위반한 경우 등인 경우 이법에 의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농지개량 조합법			제61조 (합병·분할 및 해산의 사유)	장관은 조합이 법령에 규정된 합병, 분할 또는 해산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그 조합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을 명할 수 있음.
			제97조 (결의·선거 등의 취소) 제2항	장관은 조합원 또는 회원의 청구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그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의,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인삼협동조 합법			제8조 (감독) 제2항	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음.
미강착유 장려법 시행령			제7조 (지정의 취소)	장관은 지정을 받은 착유업자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거나 이 영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통상산업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광산 보안법			제14조 (광업의 정지), 제15조 (보안명령)	장관은 광업의 경영으로 위해 또는 광해가 발생하게 하거나 지하자원 또는 시설이 손상되는 등의 경우에 광업권자 등에게 그 광업의 정지명령 가능. 장관은 광업에 사용하는 기구·기계·화약류 등의 취급방법이 이 법에 위반된다고 볼 때 광업권자 등에게 시설사용정지, 개조·수리·이전 등 필요 조치가 가능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광업법			제39조 (공익상 이유에 의한취 소처분등)	장관은 광업이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광업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처분을 하여야 함. 장관은 국가 중요건설사업지 또는 그 인접지역안의 광업권이나 광물의 채굴이 국가 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광구의 감소처분을 할 수 있음.
			제40조 (광업권의 취소)	장관은 광업권자가 채광실적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당해 광업권을 취소하여야 함. 장관은 광업권자가 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계속 1년 이상 사업을 휴지한 때 등인 경우 당해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음.
			제62조 (조광권의 취소)	장관은 조광권자가 채광실적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 당해 조광권을 취소하여야 함. 장관은 조광권자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물을 채굴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상공회의소법			제40조 (통상산업부 장관의 처분)	상공회의소의 의원총회의 의결 또는 임원이나 청산인의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장관은 임원 또는 청산인의 해임, 의원총회의 의결의 취소, 의원총회의 해산, 상공회의소의 사업의 정지의 처분을 할 수 있음.
			제41조 (선거 또는 당선의 취소)	의원선거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장관은 그 선거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음.
수출자유 지역 설치법			제17조 (입주허가의 취소 및 토지 등의 양도)	장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업체가 허가를 받은 후 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당해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때, 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영업 조합법			제8조 (해산명령등)	장관은 조합이 정당한 이유없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임원의 해임 또는 조합의 해산을 명할 수 있음.
전기공사 공제조합 법			제42조 (이사장·이사 또는 감사의 취임승인취소)	장관은 조합의 이사장, 이사 또는 감사가 이법 또는 정관의 규정이나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18조 (해외자원개발사업허가의 취소)	주무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사 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법정자본과 기술능력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32조 (탐사권 및 채취권의 취소)	장관은 탐사권자 및 채취권자가 조광료를 1년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때, 법령규정에 위반하여 채취권의 설정을 출원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탐사권 또는 채취권을 취소할 수 있음.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			제24조 (등록취소)	장관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사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변경등록없이 등록상품의 등록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등인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정보통신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별정우체국법			제15조 (지정의 취소)	장관은 피지정인이 자격을 상실한 때, 법정시설을 갖출 수 없는 때, 법정규정에 위반하여 그 시설을 변경한 때 등인 경우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국제우편규정			제25조 (멸실성 생물학적 물질 또는 방사능 물질이 들어있는 국제우편물 발송 등의인가) 제3항	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당해 우편물을 발송 또는 수취함에 있어서 협약 또는 이영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우편법시행령			제20조 (우표류 판매업무허가의 취소)	허가우편판서는 국내판매인이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장관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법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통신비밀보호법시행령			제20조 (인가의 취소등)	장관은 인가를 받은 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것이 판명된 때,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인가를 취소하고,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우편번호부 발행규칙			제9조 (지정의 취소)	장관은 발행인이 발행을 받은 날부터 1 월안에 발행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 정된 기일내에 발행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또는 광고료를 수익·사용한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채신보험기 금증식사업 의위탁운영 등에관한규 칙			제6조 (위탁의 취소)	장관은 수탁법인에 대하여 위탁받은 사 업의 운영실적이 부실하여 위탁의 목적 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 등인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결핵 예방법			제35조 (감독)	장관은 결핵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협조요청에 불응 할 때에는 대한결핵협회의 업무를 정지 하거나 정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공중보건 장학을위 한특례법			제10조 (행정처분)	장관은 제6조(조건의 이행)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 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매장및묘 지 등에 관한법률			제15조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당의 이전 및 허가 취소등)	도지사는 제5조의2·제8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8조의2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전을 명하 거나 시설의 개수 또는 그 전부나 일부 의 사용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모자 복지법			제24조 (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모자복지시설이 부령에 규 정된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수탁 의무를 위반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보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등 인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생활 보호법			제19조 (조사와 검진) 제3항	보호기관은 보호대상자 또는 피보호자 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검진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보 호대상자의 보호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보호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피보호자 에 대하여는 보호종류·방법 등을 변경하 거나 보호를 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시체해부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3조 (지정의 취소)	장관은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면허취소처분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이법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외국민간원 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13조 (등록의 취소) 제1항	장관은 등록한 의원단체가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법정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등록사항에 허위가 있을 때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위생사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면허의 취소등) 제1항	장관은 위생사 등이 정신병자 또는 심신박약자 등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때, 면허증을 대여한 때 등인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제13조 (취업의 정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생사등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취업을 정지시킬 수 있음.
장애인 복지법			제42조 (허가취소등)	시도지사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규정을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등인 경우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51조 (보장구제조, 수리업의 허가취소등)	시도지사는 보장구의 제조, 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혈액관리법			제11조의2 (헌혈혈액원) 제3항	장관은 헌혈혈액원이 헌혈업무를 휴업, 폐업 또는 재개업할 경우의 신고의무, 헌혈자보호의무, 헌혈증서의 교부의무, 헌혈환부예치금의 예치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헌혈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13조 (허가의 취소등)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혈액원이 개설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인 경우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 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후견인의 지정취소)	후견인으로 지정 또는 허가된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임무가 종료된 때에는 그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는 후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당해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임원취임 승인의 취소) 제1항	장관은 임원취임승인을 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 법인의 임원이 민법,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정행위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등인 경우 그 취임승인을 취소하거나 선임의 취소를 명할 수 있음.

노동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근로기준법			제77조 (인가의 취소)	제75조(기능자양성)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인가의 조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장관은 기능자양성에 관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기능대학법			제11조 (인가의 취소)	기능대학의 설치를 인가한 노동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은 기능대학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를 받은 때, 법정시설과 장비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인 경우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6조 (보험사무 조합인가의 취소) 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월 이상 보험사무를 중단한 경우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임원의 취임 인가 또는 취임승인의 취소) 제1항	장관은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받은 법인의 임원이 민법과 이 규칙 및 정관의 규정에 위반한 때, 민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이 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취임인가 또는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측정기관의 지정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측정기관이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측정결과를 허위 기재 또는 허위 보고한 때, 정당한 사유없이 작업환경측정 대행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건설교통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건설공제조합법			제33조 (이사장 및 감사의 취임 승인취소)제1항	장관은 조합의 이사장 또는 감사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제17조제1항 (감독)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등인 때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등을 명할 수 있음
공유수면관리법			제15조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감독처분)	관리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등인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방지, 시설의 설치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관리청은 공유수면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때, 공공의 위해를 제거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인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나 시설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 기타의 처분을 할 수 있음.
도시계획법			제78조 (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처분)	관계행정청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부정한 수단으로 이법에 의한 허·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이법에 의한 허·인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3조 (감독) 제1항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등인 때에는 이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변경, 시설물 등의 개축, 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음.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감독) 제1항	장관은 시행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인 때에는 이법에 의한 지정이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또는 공작물의 개축이나 이전 등을 명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7조 (감독) 제2항, 제3항	시·도지사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또는 처분 등에 위반한 때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장관은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인 시행자가 명령에 위반하거나 지정된 기간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한 경우 등인 때에는 그 시행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유료 도로법			제17조제2항 (감독)	장관이나 당해 지방관리청은 비도로관리청이 이 법의 규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허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허가의 취소, 공사의 중지, 행정대집행 기타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육운 진흥법			제11조 (용자금의 등의 회수)	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정부의 용자금 또는 보상금을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에는 그 용자금 또는 보상금 회수
국제철도연 맹규정에의 한컨테이너 의승인등에 관한규칙			제9조 (승인의 취소등)	선급협회는 승인을 얻은 컨테이너가 철도의 안전수송과 화물의 보호를 위하여 그 상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기타 당해 컨테이너에 대한 본질적인 사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승인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 때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시설철도및 전용철도면 허규정			제15조 (철도사업 면허의 취소등)	철도경영의 면허를 받은 자가 작업제출계획서 제출의 명령을 위반한 때, 면허 또는 인가를 얻은 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건교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철도경영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음.
항공법 시행규칙			제42조 (항공기의 수리, 개조능력확인 검사) 제2항	장관은 항공기의 확인검사를 한 결과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리·개조능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함
			제53조 (장비품의 수리, 개조 능력확인 검사) 제2항	장관은 장비품의 수리·개조능력확인검사를 실시한 결과 당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리·개조능력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함.
			제93조 (항공기승무원 신체검사기관) 제4항	장관은 전문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항공법 시행규칙			제159조 (지정지기 항공운송 사업자의 지정의 취소)	장관은 지정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사 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에 위반한 때 등인 경우 그 지정을 취 소할 수 있음
			제164조 (위촉 또는 지정의 실효및취소) 제2항	장관은 위촉심사관 등이 사위 기타 부 정한 방법으로 위촉 또는 지정을 받은 때,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또는 심사 를 한 때, 과실로 인하여 주요한 항공 사고를 일으킨 때 등인 경우 위촉 또 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제175조 (긴급항공기 지정의 취소)	장관은 긴급항공기 지정을 받은 자가 규정에 의한 통지를 아니하거나 통지 내용과 다른 업무로 항공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해양수산부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선박 안전법			제7조의3 (검사의 대행등) 제3항	청장은 선급법인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검사 또는 확인업무의 대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대행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원법			제113조 (행정처분) 제1항 및 제2항	정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이 법, 근 로기준법 등에 위반시 필요한 시정명령 가 능 장관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위명령 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선박의 항행정 지를 명하거나 항행을 정지 시킬 수 있음
			제114 (외국선박의 감독)제2항	장관은 항로당직기준에 의한 당직을 아니 할 경우에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 시킬 수 있음
신항만건 설축진법			제18 (감독) 제2항	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경우 등인 때에는 이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 소하거나, 기타 명령가능
한국해운 조합법			제39조 (감독) 제2항 내지 제4항	청장은 조합의 총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소 또는 집행의 지. 청장은 조합이 이 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 반한 경우 조합에 대하여 해산 명령가능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 내용
항만운송 사업법			제26조 (사업의 정지 및 면허의 취소)	장관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면허 또는 허가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정당한 이유없이 인가를 받은 사항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당해 면허를 취소 6월 이하의 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제26조의5 (등록의 취소등)	지방청장은 항만운송부대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등인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과징금부과 가능
해상교통 안전법			제48조 (공사 또는 작업) 제3항	청장은 공사 또는 작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시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공사 또는 작업의 부진으로 이를 계속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등인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또는 작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제51조 (사업의 정지등)	청장은 선박·선박소유자 또는 사업자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청장이 행한 인허가 등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대하여 허가 등의 취소 등을 요구 가능
해운산업 육성법			제6조 (지정해운업자 에 대한 지원등) 제3항	청장은 지정해운업자에 대한 선박의 확보·개량, 재무구조의 개선 또는 지정화물의 수송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해운업자에대하여 그 지정취소 가능
내수면어 업개발촉 진법시행 령			제30조 (공익을 위한 어법의 제한등)	행정관청은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법 제10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 하천법 및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또는 댐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 등인 경우 당해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면허 또는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제31조 (어업시설물의 제거등)	도지사는 수면관리자의 신청과 농지개량시설에 대하여 발생할 재해의 정도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어업시설의 제거, 변경, 이전, 폐기등 필요한 조치를 어업권자에게 명할 수 있음.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공동어장낚시터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			제16조 (지정의 취소)	시장 등은 낚시터관리자가 낚시터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공동어업의 어업권자가 아닌 자를 그 경영에 참여하게 한 때,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표지시설을 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낚시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			제12조 (검사원선임인가의 취소등) 제1항	해운항만청장은 선급법인에 대하여 검사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그에 대한 선임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의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음.
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			제7조 (합격취소)	검사소는 검사에 합격한 포장, 용기가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검사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기함으로써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등인 경우 합격을 취소하고, 그 뜻을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수출용패류의생산관리및동가공품검사에관한규칙			제13조 (등록의 취소)	수산청장은 수출용 패류 가공처리자가 제9조(등록의 요건)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거나 이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함.
안전한콘테이너를위한국제협약에의한콘테이너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9조 (형식승인의 취소)	청장은 형식승인을 얻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은 때, 형식승인을 얻은 콘테이너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제조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그 형식 승인을 취소함.

총무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상훈법			제38조 (허가의 취소)	총무처장관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폐업하거나 3월 이상 휴업한 때 등인 경우 허가를 취소하여야 함
관보규정시행규칙			제8조 (지정의 취소등)	장관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후 10일 이내에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등인 경우 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과학기술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기상업무법 시행령			제11조 (지정의 취소등)	기상청장은 수탁법인이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업무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업무를 처리한 때인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공보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방송법			제40조 (외국방송국의 국내지사 등의 설치) 제2항	장관은 허가받은 외국방송국의 지사 또는 지국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때,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 등인 경우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법제처

법령명	절차조항	절차내용	처분조항	처분내용
법령집편찬 및간행규정			제7조 (법령집 등의 유상보급업자 등의 지정) 제4항	법제처장은 보급업자가 법령집 등의 보급에 관한 승인조건을 정당한 이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경제법제분석 97-1

經濟活動에 대한 不利益處分과 관련한 聽聞制度의 整備方案

1997년 6월 20일 印刷

1997년 6월 25일 發行

發行人 朴 松 圭

發行處 **한국법제연구원**

印刷處 東 洋 商 社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2901~3, 0163~5

등록번호 : 1981. 8.11. 제1-190호

값 10,000 원

1. 본원의 승인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89-8323-022-3 93320

